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Study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s

김민규 · 조영오

The logo for KICJ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s displayed in a stylized, multi-line font. The letters 'K', 'I', and 'C' are colored in shades of orange and red, while the 'J' is purple. The logo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various gray triangles of different sizes and orientations, some of which are highlighted in pink, blue, and purple.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영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연구지원

임슬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김은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이정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발간사

이 연구는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절차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이주민만큼 이주배경청소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연구는 시의성 있는 주제라 생각됩니다. 그간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연구나,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사회적·문화적 문제에 대한 연구, 이주배경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탐색 연구 등은 다수 존재하지만, 비행 이후에 소년사법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절차상 배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소년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예컨대, 경찰, 법무부 소년보호직 공무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6호시설 관계자 및 변호사 등을 만나 쟁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인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전문가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의 관련 제도 구축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전공 조영오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조사 연구를 성실히 지원해 주신 김은아 인턴연구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ii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많은 지원을 해주신 임슬기 조사연구원님과 이정주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공감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해주신 법무부 소년보호과 윤일중 과장님을 비롯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김 민 규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김민규·조영오

서론 5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김민규

이주배경청소년 개관 13

제1절 이주배경청소년 일반론 15

1.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5

2.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독자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 '이중의 통합' 문제 17

3. 본 연구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 18

제2절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19

1.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통계 현황 19

가. 개관 19

나. 소년사법절차에 포함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들 21

2. 통계의 의미 및 향후 통계 관련 개선 필요성 25

가. 통계의 해석 25

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시스템 개선 필요성 26

제3절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의 쟁점 28

1. 소년사법제도 개관 28

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 29

가. 언어적 배려의 필요성	29
나. 부모의 보호력 및 조력의 한계	30
다. 동일 국적 또는 언어권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	31
3. 이주배경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개선 필요성	31
4. 소결	33

제3장 김민규

해외 주요국의 소년사법절차와 이주배경청소년 문제 35

제1절 해외 주요국 소년사법제도 검토의 필요성	37
1. 소년사법제도 관련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37
2. 검토 대상 국가 선정 기준	38
제2절 독일	39
1. 개관	39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41
가.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	41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44
제3절 영국	46
1. 개관	46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47
가.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중요 원칙	47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48
제4절 미국	52
1. 개관	52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53
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53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강화	54
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	55
제5절 일본	56
1. 개관	56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58

가. 법무성의 지원 프로그램 58
 나. 개별 소년원의 프로그램 사례 59
 제6절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61

제4장 조영오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관련
 소년사법기관 직원 및 소년 인식조사 63

제1절 조사 개관 65
 1. 조사 목적 65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66
 가. 조사 대상 66
 나.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67
 3. 조사 내용 68
 제2절 직원 인식 설문조사 6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2.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직원 및 기관의 노력 등 70
 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70
 나. 이주배경청소년 특성 이해를 위한 직원의 노력 71
 다. 기관의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지원 73
 3.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지원 77
 가.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77
 나. 직원 역량강화 및 소년/보호자 교육 측면에서의 지원 79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및 문화 관련 이슈 80
 가. 언어 및 문화 관련 어려움 80
 나. 통역사에 대한 직원의 인식 81
 5.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 특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 83
 가. 소년 특성 83
 나. 보호자의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87
 6.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의 차이에 대한 직원의 인식 89
 가. 한국어, 한국 문화,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재범예방 노력에 있어서의 차이 89

나. 보호자,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	91
7.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92
제3절 직원 면담조사	95
1. 수사단계	95
가. 이주배경청소년 범죄/비행 동향, 업무관련 매뉴얼/규정, 외국어 안내문 및 직원교육 등	95
나.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 특성	99
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사회정착 방안	104
2. 재판 단계	106
가. 재판을 위한 조사 단계	106
나. 재판 및 재판 후 단계	109
3. 집행 단계	111
가. 소년보호기관(사회 내 기관: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1
나. 소년보호기관 수용시설(분류심사원, 소년원, 6호 기관)	117
4. 변호사 및 민간단체	128
가. 언어적인 이슈	128
나. 통역 서비스, 통역사 자질 및 관리	130
다. 보호자 통지 및 진술조력인 활용	131
라.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및 재범예방 대책	132
제4절 소년 면담조사	136
1.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심정	136
2. 통역 사용,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및 보호자나 보조인 동반 여부	137
3.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력 및 보호자를 위한 통역 제공 여부	138
4.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138
5. 소년보호기관 교육 이해 정도	139
6. 이주배경에 대한 다른 소년의 인지 여부 및 갈등	140
7. 처분 수용 여부	141
8. 한국 체류신분 유지에 대한 우려	142
9. 한국정착 의지	143
10. 재범예방 대책	143
제5절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4

제5장 김민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 · 155

제1절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초기 단계 지원 강화 방안 157

1. 국선변호인 조기 개입 제도 도입 157
2.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 도입 160
3. 사법통역인 제도 개선 161
 - 가. 통합 통역 지원 시스템의 구축 161
 - 나. 통역인의 자격 및 직무능력 강화 164
 - 다.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165
4. 소년사건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의 검토 165

제2절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재판 관련 개선방안 167

1. 이주배경청소년 등 외국인을 위한 지침 마련 167
2.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안내 제공 169

제3절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정 및 보호처분 개선방안 170

1. 입소 전후 교육내용의 개선 170
2. 다문화 주의 교정정책 추진 171
3. 이주배경청소년 보호관찰 인력 전문화 172

제4절 이주배경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 173

1. 개관 173
2. 통역 등 조력인 제도 개선 175
3.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권 강화 방안 177
4.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 방안 178

제6장 김민규·조영오

결론: 연구의 요약 181

참고문헌 187

Abstract 195

부록 199

표 차례

[표 2-1-1]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16
[표 2-2-1] 다문화 학생 변동 현황	20
[표 2-2-2] 보호소년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1
[표 2-2-3] 위탁소년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2
[표 2-2-4]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2
[표 2-2-5]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국적별 현황	23
[표 2-2-6]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성별 현황	23
[표 2-2-7]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연령별 현황	23
[표 2-2-8]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처분유형별 현황	24
[표 2-2-9]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사범별 현황	24
[표 2-2-10]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경력 현황	25
[표 3-2-1]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 신규주문대비표	41
[표 4-1-1]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68
[표 4-2-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69
[표 4-2-2]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71
[표 4-2-3] 직원의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 및 이해 노력 ⁴⁾	72
[표 4-2-4]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74
[표 4-2-5]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자료, 직원 교육 및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75
[표 4-2-6]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78
[표 4-2-7] 직원 인식개선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79
[표 4-2-8]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	81
[표 4-2-9] 통역사에 대한 직원의 인식	82
[표 4-2-10]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84
[표 4-2-11]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	86
[표 4-2-12] 보호자의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88
[표 4-2-13] 한국어, 한국 문화,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재범예방 노력에 있어서의 차이 인식	90
[표 4-2-14] 보호자의 보호력,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 인식	92
[표 4-2-15]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93

[표 5-1-1] 경찰단계 소년사건 국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규정안	159
[표 5-1-2] 소년법 국선보조인 규정 개정 제안	160
[표 5-2-1]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재판단계 체크리스트 예시	168
[표 5-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청구조문대비표	178
[표 5-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청구조문대비표	179



그림 차례

[그림 2-2-1] 범죄수사규칙상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서식	27
[그림 3-5-1] 20년간(2003~2022) 외국인범죄소년 가정법원송치 현황	57
[그림 3-5-2] 20년간(2003~2022) 외국인 소년원 입원자 인원 추이	58
[그림 5-3-1] 소년원생 교육단계	170

국문요약

이 연구는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간 정책분야와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에 활용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도입국한 청소년, 그리고 탈북청소년/탈북자가정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 탈북배경 청소년은 제외하였다.

현재까지 소년사법제도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직까지는 소년보호기관이나 보호관찰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수 자체가 매우 적었고, 소년사법기관에서도 공식적인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제한적이지만 일부 통계를 제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법절차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독일은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은 언어적인 문제를 겪는 외국인을 위한 법원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미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일본어 능력 배양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년원에서 사회복귀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경찰, 판사, 변호사, 6호 시설 종사자 등 소년사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년원에 재원 중이거나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주배경청소년이 언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적은

2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일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어릴 때부터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점, 그리고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법절차 단계별 통역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사법통역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기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재비행 예방이나 사회 정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제도에 능통한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모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체보다 외국인 부모의 조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법률과 함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연구 내용을 토대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초기단계에서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선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것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인의 직무능력 강화 및 사법통역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판단계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하여,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판 및 심리절차에서 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점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문서 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 및 보호처분 단계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원 등 구금시설 입소 전후의 교육내용을 영상교재 또는 가상현실(VR)교재 등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설 내 직원 및 재원생 등 구성원에 대하여 다문화 주의에 기초한 교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참여할 경우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역 지원 및 진술 조력 강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절차적 참여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소년사법 절차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 1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서론

김민규·조영오

제1절 | 연구목적

우리나라도 점차 해외로부터 이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미 2023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46만여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 국민의 4.8%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고 한다.¹⁾ 우리나라도 곧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이 고려되는 상황이다.³⁾ 법무부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⁴⁾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의 이주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연적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그렇다면

1) 매일경제 2024년 10월 25일자, "다문화국가 눈앞 ...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150527>, 2024.11.02. 최종접속).

2) '다문화 국가' 또는 '다문화·다인종 국가'란, 총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는 국가로 OECD에서 정의한 개념이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국회도서관, Social Signal 2024-1호(통권 제 41호), 3면. (https://argos.nanet.go.kr/bbs_img/bbs/153/b0438439-3592-4a0a-b005-c820a966fa85.pdf, 2024.11.02. 최종접속).

3) 문화일보 2022년 11월 9일자, "50년뒤 단일민족국가 불가능... 이민청 세워 세계시민국가 준비해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0901032121289001>, 2024.6.10. 최종접속); 머니투데이 2022년 10월 23일자, "외국인 1명이 한국인 2명뿔 한다"...이민 없으면 소멸하는 대한민국 [MT리포트] 이민청, 피할 수 없는 선택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115131795896>, 2024.6.10. 최종접속).

4) 법무부 홈페이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609/subview.do>, 2024.11.24. 최종접속) 참조

5) 일례로 다문화인구는 2008년 14만 4천명에서 2021년 38만 5천으로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 출

8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이러한 소위 ‘이주배경청소년’이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되는 경우도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사법절차의 특성과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주배경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이후 수사·조사단계, 재판 단계, 교정단계, 사회복지 단계 등 소년사법절차 진행 단계별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즉,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내지 특별한 배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며,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물론,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된 연구 대상은 범죄의 인지, 수사 및 조사, 재판, 교정,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등의 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지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절차와 관련한 고유의

생 비율도 2008년 2.9%에서 2021년 5.5%로 8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다문화 청소년, 배제가 아닌 수용과 통합으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통권 제4호, 2022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2%EB%85%84%204ED%98%B8.pdf, 2024.6.10. 최종접속), 3면에서 재인용).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정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을 의미”한다.⁶⁾ 하지만, 이주배경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모 일방이 한국인이어서 중도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한 ‘중도입국청소년’⁷⁾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해석이라 생각된다. 이보다는 부모 모두 외국인이지만 국내 거주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청소년’ 역시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⁸⁾ 이에 대해서는 이하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한편, 탈북청소년 또는 탈북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는 전술한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 청소년 개념 범위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선 비행경력에 따라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 또는 탈북가정의 자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탈북가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 언어적·문화적 차이보다는 교육 환경 변화 및 법체제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본 연구와는 다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경우에 있어서 절차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파악 및 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즉,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수사나 재판, 소년보호시설 구금 또는 보호관찰 등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조사 및 정책 대안 제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피해자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즉, 소년사법절차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거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통역을 통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안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2024.6.10. 최종접속) 참조.

7)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아동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희주·장주영, 「중도입국 아동의 초기 적응 경험과 정주화에 대한 의미」,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연구보고서, 2023, 15~16면 참조.

8) 양계민 외,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 21~24면; 양계민 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 17~19면.

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사법절차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등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소년사법절차의 규범적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형사범죄 피해자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각종 특별형사법상의 피해자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소년법」상의 절차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법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의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향 및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경찰, 소년부 판사, 6호 시설 관계자, 글로벌센터 관계자, 변호사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했거나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을 개관하고,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현황 파악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및 소년비행예방팀의 협조를 얻어 일부 통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계된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소년사법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해당 국가에서 이주민 및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였거나 지원하였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또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사법절차의 개선 방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정책 등 쟁점을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에서 파악된 쟁점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의 보완책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제6장에서 요약 및 정리하였다.

제 2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 개관

김민규

제2장

이주배경청소년 개관

제1절 | 이주배경청소년 일반론

1.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익숙하게 활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정책분야 별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는 방법도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⁹⁾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¹¹⁾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재한외국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상의 출생(제2조), 인지(제3조), 귀화(제4조)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제2조 제1호 가목)이거나 또는 국적법에 의해 인지 또는 귀화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국적법상 출생, 인지,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제2조 제1호 나목)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9)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2024.6.10. 최종접속) 참조.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문화가족” 검색결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878>, 2024.6.10. 최종접속).

16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이에 비해 ‘중도입국청소년’이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와 재혼을 하면서 본국에 거주하던 자녀를 입국시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모국에서 거주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¹²⁾ 나아가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한 청소년이나 취업이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¹³⁾ 한편, 전술한 여성가족부의 중도입국청소년 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다시 말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우자로 둔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¹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의미하는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에 포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를 위한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2)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외국인’, 3)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및 4)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자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조사 연령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⁵⁾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1-1]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중 1인 한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1인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 출처: 양계민 외,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 22면의 <표 1-8>을 발췌함

12) 양계민 외,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신현옥 외,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2, 7면에서 재인용).
 13) 무지개청소년센터, 2009~2011 (재)무지개청소년센터 활동보고서, 무지개청소년센터, 2011(신현옥 외, 위의 보고서, 7면에서 재인용).
 14) 신현옥 외, 위의 보고서, 7면.
 15) 양계민 외, 앞의 보고서(2020), 18~19면.

2.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독자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 '이중의 통합'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분류는 정책분야나 연구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의 복지적 관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한다면 그 개념 및 유형을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은 그 신분상 지위로 차별적인 배려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소년의 보호와 인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정책적 지원을 받는 소년의 범주를 굳이 축소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주배경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소년에게는 동일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형법」이나 「소년법」에 비추어볼 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같이 넓게 볼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에서 입국한 소년 모두를 소년사법제도의 배려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단기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또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잠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형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도 소년사법절차에 포섭될 경우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체류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로범위를 제한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은 우리 「소년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전한 육성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의 대상이자,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소년을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이른바 '이중의 통합'이 문제되며 이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 체류 후 출국할 예정인 외국인과는 다르게 '이주배경청소년'을 취급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했는데, 이는 부모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비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 나아가 부모 모두 내국인인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하여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 일방이 언어적·문화적·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조력에 한계를 겪는 경우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적합한 정보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종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본 연구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다문화가정, 귀화 또는 탈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청소년 또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주한 이민외국인가정의 자녀인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을 제한한 것은 우리 「소년법」상의 소년사법절차와의 조화를 위한 것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채로 출생하여 내국인과 같이 처우되고,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가진 외국인 부모(일방)로 인하여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보호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개념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거주 목적'이나 '이주'와 같은 요건을 추가한 것은, 단기간 체류하고 출국할 여행자 등과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 것에 대해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분야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소년사법절차의 특성을 고려하

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탈북가정을 배경으로 한 청소년 또는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선 탈북자의 경우에는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나아가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다. 비록 탈북배경 청소년은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내용, 법제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탈북자 또는 탈북배경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법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절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1.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통계 현황

가. 개관

2023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25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¹⁶⁾ 이 중에서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 상주 중인 15세 이상의 이민자¹⁷⁾는 약 148만 명으로서, 외국인인 약 143만 명, 귀화허가자는 약 5만1천 명으로 조사되었다.¹⁸⁾

한편,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¹⁹⁾은 19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 코리아넷뉴스 2024.1.17., “국내 외국인 251만명···‘다문화사회’ 진입 눈앞”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2024.11.2. 최종접속)

17)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란 ‘외국인’과 대한민국으로의 ‘귀화허가자’를 통칭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2023.12.18.),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일러두기 참조.

18) 통계청, 앞의 보도자료(2023.12.18.), 1면.

19) 본 통계에서 말하는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한다. 여기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2024.8., 5면, [표5] 용어해설 주 참조).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20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초등학생은 117,459명으로 전년 대비하여 1,820명이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총 47,910명으로 전년 대비하여 4,212명이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27,673명으로 6,483명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그 외 각종학교 재학생은 772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다음은 교육부에서 10년간(2015~2024) 각급 학교별로 집계한 다문화 학생(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이다.

» [표 2-2-1] 다문화 학생 변동 현황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합계
2015	60,162	13,827	8,146	401	82,536
2016	73,972	15,080	9,816	318	99,186
2017	82,733	15,945	10,334	375	109,387
2018	93,027	18,068	10,688	429	122,212
2019	103,881	21,693	11,234	417	137,225
2020	107,694	26,773	12,478	433	147,378
2021	111,371	33,950	14,308	429	160,058
2022	111,640	39,714	16,744	547	168,645
2023	115,639	43,698	21,190	651	181,178
2024	117,459	47,910	27,673	772	193,814

※ 출처: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5면의 [표5] '다문화 학생 현황'의 내용을 발췌·편집함

〈표 2-2-1〉을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거의 정체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350곳에 달하고(전체 초중고교의 2.96%), 안산시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97.4%에 달하는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²¹⁾

앞으로 외국인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증가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통계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더욱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5면.

21) 문화일보 2024년 8월 4일자, “전국에 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 350곳…안산엔 97%인 곳도”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80401039910021002>, 2024.11.02. 최종 접속).

나. 소년사법절차에 포함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거나,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법무부에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결과,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및 소년비행예방팀으로부터 이하의 통계 산출 결과를 회신받았다.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는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소년과 한국 국적이지만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²²⁾

다만, 주의할 점은 아래 제시된 통계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 내부에서 별도의 작업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시 작성되어 공표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법무부 차원의 통계 수집이 이루어져 공식 지표로 공표되는 경우에 본 자료와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²³⁾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2-2] 보호소년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다문화가정 소년	36	41	63	105	86
	2.2%	3.0%	4.1%	5.0%	6.1%
외국국적소년	6	6	18	16	8
	0.4%	0.4%	1.2%	0.8%	0.6%

※ 출처: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표 2-2-1〉을 보면, 보호소년 중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2023년에 약 120명,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9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100여 명 안팎에 지나지 않고 비율로도 전체 보호소년의 약 6%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에서는 그 수가 훨씬 적지만,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22)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및 자문의견에 의한.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2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인하여 교정시설 내 재원자 수가 줄어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 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²⁴⁾ 중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나타낸다.

▶▶ [표 2-2-3] 위탁소년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다문화가정 소년	120	149	204	326	203
	2.8%	3.8%	4.9%	7.0%	7.0%
외국국적소년	24	30	55	61	36
	0.6%	0.8%	1.3%	1.3%	1.2%

※ 출처: 법무부 소년보호과 내부자료

〈표 2-2-3〉을 보면, 위탁소년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387명의 다문화가정 소년 및 외국국적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 문의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2-4]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기준일 2024년 8월
소년보호관찰 인원 합계	11,978명 (100%)
다문화가정소년	489명 (4.08%)
외국국적소년	147명 (1.22%)

※ 출처: 법무부 소년비행예방팀 내부자료

소년보호관찰을 받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도 앞의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2024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소년보

24)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말한다.

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11,978명이며, 이 중에서 외국국적소년의 경우 1%를 약간 넘는 14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 중에서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소년은 489명으로 외국국적소년의 4배에 달하였다.

보다 상세한 통계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를 방문하여, 관련 통계를 요청하여 협조를 얻었다. 2024년 4월 22일 기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관할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외국인의 현황을 분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2-5】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가명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32명(100%)	22(69%)	5(16%)	2(6%)	1(3%)	1(3%)	1(3%)

주) 시스템상에 “국적”코드 입력에 따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제외함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표 2-2-5〉를 보면, 2024년 4월 22일 현재 안산보호관찰소가 관할하는 외국인 소년은 총 32명으로, 중국 국적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5명), 러시아(2명)가 뒤를 이었으며,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국적 소년은 각 1명씩이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소년의 성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2-6】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성별 현황**

(단위: 명)

성별 구분	남	여
32명(100%)	21(66%)	11(34%)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 **【표 2-2-7】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 구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32명(100%)	3(9%)	6(18%)	4(13%)	5(16%)	6(18%)	4(13%)	4(13%)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표 2-2-6〉을 보면, 남자 청소년의 비율(21명, 66%)이 여자청소년의 경우(11명, 34%)보다 두 배정도 많았다. 한편, 〈표 2-2-7〉을 보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총 9명이고,

24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23명을 차지하여 대체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였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처분 유형별 인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2-8]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처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처분 유형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임시퇴원
32명(100%)	19(60%)	12(37%)	1(3%)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표 2-2-8〉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청소년 중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은 19명, 동조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은 12명이었다. 그 밖에 소년원의 임시퇴원자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인원은 1명이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범죄별 인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2-9]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사범별 현황

(단위: 명)

죄명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성폭력 사범	사기횡령 사범	교통 사범	우범 (소년법 위반)	기타 (처분변경)
32명 (100%)	7 (23%)	11 (35%)	4 (12%)	2 (6%)	2 (6%)	4 (12%)	2 (6%)

주) 기타 사범 : 점유이탈물횡령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표 2-2-9〉를 보면, 현재 안산지역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 중에서는 절도죄를 범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청소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사범으로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우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폭력사범을 원인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우범소년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가 각각 4명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사기 및 횡령 등 경제범죄를 원인으로 한 경우, 교통범죄를 원인으로 한 경우 및 기타 사범은 각각 2명씩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2-10] 안산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 외국인 경력 현황

(단위: 명)

보호관찰 경력	1회	2회	3회	4회	5회
32명(100%)	23(72%)	6(19%)	1(3%)	1(3%)	1(3%)

※ 출처: 안산보호관찰소 내부자료

〈표 2-2-10〉에 의하면 2024년 현재 외국인 청소년 중 처음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인 청소년이 6명, 3회 이상인 청소년은 3명에 불과하여 보호관찰을 반복하여 여러 번 받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통계의 의미 및 향후 통계 관련 개선 필요성

가. 통계의 해석

앞서 살펴본 통계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연구진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다. 〈표 2-2-1〉에서 본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전국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즉 이주배경청소년 수는 19만3천 8백여 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받고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의 수는 100여 명 안팎이다. 위탁소년을 포함하더라도 4백여 명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전술한 법무부 내부자료에 의할 때, 전국에서 소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소년 + 외국국적소년) 수는 대략 636명 정도다.

물론, 이러한 통계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예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적다고 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범죄 및 비행이 내국인에 비하여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집계된 통계도 구체적인 목적과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집계되고 관리되고 있다기보다는, 절차 진행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의 필요에 따라 가공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접근 가능한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를 가지고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위에서

제시된 지표들에서 아직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외국인 이민 증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도 증가할 것이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시스템 개선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공표되는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 속에는 다문화가정 배경 청소년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중도에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귀화가 완료된 외국인 아동·청소년 역시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로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분류심사 단계 또는 소년원 입소 전 조사 단계에서 수행하는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통계’를 제공하면서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및 출입국사범,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²⁵⁾ 이러한 통계는 사회 통합 및 사회 복귀가 필요한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파악에는 적합하지 않다.

경찰청의 경우, 소년사건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소년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 2-2-1>은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11.1. 일부개정, 2023.11.1. 시행) 별지서식 제210호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2024.11.02. 최종접속).

▶▶▶ [그림 2-2-1] 범죄수사규칙상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서식

[별지 제210호서식(갑)]

색인		소년카드 [소년환경조사서]				연	계	과	장	서	장
번호	경찰서(과) 년 계 호			구 분	범죄소년	측범소년	우범소년				
소 년	성명	이명	국적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번호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남여)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국적: 신분: 세류목적: 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록 기준지								
	학력	학교 학년 재학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학업중단 사유:)		혼인 관계		동거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유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주소	종교		기독교 <input type="checkbox"/>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원불교 <input type="checkbox"/> 천도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무교 <input type="checkbox"/>							
가족 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연락처	비 고					
본 질 비 행	구분	강력범죄 <input type="checkbox"/> 경도범죄 <input type="checkbox"/> 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지능범죄 <input type="checkbox"/> 교통범죄 <input type="checkbox"/> 기타범죄 <input type="checkbox"/>			죄명	비행 내용					
	공범 관계	공범 유 <input type="checkbox"/> (공범과 관계 : 무 <input type="checkbox"/>			여죄	비행 내용					
	비행 동기	사행심 <input type="checkbox"/> 보복 <input type="checkbox"/> 가정불화 <input type="checkbox"/> 호기심 <input type="checkbox"/> 유혹 <input type="checkbox"/> 우발적 <input type="checkbox"/> 현실불만 <input type="checkbox"/> 무주의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이유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관계	국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고용자 <input type="checkbox"/> 피고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장동료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애인 <input type="checkbox"/> 동거친족 <input type="checkbox"/> 기타친족 <input type="checkbox"/> 거래상대방 <input type="checkbox"/> 이웃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행후 은신처	자기집 <input type="checkbox"/> 공범집 <input type="checkbox"/> 애인집 <input type="checkbox"/> 친척집 <input type="checkbox"/> 지인집 <input type="checkbox"/> 숙박업소 <input type="checkbox"/> 야외 <input type="checkbox"/> 현장권거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해약 물 사용	마약류 (마약 <input type="checkbox"/> / 대마 <input type="checkbox"/> / 향정신성의약품 <input type="checkbox"/>) 본드·시너 등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경신 상태	정상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input type="checkbox"/> 주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치	법원 보호사건 송치 <input type="checkbox"/> 검찰 구속 송치 <input type="checkbox"/> 검찰 불구속 송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구속벌 (간금체포 <input type="checkbox"/> 사진영장 <input type="checkbox"/> 체포 <input type="checkbox"/> 현행범체포 <input type="checkbox"/> - 불구속벌 (불구속업건 <input type="checkbox"/> 검사기각 <input type="checkbox"/> 판사기각 <input type="checkbox"/> 직무심처방 <input type="checkbox"/> 검사구속취소 <input type="checkbox"/>										

위 소년환경조사서 서식을 보면, 소년에 대한 조사 시에 ‘국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 국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확인란은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조사의 대상이 된 소년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외모도 외국인이거나 다문화가정 배경을 추론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조사를 수행하는 자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묻지 않는 이상 다문화가정 배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조사대상 소년이 자신의 다문화가정 배경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 추산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중 비행소년의 통계에는 다문화가정 배경 소년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소년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소년사법절차에 통용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가 정립되어 이를 통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확한 이주배경청소년 비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정책 수립이나 필요한 지원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서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모로부터의 지원이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제공되는 지원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나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실태 및 소년사법절차로 어떠한 처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인식, 즉 이주배경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업무 처리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적절히 공개하여 정책 결정이나 후속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3절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의 쟁점

1. 소년사법제도 개관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를 규율하는 「소년법」 제2조에 의하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소위 ‘촉법소년’이라 한다(소년법 제4조). 한편,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한편, 소년법은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형벌보다는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해 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성인범죄자와는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또한 소년사법절차 전반에서 비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년의 재판이나 처분에 관한 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보도 또는 공개가 불가하다(소년법 제68조).

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

가. 언어적 배려의 필요성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은,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다문화가정 배경 청소년은 물론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의 곤란을 이유로 소년사법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 제4장에서 기술하게 될 소년사법기관 종사자 및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에서도 관찰된다. 예컨대,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경찰관이나 보호직 공무원들의 경우, 언어소통상의 문제로 큰 불편을 겪은 사례는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다문화가정 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통역조력인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이주배경 청소년도 적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한국의 정식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즉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인 부모 일방, 또는 이주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가 오히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정작 자녀에 대한 조력이 필요할 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하며 자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가, 결혼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한국 사회에 융합하려는 노력이나 관심을 갖기 전에는 언어능력이나 사회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생각은 연구진의 개인의 견해이지만, 부모 중 일방 또는 양방이 한국어 및 한국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하여 충분한 조력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이, 반드시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비단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고, 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 문자화된 내용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다수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다. 원어민처럼 말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소년사법절차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척도는 우리 소년사법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년사법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고,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분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해당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적인 조력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모의 보호력 및 조력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 중 일방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조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소년사법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고용하여 조력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재판 단계나 보호처분 이행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조력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자녀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평가 또는 보호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사법절차가 일반적인 소년사법절차에 비해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조력 제공 가능성 및 보호력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평가 척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동일 국적 또는 언어권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많은 이주외국인이 전국 각지에 정착을 하였지만, 과거 ‘차이나타운’의 예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언어권 또는 문화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커뮤니티는 그 구성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국내로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반면, 개별 커뮤니티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커뮤니티로부터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에 속하는 청소년들과만 교류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자신들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모국의 범죄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구성원끼리 비행이 학습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공동체의 폐쇄성도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 정착한 이주 외국인의 경우 지역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여 경찰에게 신고한 범죄피해 내용이 가해자에게 알려져 보복 폭행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⁶⁾

이러한 커뮤니티 문화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이주배경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개선 필요성

이주배경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증인 신분으로 소년사법절차에 참가하여 진술

2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박형민·조성현·김선희,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94면에서 재인용).

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통역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소년부 판사가 명령하는 것으로 이미 심리단계에 있을 때 하는 조력의 일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 조력의 형태로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이주배경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비단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내국인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논의들이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절차 참가 보장이나 알권리 보장과 같은 측면은 비이주배경청소년도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원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복잡한 가족 구성,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 정도 및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차별 등이 원인이 되어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²⁷⁾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많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²⁸⁾ 해당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내국인 청소년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주위 친구들과 교제 범위가 넓고 활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²⁹⁾

이에 대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출신 자체가 피해의 요인이 된다고보다는 다문화가정이 갖는 특성으로 인한 개별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³⁰⁾ 이 견해는, 한국에서 태어나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외모에 있어서의 다양성 외에는 내국인과 차이가 없고 따라서 내국인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27) 전영실·신동준·박상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211~212면.

28) 전영실·신동준·박상희, 위의 보고서, 213~214면.

29) 전영실·신동준·박상희, 위의 보고서, 214면.

30)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앞의 보고서, 162~164면.

배경 자체보다는 각 가정의 양육방식 또는 해당 가정의 경제 상황, 청소년의 심리 문제 등이 비행 피해와 더욱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³¹⁾

한편,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어려움, 복잡한 가족 구성, 체류와 관련한 문제 등 복잡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³²⁾

후술할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이하 제4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임에도 이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고, 피해자임에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요컨대,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또는 일방)의 보호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지원할 통역 및 조력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소년보호절차 또는 소년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소결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조력이 필요하고, 가정 배경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언어에 의한 소통 장애로 인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주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부과되는 사법절차의 내용과 사회적인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보다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

31)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앞의 보고서, 164면.

32)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6면;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앞의 보고서, 178~179면.

34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년사법절차나 범죄예방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특별히 대우하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되는 경우, 즉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나 선입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에 대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게만 절차상 배려를 함으로써, 오히려 비이주배경청소년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도 비이주배경청소년과 동등한 보호와 처벌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권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의 소년사법절차와 이주배경청소년 문제

김민규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소년사법절차와 이주배경청소년 문제

제1절 | 해외 주요국 소년사법제도 검토의 필요성

1. 소년사법제도 관련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국가마다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시각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한민족' 또는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곧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이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구상하였는지, 그러한 대응책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소년사법제도를 개관하고, 해당 국가들에서 이주배경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체계 및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논의를 곧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국가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현황 또는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각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소년사법 관련 제도 중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법제도로 편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가능한 대안도 모색해 보았다.

2. 검토 대상 국가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4개국을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우선 독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사법이 계수하고 있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에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및 영국은 대표적인 커먼로(Common law, 보통법) 국가로서, 20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서 일찍부터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었던 국가들이므로, 이들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령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두고 있을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국가이기에 이들의 법제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홀로서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제도적인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일본도 앞서 언급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의 자국 내로의 유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국가별 현황과 제도를 비교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2절 | 독일

1. 개관

독일에서는 이민자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2차대전 종전 후, 독일은 국가 재건을 위하여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킨 바 있다.³³⁾ 이후, 1970년대 경제적 불황과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자 이주노동자 유입을 중단하였다.³⁴⁾ 그러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Green Card” 정책, 즉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첨단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력에게 취업허가를 위한 비자를 제공하는 등, 독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외국인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³⁵⁾ 다만, 2015년 이후에 시리아내전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독일은 물론 서유럽 전반에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³⁶⁾

한편, 독일에서 최근 수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³⁷⁾ 오히려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지난 15년간 베를린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 비율은 독일국적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모두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³⁹⁾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주배경이 비행의

33) 독일의 시대별 이주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춘권,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2012, 130~136면 참조.

34) 구춘권, 위의 글, 126면.

35) Holger Kolb/Jan Schneider/Holger Kolb/Jan Schneider, “Der liberale Wandel der deutschen Arbeitsmigrationspolitik seit 200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8.5.14. (<https://www.bpb.de/themen/migration-integration/dossier-migration/252285/der-liberale-wandel-der-deutschen-arbeitsmigrationspolitik-seit-2000/>, 2024.11.02. 최종접속).

36) Reuters 2016.1.10., “Anti-migrant protest turns violent as German welcome cool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anti-migrant-protest-turns-violent-as-german-welcome-cools-idUSKCN0UNOJT/>, 2024.11.02. 최종접속).

37) Christian Walburg, “Migration und Kriminalität - Erfahrungen und neuere Entwicklungen”, Innere Sicher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9.25. (<https://www.bpb.de/themen/innere-sicherheit/dossier-innere-sicherheit/301624/migration-und-kriminalitaet-erfahrungen-und-neuere-entwicklungen/#%E2%80%9E07%E2%80%9C>, 2024.6.20. 최종접속).

38) Christian Walburg, “Migration und Kriminalität - Erfahrungen und neuere Entwicklungen”.

39) Christian Walburg, “Expertise: Jugenddelinquenz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rsache

직접적이거나 중심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보다는 폭력적인 양육 방식,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지원 부족, 소외와 차별 경험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 저하를 보다 큰 비형원인으로 보고 있다.⁴⁰⁾ 이러한 인식에 따라, 독일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⁴¹⁾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배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⁴²⁾ 본 연구의 제2장 소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역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⁴³⁾ 이 견해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다루면서 범죄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면 범죄예방이라는 사회 문제를 ‘인종’과 연관시키는 소위 “인종화의 함정(Ethnisierungsfalle)”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주배경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⁴⁴⁾

이하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비롯한 독일의 소년사법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독일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았다.

n und neuere Entwicklungen”, Mediendienst Integration, 2023.12., S. 11, 그림 3 참조. (원문은 https://mediendienst-integration.de/fileadmin/Dateien/Expertise_MEDIENDIENST_Jugenddelinquenz.pdf, 2024.6.20. 최종접속).

40) Christian Walburg, “Expertise: Jugenddelinquenz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rsachen und neuere Entwicklungen”, S. 15 ff.

41) Christian Walburg, “Expertise: Jugenddelinquenz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rsachen und neuere Entwicklungen”, S. 24.

42) Christian Walburg, “Migration und Kriminalität – Erfahrungen und neuere Entwicklungen”, Innere Sicher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9.25. 참조

43)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DJI Impulse 21. Jg., H.4, Deutsches Jugendinstitut, 2011, S. 33. (원문 다운로드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literatursuche/detailansicht/literatur/15696-jugendhilfe-vor-neuen-herausforderungen.html>, 2024.11.02. 최종접속).

44)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3 f.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가.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

1) 소년법원조력의 강화

독일은 2019년에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및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StPO)의 여러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⁴⁵⁾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소년사건절차를 보조하는 ‘소년법원조력인’(Vertreter der Jugendgerichtshilfe)⁴⁶⁾의 임무를 이전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소년법원법 제38조). 다음은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소년법원조력(Jugendgerichtshilfe)’ 규정의 개정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 [표 3-2-1]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p>(2) 소년법원조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소년법원조력인)은 소년법원 절차에 있어서 교육적, 사회적 및 복지적 측면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성격, 발달 및 환경을 조사하여 관련 당국을 지원한다. 구금사건의 경우에는 크는 조사결과를 더욱 신속히 보고한다. 공판절차에는 조사를 수행한 소년법원조력인이 심리에 회부된다. 소년법원조력은 보호관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소년이 지시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판사에게 통지한다 … (이하 생략)</p>	<p>(2) 소년법원조력인은 소년법원절차에 있어서 소년 지원의 목적과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및 기타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소년의 성격, 발달 및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사하여 관련 당국을 지원하고, 보호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이나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p>
<p>(3) 소년법원조력은 소년사법의 전체 절차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p>	<p>(3) 절차에서 중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구금사건의</p>

45) Deutsches Jugendinstitut e.V., "Jugend(hilfe) im Strafverfahren- Neue Gesetzeslage, veränderte Aufgaben und die Perspektive der jungen Menschen", 2020.7.9.(<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jugendhilfe-im-strafverfahren.html>, 2024.11.02. 최종접속).

46) 이 용어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보호’, ‘소년법원부조’, ‘소년사법보조’ 등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력(Hilfe)하여 소년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리인(Vertreter)’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법원조력인’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독일의 소년법원보조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안수길,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최신 동향 분석 - 소년법원보조제도의 강화에 주목하며 -”, 소년보호연구 제34권 제1호, 2021, 217~218면 참조.

42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개정전	개정후
다. 지시(제10조)를 하기 전에는 소년법원조력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보호명령(Betreuungsweisung)을 고려하는 경우, 소년법원조력인은 보호조력인으로써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경우 소년법원조력인이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한다. 제2항과 관련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여 이를 소년검찰에 보고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소년법원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4) 제7항에 따른 포기가 있지 않은 한 소년법원조력인은 주 심리에 출석한다...(이하 생략)
<신설>	(5)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소년법원조력인이 해당 청소년이 지시사항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소년법원에 보고한다...(중략)...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형의 집행기간 중에는 소년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6) 소년법원조력인은 소년에 대한 전체 절차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신설>	(7)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3항의 요청복지에 부합하는 경우, 소년법원 및 예비절차에 있어서는 소년검찰은 제3항의 요구의 이행을 포기할 수 있고, 소년법원조력의 신청에 의하여 제4항 제1문의 요건을 이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소년법원조력인 및 절차에 참여한 자에게 조기에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표출처: buzer.de, "Änderung § 38 JGG vom 17.12.2019"의 표를 번역하여 재구성함
(<https://www.buzer.de/gesetz/5689/al81152-0.htm>, 2024.11.30. 최종접속).

소년법원조력인은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위하여 소년법원에서 해당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상황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법원 및 소년사법 관련 당국을 지원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조사 결과가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공소가 제기된 후라면 소년법원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소년법원보조인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동조 제4항), 만약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원보조인에게 소년에게 부과된 지시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소년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5항). 그리고 형의 유예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형의 집행 중에는 소년을 접촉하고 지원하여 해당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동제 제5항 제4문 및 제5문).

이처럼 소년사법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법정에서 조력을 수행하며, 소년에 대한 처분의 이행상황도 감독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원 보조인은 소년사법절차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 제공을 통해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⁴⁷⁾

2) 영상녹화제도 강화

독일은 형사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201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는데⁴⁸⁾, 해당 개정 내용 중에는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영상녹화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본 개정을 통하여 피의자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의 제1문은 피의자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의 제2문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수사 대상이 고의살인죄로서 영상녹화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동조 제1호), 또는 피의자가 제한된 정신능력이나 심각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영상녹화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이익이 더욱 잘 보호될 수 있는 경우(동조 제2호)가 그러하다. 본 형사소송법의 개정 당시인 2017년에는 원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의자(Beschuldigten unter 18 Jahren)”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2020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런데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2019년 개정된 「소년법원법」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해당 조문은 삭제된 채로 시행되었다.⁴⁹⁾

2019년 개정 독일 「소년법원법」 제70c조 제2항에 의하면, 공판절차 외에서 소년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나 출석하지 않은 상황은 반드시 피의자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47) 소년법원조력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수길, 앞의 글, 225~231면 참조.

48) 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vom 17. August 2017 (BGBl. I S. 3202).

49) BT-Drs. 19/13837, S. 73 f.

하였다. 이는 'EU 지침 2016/800' 등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년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된 청소년의 절차법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국내법에 도입한 내용이다.⁵⁰⁾

일반적으로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피의자 보호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⁵¹⁾ 다만,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피의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⁵²⁾ 한편,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할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문을 하는 경찰이 주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판단하여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진술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건 자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⁵³⁾

한편, 영상녹화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제도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나이가 어린 피의자들의 경우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⁵⁴⁾ 이처럼 미성숙한 청소년이 한 진술이 결국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호하여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면서 법관이 아닌 자, 즉 경찰이 신문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예외 없이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상녹화가 청소년 피의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도 영상녹화를 통한 신문이 행해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⁵⁵⁾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한 연구에 의하면, 비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것과 유사한 생활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폭력범죄를 범하는 때가 많다고 한다.⁵⁶⁾

50)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1-3.

51)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18.

52)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18a.

53)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20a.

54)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18.

55) Eisenberg/Köbel/Köbel, 25. Aufl. 2024, JGG § 70c Rn. 21.

즉, 이주배경청소년은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이주배경청소년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라는 것이다.⁵⁷⁾

전술한 소년법원보조인 역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독일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과의 유대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⁸⁾

이러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원책이 예시로 제시되고 있다.⁵⁹⁾

- 이주배경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원보조인 실무를 오래 해온 전문가 또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법원보조인을 활용함
-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을 고려한 특별 시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구금이나 구금 후 석방된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 범죄를 저지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를 위하여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예컨대, 공격성 약화 프로그램(Anti-Aggressionstraining))
-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 재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상담 및 부모 교육 실시
- 범죄를 범한 적이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회 활동

특히, 전문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언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⁶⁰⁾

56)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3.

57)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2 f.

58)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4.

59)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4. 글상자 안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

60)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S. 35.

제3절 | 영국

1. 개관

영국은 각 지역에 독자적으로 비행청소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응팀 (Youth Offending Teams, YOTs)을 설치하여 소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⁶¹⁾ 구체적으로는 법적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배경을 조사하고,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력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 중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법정에서 조력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사회 내 처우 대상인 청소년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⁶²⁾ 이처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많은 전문가가 협력하는 YOTs로 인하여 영국은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⁶³⁾

실제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되는 소년의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즉, 최근 10년간 경고나 유죄판결을 받은 백인 청소년 수는 79% 감소한 것에 비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감소율은 55%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경고나 유죄판결을 받은 흑인 소년 비율은 오히려 지난 10년간 5% 증가했다고 한다.⁶⁴⁾

이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주배경을 가진 자를 위한 영국의 지원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⁶⁵⁾

61) Gov.UK, “Youth offending teams”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2024.11.02. 최종접속).

62) Gov.UK, “Youth offending teams”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2024.11.02. 최종접속).

63)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202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용역과제보고서, 2022, 86-88면.

64) 영국국회 홈페이지(UK Parliamen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ustody (Part 1): Entry into the youth justice system Contents - Racial Disproportionalit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1/cmselect/cmjust/306/30609.htm>, 2024.11.02. 최종접속) 참조.

65) 이하 영국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이유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자문 및 번역 감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가.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중요 원칙

소년사법절차를 포함한 모든 사법절차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이상은 '평등(e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종, 성별, 언어, 출신국 또는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불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분을 받는 공평한 사법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⁶⁶⁾ 하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한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소년법원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소년법원은 평등의 원칙과 함께 (1) '비례성', (2) '적법절차', (3) '청소년의 복지', (4) '위험'이라는 핵심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여기에서 말하는 '비례성'이란, 소년사법이 개입하는 정당성은 소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실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한 차등, 각각의 소년의 책임에 근거한 차등, 그리고 형벌이 각각의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른 차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⁶⁸⁾ 다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은 소년도 성인과 같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만, 소년법원에 출두하는 소년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개별적인 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개별 소년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⁹⁾ 다음으로 '복지'란, 소년사법의 목적이 재사회화와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개별 소년에 적합한 평가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⁷⁰⁾ 마지막으로 '위험'이란, 소년의 재범방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재범의 방지는

66) Yannick Van den Brink, "Equality in the Youth Court: Meaning,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Youth Justice", *Youth Justice* Vol. 22(3), 2021.5.3., pp. 246-247. (<https://doi.org/10.1177/1473225421101342>).

67) Yannick Van den Brink, *ibid.*, pp. 249-250.

68) Yannick Van den Brink, *ibid.*, pp. 250~251.

69) Yannick Van den Brink, *ibid.*, p. 252.

70) Yannick Van den Brink, *ibid.*, p. 254.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위험 기반 접근’을 하다보면 이미 소외되어 있는 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재범의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소년법원은 소년이 경험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¹⁾ 결론적으로, 소년법원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면서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상쇄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제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⁷²⁾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이하에서 소개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종적 또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에게 모두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다만, 본 연구에 맞추어 해당 제도들 중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흑인, 아시안 및 소수민족자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흑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및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소년은 백인 소년에 비하여 범죄 감소율이 낮고, 더 많이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영국의 의원인 David Lammy는 형사사법제도에 편입된 ‘흑인, 아시아계 및 소수 민족(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이하 ‘BAME’라 한다)’의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검토하여 2017년에 이른바 ‘Lammy Review’를 발표하였다.⁷³⁾

Lammy Review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BAME 계층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총 35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서 인종적인 차별과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⁴⁾

71) Yannick Van den Brink, *ibid.*, pp. 254-255

72) Yannick Van den Brink, *ibid.*, p. 265.

73) 「The Lammy Review- An independent review into the treatment of, and outcomes for,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7.9. (원문은 <http://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2009040f0b62305b91f49/lammy-review-final-report.pdf>, 2024.11.2. 최종접속).

74) 권고안의 요약은 Lammy Review, pp. 7~9.

우선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위하여,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이 인종 간 격차에 대하여 증거에 기반 설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격차 해소를 위한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commendation 1~4).

한편, 검찰(CPS)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인종에 구애받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경찰은 사건정보를 송부하면서 관련 모든 식별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Recommendation 8).

그리고 소년사법절차에 포함시키는 대신 기소유예를 하는 등의 방법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절차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Recommendation 10).

내무부와 법무부, 법률구조단체에게는 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commendation 9). 또한 법무부와 가석방을 심사하는 위원회에게는 범죄 및 인종별로 출소하는 수감자의 비율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범자의 민족 비율도 보고하도록 권고한다(Recommendation 23).

치안판사(magistrate)에게는 모든 사건을 시작부터 종료단계까지 추적, 검토하여 절차가 잘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commendation 19).

왕립교정보호청(HMPPS)에는 백인과 BAME 출신 수감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commendation 30).

이러한 권고안에 대하여 영국법무부는 권고안에 대한 대응 문건을 발표하여 시행한 바 있다.⁷⁵⁾ 이처럼 영국은 다양한 인종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 중이다.

2) 사회적 불평등 계층 배려를 위한 법원 지침

영국에서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겪는 계층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인종적·언어적 곤란을 겪는 소년들에 대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 평등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75) Ministry of Justice, 「Government Response to the Lammy Review on the treatment of, and outcomes for,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7.12. (원문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69206/Response_to_David_Lammy_Review.pdf, 2024.11.2. 최종접속).

「Equal Treatment Bench Book」⁷⁶⁾이라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법적 절차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⁷⁷⁾

특히, 지침서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송당사자들이 겪는 곤란은 법률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고 보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⁸⁾

- 법률 및 절차 등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음
-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이 있음
- 변론 지식이 부족하여 반대신문이나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객관화 불가 등

한편, 영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소송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루는 소년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영어를 제2 또는 제3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차에서는, 법정에서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쉬운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법률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⁷⁹⁾

- 심리 시간을 길게 하고, 자주 휴식을 제공할 것
-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명확한 발음을 통해 말할 것. 단 큰 소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문장에 쉼표나 마침표가 있는 자리는 말을 멈출 것
- 간결한 문장 사용, 접속어 사용 등 복합적인 문장 사용은 자제할 것
- 한 문장에서 하나의 주제/아이디어만 다룰 것
-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음

76)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2021.2. Edition, 2023.4. revision. (원문은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3/04/Equal-Treatment-Bench-Book-April-2023-revision-2.pdf>, 2024.11.02. 최종접속).

77)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Ibid., p. 5.

78)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Ibid., p. 17.

79)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Ibid., pp. 230-232.

- 요약정리 문장을 사용할 것(예컨대 I am going to make 3 points now)과 주제 변환에 대한 표현(예컨대 I am now going to talk about ...)을 사용할 것
- 진술내용을 자주 요약 정리할 것
- 가정문 사용에 주의할 것
- 관용구, 유머, 반어법, 언어유희 등 발언 피할 것
- 절차 설명 시 순서대로 설명
- 전문 용어, 법률 용어, 그리고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를 미리 준비할 것.
- 귀족식 영국 영어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등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표현은 되도록 기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⁸⁰⁾

- 출임말(예컨대 I'll .../ you'll .../ ... won't... / don't ... 등)
- 수동형 문장(예컨대, 'this must be sent in by next week' 보다는 'Send this in by next week' 사용)
- 이중 부정문(예컨대, 'The evidence is not inconclusive' 보다는 'The evidence is conclusive' 사용)
- 대명사 사용 반복
- 'Would' and 'should' 사용(다른 언어권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없을 수 있음)
- 부정문을 이용한 질문(예컨대, 'Don't you think that ...?' / 'So you have no objection to ...?')
- 반대신문에서 불필요한 법률 용어 사용 등

또한 판사에게 소송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약하고, 질문의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만, 판사가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해하셨습니까?'와 같이 질문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송당사자가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체면 때문에 이해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핵심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⁸¹⁾

이처럼 동 지침서는 소송당사자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배려를 함으로써 이들이 모두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법적 평등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80)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Ibid., pp. 232-233

81)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Ibid., p. 233.

제4절 | 미국

1. 개관

미국은 소위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민이 보편화된 사회이다. 소년사법에서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소년범죄 예방국은 유색인종 또는 다문화가정 소년들이 빈곤지역, 편부모가정,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우범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⁸²⁾

우선 유색인종의 청소년은 백인 청소년보다 체포되어 법원에 회부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즉, 2019년에 백인청소년에 비해 흑인청소년은 2.4배, 아메리칸 원주민은 1.5배 더 체포된 반면, 아시아계 청소년의 체포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⁸³⁾ 이러한 원인으로는 차별적인 환경이나 차별적인 처우가 지적되기도 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편견 역시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유색인종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된다.⁸⁴⁾

「Vera Institute of Justice」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소년사법시스템에 편입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영어 구사 능력과 자녀에 대한 조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한다.⁸⁵⁾ 즉, 영어로만 제공되는 사법문서를 독해할 수 없는 부모는 자녀의 구금이나 수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고, 법정 외 합의를

82) 미국 소년비행예방국(OJJDP) 홈페이지, “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Literature Review” (<https://ojjdp.ojp.gov/model-programs-guide/literature-reviews/racial-and-ethnic-disparity>, 2024.11.2 최종접속).

83) “Scope of the Problem”, 앞의 OJJDP 홈페이지(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Literature Review) 참조.

84) “Contributing Factors to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앞의 OJJDP 홈페이지(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Literature Review) 참조.

85) Vera Institute of Justice, “If Parents Don’t Speak English Well, Will Their Kids Get Locked Up? - Language Barriers and 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2007.10., p. 1. (원문은 https://vera-institute.files.svcdn.com/production/downloads/publications/Language_Barriers_and_Disproportionate_Minority_Contact_in_the_Juvenile_Justice_System.pdf, 2024.6.20. 최종접속).

통한 사건 '조정'의 장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부모와의 소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경찰이 자녀를 일시 구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⁸⁶⁾ 이는 부모의 영어 능력에 따라 조력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구금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네바다 주와 텍사스 주에서 실시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소년원에 구금된 소년 중 58% 정도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부모와 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⁸⁷⁾

이하에서는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⁸⁸⁾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 내에서도 유색인종에 대한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리고 언어 장벽에 의한 처분의 불균형 가능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에 관한 법률」(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이하 'JJDPA'라 한다)이 2018년 개혁 법안('The Juvenile Justice Reform Act', JJRA)에 따라 개정되면서, 인종 및 민족에 의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⁸⁹⁾ 인종 및 민족 격차 해소와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⁹⁰⁾

첫째로, “불균형한 소수집단 접촉(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 DMC)”이라는

86) Vera Institute of Justice, “If Parents Don't Speak English Well, Will Their Kids Get Locked Up? - Language Barriers and 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p. 1.

87) Maria F. Ramiu/Dana Shoenberg, “Chapter 7: Strategies for Serving Hispanic Youth”, DMC Technical Assistance Manual, 4th Edition, 2006.10., p. 5. (<https://www.ylc.org/wp-content/uploads/2018/11/dmch7.pdf>, 2024.6.20. 최종접속).

88) 이하 미국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이유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자문 및 번역 감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89) JJDPA의 개정 역사에 대한 설명은 미국 소년비행예방국(OJJDP) 홈페이지, “Legislation” (<https://ojjdp.ojp.gov/about/legislation>, 2024.11.2. 최종접속) 참조.

90) 이하의 내용은 JJDPA의 핵심 요구사항에 따른 변경을 설명하는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A) Fact Sheet Series: Core Protections: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Act 4J, 2019.2., pp. 1~2의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표현 대신에 보다 정확한 용어인 “인종 및 민족 격차”(racial and ethnic disparities)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둘째로, 법률에 ‘민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공무원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에 인종뿐만 아니라 민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즉, 기존에 성별, 인종, 가족 소득, 장애를 기준으로 공평한 대우를 요구했던 JJDPA는 본 개정을 통해 소년사법시스템에 청소년의 민족(ethnicity)에 따른 공평한 대우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JJDPA는 주정부 차원에서 인종과 민족에 따른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관행 및 시스템 개선 전략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혁들을 시행하기 위한 각 주의 대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JJDPA는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¹⁾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법상 지원 강화

앞서 언급한 「Vera Institute of Justice」의 연구는 이민자 부모가 소년사법시스템에서 소외되고, 그 자녀가 수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언어 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잠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잠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⁹²⁾

우선 언어 장벽이 어떻게 체포나 구금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표적 연구의 수행 및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영어권 거주자들의 소년사법시스템 접근성이 제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지원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사법절차에서 청소년의 수감이 결정될 수 있는 주요한 시점에 고품질의 통역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지적한다.

91) 앞의 OJJDP 홈페이지, “Legislation” 참조.

92) Vera Institute of Justice, “If Parents Don't Speak English Well, Will Their Kids Get Locked Up? - Language Barriers and 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p. 11.

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 정책을 수행 중인 미국 내 여러 도시 중에서 뉴욕 주는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뉴욕 주는 정부부처 내에 “Race Equity Coordinator” 및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R.E.D.)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인종 및 민족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⁹³⁾ 또한 뉴욕 주는 “유색인종 청소년이 비행에 더 깊게 관여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인종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내 처우 담당 기관, 교정, 경찰, 변호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소년사법시스템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되도록 비행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한다.⁹⁴⁾

워싱턴 주는 인종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식 하에, ‘인식, 사실 및 행동 이니셔티브’(Awareness, Facts, and Action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 및 집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⁹⁵⁾ 범죄율과 소년에 대한 구금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유색인종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금 비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이나 취업기회의 차등, 유색인종 청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년사법절차 등 부정적인 사회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⁹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우선 워싱턴 주 King County의

93) 뉴욕 주 형사사법서비스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홈페이지, “Youth Justice” (<https://www.criminaljustice.ny.gov/ofpa/jj/jj-index.htm#programs>, 2024.6.20. 최종접속) 참조.

94) Keith Paul Medelis/Victor Victorio, “New York project aims to narrow gap between minority versus white juvies sent to community programs, not prison”,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Exchange, 2021.7.15. (<https://jjie.org/2021/07/15/new-york-project-aims-to-narrow-gap-between-minority-versus-white-juvies-sent-to-community-programs-not-prison/>, 2024.6.20. 최종접속).

95) 워싱턴 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Washington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홈페이지, “Reducing Racial & Ethnic Disparities” (<https://dcyf.wa.gov/practice/practice-improvement/ojj/racial-ethnic-disparities>, 2024.11.2. 최종접속).

96) 워싱턴 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Washington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홈페이지, “Racial Disproportionality” (<https://dcyf.wa.gov/practice/practice-improvement/o>

사례가 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구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가족 및 지역사회 조직과 주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구금 제로 로드맵”(The Road Map to Zero Youth Detention)을 실행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과 가족, 지역사회, 소년사법시스템의 주요 당사자가 모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모범 사례로는 ‘Keeping Kids in School and Out of Court, KKIS’가 있다. 이는 만성적인 무단 결석 및 그로 인한 징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과 공동체가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고, 소년법원의 판사에게 무단결석과 그로 인한 징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⁹⁷⁾

한편,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Multnomah County 소년법원은 주 교정기관에 수감된 유색인종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⁹⁸⁾

이처럼 각 주의 대책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제5절 | 일본

1. 개관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 국가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9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였는 바,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숙련 기술자의 경우에는 일본 체류기간에

jj/racial-ethnic-disparities/awareness/racial-disproportionality, 2024.11.2. 최종접속).

97) 위의 워싱턴 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 홈페이지, “Racial Disproportionality-Local and National Example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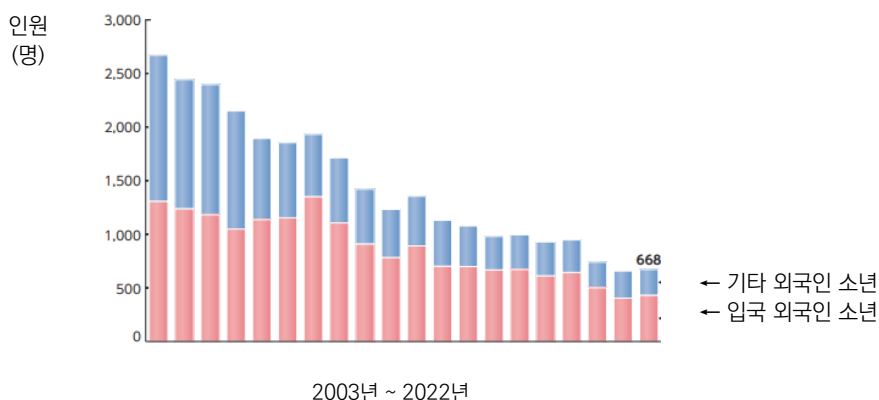
98) NCJJ/OJJDP, “Appendix G - “Multicultural Awareness: Developing Cultural Understanding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Combining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Treatment With Diversion for Juveniles in the Justice System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64481/#_NBK64481_dtl_, 2024.11.2. 최종접속) 참조.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⁹⁹⁾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⁰⁾

일본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에 뿌리를 둔(外国にルーツを持つ)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국국적 소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이중국적자나 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과, 부모는 외국인이지만, 그 자녀는 일본국적인 경우를 포함한다.¹⁰¹⁾

한편,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가정재판소에 송치한 외국인 범죄소년(과실운전치사상 등 및 도로교통법 위반은 제외)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5-1] 20년간(2003~2022) 외국인범죄소년 가정법원송치 현황



주1) 통계는 검찰통계연보에 따름

주2) 검사의 송치로 한정함

주3) 과실운전치사상 등 및 도로교통법 위반은 제외함

주4) 무국적자는 포함, 국적불명자는 불포함

※ 그림출처: 법무종합연구소, 범죄백서(2022(令和5年)), “非行少年と生育環境”, 241면, <그림 4-9-4-1>을 발췌함.

범죄백서(2022)에 의하면 검찰에서 가정재판소로 송치된 외국인 범죄소년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출신(26%)이 가장 많고, 필리핀(22.5%), 중국(21.8%), 페루(4.7%), 베트남(4%) 순으로 조사되었다.¹⁰²⁾ 또한 송치된 외국인 범죄소년의 죄명별 분류를 보

99) 내일신문 2024.5.7.,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https://m.naeil.com/news/read/509485>, 2024.11.2. 최종접속).

100) 이하 일본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손여옥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자문 및 번역 감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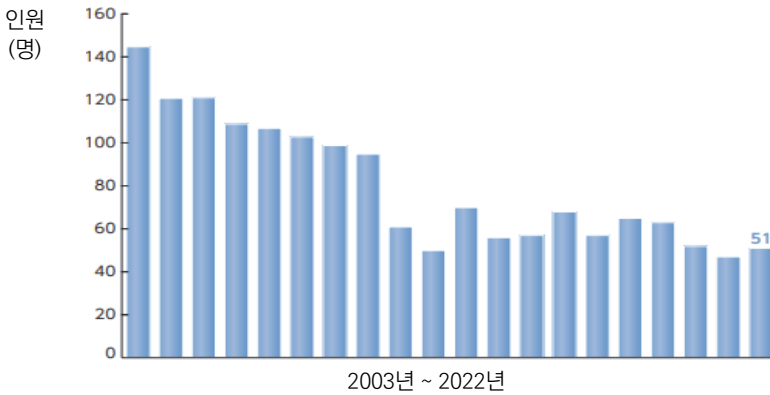
101) 吉田 朋弘, “海外につながる子どもの教育”, 2021.7.15., 2면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89581.pdf>, 2024.6.20. 최종접속) 참조.

102)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범죄백서(2022년판), 2023(法務省 法務総合研究所, 犯罪白書 - 非行少

면 절도(53.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15.2%), 횡령(6.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¹⁰³⁾

한편, 지난 20년간의 소년원 입원 외국인 인원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3-5-2] 20년간(2003~2022) 외국인 소년원 입원자 인원 추이



주) 통계는 '교정통계연보' 및 '소년교정통계연보'에 의함

※ 그림출처: 법무종합연구소, 범죄백서(2022(令和5年)), “非行少年と生育環境”, 242면, <그림 4-9-4-2>를 발췌함.

소년원에 입원한 외국인 소년을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3명, 중국 및 한국-조선(북한) 3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⁰⁴⁾

2. 소년사법제도의 개선과 이주배경청소년

가. 법무성의 지원 프로그램

일본은 이미 소년원 재원생에 대한 교정교육 프로그램 중에 일본인과는 다른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등 소년에 대하여 사회적응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본의 문화나 생활습관 등에 대한 이해도를 길러줌과 동시에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¹⁰⁵⁾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도 전술한

年と生育環境 - 令和5年版), 2023(<https://www.moj.go.jp/content/001410095.pdf>, 2024.6.20. 최종접속), 241면.

103)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위의 범죄백서(2022년판), 241면.

104)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앞의 범죄백서(2022년판), 242면.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법무대신은 일본이 향후 진정한 의미의 ‘공생사회’를 지향해 가기 위하여, 외국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입국하여 생활이 어려워 비행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도 포용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소년원에 재원 중인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의 갱생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⁰⁶⁾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무성은 2024년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 중 소년원 재원자에 대한 지도 교재인 「다문화 공생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착수하였다.¹⁰⁷⁾

이 외에도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모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기 어려운 청소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성장하여 일본어를 구사할 수는 있으나 사회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¹⁰⁸⁾

나. 개별 소년원의 프로그램 사례

1) 쿠리하마 소년원

일본 쿠리하마 소년원은 1993년에 일본 내 최초로 ‘국제과’를 신설한 남자소년원으로서, 일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고 한다.¹⁰⁹⁾ 국제과에 재원 중인 청소년은 모든 재원자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105)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앞의 범죄백서(2022년판), 151면, [표 3-2-4-9]에 의하면, 제1종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A3호의 교육(社会適応課程 III) 및 제2종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A5호 교육(社会適応課程 V)은 ‘외국인 등으로서 일본인과 다른 처우상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생활습관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의식, 태도를 기르기 위한 각종 지도”를 위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행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1종 소년원생 중 8명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

106) 法務省, “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5年12月1日金). 外国にルーツのある少年院在院者への処遇に関する質疑について”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8_00466.html, 2024.11.2. 최종접속).

107) 法務省, “外国にルーツのある少年院在院者に対する指導教材「多文化共生プログラム」のケース学習に係る視聴覚教材の作成業務の請負一式”(2024.10.17.) (https://www.moj.go.jp/kaikei/cho utatsu/kaikei11_02859.html, 2024.11.2. 최종접속).

108) Mainichi 2023.11.28., “Japan to introduce education program at reformatories for youths with foreign root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31127/p2a/00m/0na/011000c>, 2024.11.2. 최종접속) 참조.

생활지도 및 직업지도 외에도 일본 문화 및 생활 습관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이 제공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의 재원기간 동안 일본어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가치관을 학습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 재원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언어 학습보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마음으로 속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청소년도 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에게 일본어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 장래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¹¹⁰⁾

2) 세토소년원

일본 중부 아이치 현의 세토소년원은 외국국적이거나 부모가 외국 국적인 소년이 전체 재원자의 20%를 차지하는 소년원으로서, 2020년 4월부터 이러한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에 대한 그룹워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¹¹¹⁾ 이 그룹워크는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고충, 감정을 다른 청소년과 공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발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자 하고 있다. 즉, 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의 경우 모국이 아닌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으로서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이 바로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²⁾ 이러한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일본 내 소년원 중 세토소년원이 최초라고 한다.

109) yahoo.jp 2023.5.26., “「学校でも社会でも、親からも褒められてこなかった子が多いです」 — 日本初の少年院「国際科」で学ぶ、外国ルーツの子どもたち”, 1~2 면 (<https://news.yahoo.co.jp/articles/63e207328c099731e6a1a62392c9d8ca1098d0be>, 2024.11.2. 최종접속).

110) 앞의 yahoo.jp 2023.5.26., “「学校でも社会でも、親からも褒められてこなかった子が多いです」 — 日本初の少年院「国際科」で学ぶ、外国ルーツの子どもたち”, 4-5면.

111) Mainichi 2020.5.10., “Japanese juvenile detention center's group work helps boy open up, embrace Filipino root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00510/p2a/00m/0na/004000c>, 2024.11.2. 최종접속) 참조.

112) 위의 Mainichi 2020.5.10., “Japanese juvenile detention center's group work helps boy open up, embrace Filipino roots” 참조.

제6절 |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세계 각국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독일은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년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소년사건이 발생하여 소년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원보조인을 개입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도 조력이 필요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조력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처럼 소년법원보조인이 사건 초기에서부터 개입하여 소년을 지원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한다면 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더 충실히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일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원법을 개정하였는바, 이는 우리 소년사법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은 흑인이나 아시아계, 또는 소수민족 출신 배경을 가진 자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검토한 Lammy Review를 발표한 이후,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검찰, 사법기관 및 법무부 등에 제도 개혁을 위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나아가 법원에서는 판사들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소송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판 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이해를 도우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침서를 활용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배려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개정 노력을 하는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연방차원의 대책은 없지만, 각 주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주배

경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년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일본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이주배경청소년(외국에 뿌리를 둔 청소년)의 범죄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일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관련 소년사법기관 직원 및 소년 인식조사

조 영 오

제4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관련 소년사법기관 직원 및 소년 인식조사

제1절 | 조사 개관

1. 조사 목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년사법기관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조사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주배경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처우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의사소통 및 문화적인 차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소년사법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소년을 체포 및 조사 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역사를 활용하고 있고, 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하고 있고, 음식의 경우 소년의 문화나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소년사법기관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조사 및 처우 시 언어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처우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하지, 이주배경소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필요

한 자원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소년은 성인범죄자와 달리 처벌보다는 보호의 측면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들의 언어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소년사법절차 상에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비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이 소년사법시스템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비해 이들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대중의 관심을 덜 받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년사법시스템에서 인권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즉, 소년사법기관의 직원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조사 및 처우함에 있어 인적 및 물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이들의 재비행 예방이나 사회정착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장의 목적은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위에 열거한 이슈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소년사법기관에서 이들을 직접 대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소년사법절차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년들을 직접 조사하고 처우하는 소년사법기관 직원들의 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달리 이 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개인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소년사법기관에서 소년을 조사하거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소년들을 처우함에 있어 이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선점이나 인적 및 물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는 소년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보호기관(6호 처분 시설 등) 및 소년교도소와 같은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도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로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하는 소년과 보호자의 인식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자의 경우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소년만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본 조사는 조사방법 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 모두를 활용하였다. 먼저, 양적인 방법으로는 소년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법관이나 검사, 소년교도소 직원 등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어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즉, 경찰(학교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관),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소년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전국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 설문조사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진행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직원의 설문응답에 대한 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 대상자가 보다 솔직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질적인 방법으로는 소년사법기관 및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민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 설문조사보다 더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계획단계에서는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호자의 경우 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소년만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 대상 심층면담의 경우 현재 소년사법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소년들과 소년사법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소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이주·외국인관련 민간기관(글로벌청소년센터)의 교육을 받는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1-1]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조사 시기
설문조사	경찰관: 115명		7월 24일~ 8월 14일
	보호직: 100명(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심층면담	직원 (22명)	경찰관: 3명	4월 22일~ 8월 20일
		보호직: 분류심사원(2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2명), 보호관찰소(4명), 소년원(4명)	
		판사(2명), 변호사(2명), 6호 기관(1명), 민간기관(글로벌청소년센터: 2명)	
	소년 (9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명	
		분류심사원: 2명	
소년원: 4명			
글로벌청소년센터: 1명			

3. 조사 내용

소년사법기관 및 민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태도 및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 현황, 업무처리 시 이들의 개인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 고려 여부,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지원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하거나 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에 있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가 소년 및 보호자의 비행이나 범죄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셋째, 직원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파악한 소년들의 특성이나 비이주배경 청소년과 차이점 등에 대해 조사에 포함시켰다.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한 소년 대상 심층면담의 경우 자신들이 경험한 소년사법시스템 및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힘들었던 점이나 개선사항,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등에 대해 조사에 포함시켰다.

제2절 | 직원 인식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경찰 및 보호직 총 215명이 인식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남성이 135명(62.8%)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의 경우 40대가 85명(약 40%)으로 가장 많고, 30대(약 37%), 50대(약 13%), 20대(약 11%)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115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보호직 중에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47명(약 22%)으로 가장 많았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이 각각 35명(약 17%), 13명(6%), 5명(약 2%)이었다. 참여자 중 119명(약 55%)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도시(46명, 약 21%), 중소도시(33명, 약 15%) 순으로 많았고, 농어촌에 위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7명(약 8%)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에 참여한 경찰 및 보호직 직원 중 근무 연수가 가장 오래된 직원은 29년 이었고, 가장 짧은 사람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평균 약 9년 정도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표 4-2-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35	62.8
	여자	80	37.2
연령	20대	24	11.2
	30대	79	36.7

70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구분		빈도	비율(%)	
	40대	85	39.5	
	50대 이상	27	12.6	
직종(직렬)	경찰	115	53.5	
	보호직	비행예방센터	5	2.3
		보호관찰소	47	21.9
		분류심사원	13	6.0
		소년원	35	16.3
근무지역	특별시, 광역시	119	55.3	
	대도시	46	21.4	
	중소도시	33	15.3	
	농어촌	17	7.9	
근무연수		평균: 9.0년, 표준편차: 7.3년, 최솟값: 1년(이하), 최댓값: 29년		

2.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직원 및 기관의 노력 등

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경찰 및 보호직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이 현재 혹은 향후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이 현재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4명과 46명으로 전체 215명 중 약 23%의 직원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답하였다. 반면, ‘그런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60% 이었고,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비율은 약 17%로 경찰 및 보호직 직원 중의 상당수가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을 현재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 및 보호직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 및 비행이 향후 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가에 대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약 94%로 현재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비율인 약 77%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향후 더 증가할 것이며, 그로인해 인해 이들에 의한 범죄나 비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년사법기관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을 경찰, 소년보호기관 중 사회 내 기관, 소년보호기관 중 수용

기관으로 나누어서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소년보호 수용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이 현재 그리고 향후 중요한 이슈(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을 수용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이 소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비이주배경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4-2-2]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관련 인식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심 사원/ 소년원	전체	χ^2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은 현재 중요한 이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	1	1	4
		%	1.7%	1.9%	2.1%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6	13	7	46
		%	22.6%	25.0%	14.6%	21.4%
	그런 편이다	n	65	30	34	129
		%	56.5%	57.7%	70.8%	60.0%
매우 그렇다	n	22	8	6	36	
	%	19.1%	15.4%	12.5%	16.7%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	0	0	1
		%	0.9%	0.0%	0.0%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	4	1	11
		%	5.2%	7.7%	2.1%	5.1%
	그런 편이다	n	69	31	32	132
		%	60.0%	59.6%	66.7%	61.4%
	매우 그렇다	n	39	17	15	71
		%	33.9%	32.7%	31.3%	33.0%

나. 이주배경청소년 특성 이해를 위한 직원의 노력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8%와 28.4%로 전체 응답자 중

약 91%의 직원이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업무처리 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 74%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소년보호 수용기관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원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지에 대해 약 29%만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별도의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 47%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소년사법기관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지만,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직원의 관심 부족이라기보다는 이 소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적고 이들에 대한 정보나 교육 등이 기관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이해 정도에 있어서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소년보호 수용기관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용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기관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더 잘 이해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아무래도 수용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상 소년들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4-2-3] 직원의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 및 이해 노력*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전체	χ^2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 % 0.9%	0 0.0%	0 0.0%	1 0.5%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0 % 8.7%	6 11.5%	2 4.2%	18 8.4%			
	그런 편이다	n 67 % 58.3%	33 63.5%	35 72.9%	135 62.8%			
	매우 그렇다	n 37 % 32.2%	13 25.0%	11 22.9%	61 28.4%			
	업무처리시 이주배경청소년	전혀 그렇지 않다	n 2 % 1.7%	0 0.0%	0 0.0%		2 0.9%	4.5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전체	χ^2
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34	11	10	55
		%	29.6%	21.2%	20.8%	25.6%
	그런 편이다	n	69	34	33	136
		%	60.0%	65.4%	68.8%	63.3%
	매우 그렇다	n	10	7	5	22
		%	8.7%	13.5%	10.4%	10.2%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4	10	1	25
		%	12.2%	19.2%	2.1%	1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1	30	26	127
		%	61.7%	57.7%	54.2%	59.1%
	그런 편이다	n	28	12	18	58
		%	24.3%	23.1%	37.5%	27.0%
	매우 그렇다	n	2	0	3	5
		%	1.7%	0.0%	6.3%	2.3%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의 특성을 잘 이해하려고 별도의 노력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9	6	2	17
		%	7.8%	11.5%	4.2%	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56	23	19	98
		%	48.7%	44.2%	39.6%	45.6%
	그런 편이다	n	46	22	24	92
		%	40.0%	42.3%	50.0%	42.8%
	매우 그렇다	n	4	1	3	8
		%	3.5%	1.9%	6.3%	3.7%

*p<0.05

다. 기관의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지원

1) 지원 정도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함에 있어 기관의 지원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약 17%는 '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약 2%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지원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인적 자원의 적절성에 대해 약 32%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반면, 물적 자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약 20%만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소년사법기관 직원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

74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이 높고, 특히 물적 자원이 인적 자원에 비해 더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관련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및 소년보호 수용 기관 직원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적 자원의 적절성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약 46%의 직원이 인적 자원이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수용 기관인 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직원의 경우 약 23%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사회 내 기관인 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 약 9%만이 인적 자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즉, 소년사법기관에서 소년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인적 자원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표 4-2-4]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9	14	6	39
		%	16.5%	26.9%	12.5%	1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5	33	28	136
		%	65.2%	63.5%	58.3%	63.3%
	그런 편이다	n	19	5	12	36
		%	16.5%	9.6%	25.0%	16.7%
매우 그렇다	n	2	0	2	4	
	%	1.7%	0.0%	4.2%	1.9%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인적 자원이 적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4	23	9	46
		%	12.2%	44.2%	18.8%	2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48	24	28	100
		%	41.7%	46.2%	58.3%	46.5%
	그런 편이다	n	47	4	8	59
		%	40.9%	7.7%	16.7%	27.4%
매우 그렇다	n	6	1	3	10	
	%	5.2%	1.9%	6.3%	4.7%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물적(재정적) 자원이 적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6	11	4	31
		%	13.9%	21.2%	8.3%	1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4	32	34	140
		%	64.3%	61.5%	70.8%	65.1%
	그런 편이다	n	23	8	8	39
		%	20.0%	15.4%	16.7%	18.1%
매우 그렇다	n	2	1	2	5	
	%	1.7%	1.9%	4.2%	2.3%	

***p<.001

2) 업무관련 자료, 직원 교육 및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자료, 교육 및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규정의 경우 약 16%만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업무처리 관련 자료 비치 여부의 경우 약 14%만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소년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소년의 모국어로 제공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약 22%,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가 조금 넘었다. 아울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제공하는지에 대해 약 22%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 자료 및 직원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년에게 모국어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직원 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경찰이 보호직 직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보호직 중에서도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회 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해 약 19%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이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에 대해 약 47%가 '그런 편이다', 약 2%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 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반영에 있어서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 수용기관이 가장 높았고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순이었으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표 4-2-5]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자료, 직원 교육 및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와 관련된 매뉴얼/규정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9	12	8	39	2.5
		%	16.5%	23.1%	16.7%	18.1%	

76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7	33	31	141
		%	67.0%	63.5%	64.6%	65.6%
	그런 편이다	n	16	7	8	31
		%	13.9%	13.5%	16.7%	14.4%
	매우 그렇다	n	3	0	1	4
		%	2.6%	0.0%	2.1%	1.9%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2	15	8	45
		%	19.1%	28.8%	16.7%	2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7	35	29	141
		%	67.0%	67.3%	60.4%	65.6%
	그런 편이다	n	13	2	10	25
		%	11.3%	3.8%	20.8%	11.6%
매우 그렇다	n	3	0	1	4	
	%	2.6%	0.0%	2.1%	1.9%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소년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2	24	6	52
		%	19.1%	46.2%	12.5%	2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56	27	30	113
		%	48.7%	51.9%	62.5%	52.6%
	그런 편이다	n	35	1	11	47
		%	30.4%	1.9%	22.9%	21.9%
매우 그렇다	n	2	0	1	3	
	%	1.7%	0.0%	2.1%	1.4%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8	17	7	42
		%	15.7%	32.7%	14.6%	1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1	32	32	125
		%	53.0%	61.5%	66.7%	58.1%
	그런 편이다	n	32	3	8	43
		%	27.8%	5.8%	16.7%	20.0%
매우 그렇다	n	4	0	1	5	
	%	3.5%	0.0%	2.1%	2.3%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8	16	5	39
		%	15.7%	30.8%	10.4%	1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73	31	32	136
		%	63.5%	59.6%	66.7%	63.3%
	그런 편이다	n	22	5	10	37
		%	19.1%	9.6%	20.8%	17.2%
매우 그렇다	n	2	0	1	3	
	%	1.7%	0.0%	2.1%	1.4%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0	5	1	16	5.2
		% 8.7%	9.6%	2.1%	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49	25	20	94	
		% 42.6%	48.1%	41.7%	43.7%	
	그런 편이다	n 53	22	25	100	
		% 46.1%	42.3%	52.1%	46.5%	
매우 그렇다	n 3	0	2	5		
	% 2.6%	0.0%	4.2%	2.3%		

p<.01, *p<.001

3.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지원

가.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과 인식개선 및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통역사 확충과 같은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약 91%가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편이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약 90%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매뉴얼 마련과 시설 및 환경과 같은 물적 자원 개선 및 확충에도 각각 88%와 85%가 ‘필요한 편이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의 지원에 있어서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물적 자원 개선 및 확충에 대해서만 기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찰 및 소년보호 수용기관 직원이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직원 보다 물리적 및 환경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표 4-2-6] 물리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매뉴얼 마련	전혀 필요치 않다	n	2	2	0	4
		%	1.7%	3.8%	0.0%	1.9%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10	8	4	22
		%	8.7%	15.4%	8.3%	10.2%
	필요한 편이다	n	73	35	29	137
		%	63.5%	67.3%	60.4%	63.7%
매우 필요하다	n	30	7	15	52	
	%	26.1%	13.5%	31.3%	24.2%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예: 전문 통역사 확충)	전혀 필요치 않다	n	1	0	0	1
		%	0.9%	0.0%	0.0%	0.5%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5	7	6	18
		%	4.3%	13.5%	12.5%	8.4%
	필요한 편이다	n	65	31	29	125
		%	56.5%	59.6%	60.4%	58.1%
매우 필요하다	n	44	14	13	71	
	%	38.3%	26.9%	27.1%	33.0%	
물적 자원(시설, 환경 등) 개선 및 확충	전혀 필요치 않다	n	2	0	0	2
		%	1.7%	0.0%	0.0%	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10	15	5	30
		%	8.7%	28.8%	10.4%	14.0%
	필요한 편이다	n	75	29	31	135
		%	65.2%	55.8%	64.6%	62.8%
매우 필요하다	n	28	8	12	48	
	%	24.3%	15.4%	25.0%	22.3%	
이주배경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민간 기관 확충	전혀 필요치 않다	n	1	1	0	2
		%	0.9%	1.9%	0.0%	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8	8	3	19
		%	7.0%	15.4%	6.3%	8.8%
	필요한 편이다	n	69	34	36	139
		%	60.0%	65.4%	75.0%	64.7%
매우 필요하다	n	37	9	9	55	
	%	32.2%	17.3%	18.8%	25.6%	

*p<.05

나. 직원 역량강화 및 소년/보호자 교육 측면에서의 지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 거의 대부분(약 97%)은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부모의 자녀 양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주배경관련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편이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9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직원 역량강화 및 소년/보호자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 경찰,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소년보호 수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4-2-7] 직원 인식개선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직원 역량강화 (이주배경관련 인식 향상 교육 등)	전혀 필요치 않다	n	2	0	0	2
		%	1.7%	0.0%	0.0%	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9	9	3	21
		%	7.8%	17.3%	6.3%	9.8%
	필요한 편이다	n	84	36	36	156
		%	73.0%	69.2%	75.0%	72.6%
	매우 필요하다	n	20	7	9	36
		%	17.4%	13.5%	18.8%	16.7%
이주배경청소 년과 부모의 소년사법절차 에 대한 이해 증진	전혀 필요치 않다	n	1	0	0	1
		%	0.9%	0.0%	0.0%	0.5%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4	2	0	6
		%	3.5%	3.8%	0.0%	2.8%
	필요한 편이다	n	75	34	31	140
		%	65.2%	65.4%	64.6%	65.1%
	매우 필요하다	n	35	16	17	68
		%	30.4%	30.8%	35.4%	31.6%
부모에게 교육 제공(자녀양육, 언어, 한국문화 이해 등)	전혀 필요치 않다	n	1	0	0	1
		%	0.9%	0.0%	0.0%	0.5%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5	0	1	6
		%	4.3%	0.0%	2.1%	2.8%
	필요한 편이다	n	63	37	31	131
		%	54.8%	71.2%	64.6%	60.9%
	매우 필요하다	n	46	15	16	77
		%	40.0%	28.8%	33.3%	35.8%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전혀 필요치 않다	n 1 % 0.9%	0 0.0%	0 0.0%	1 0.5%	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n 11 % 9.6%	6 11.5%	5 10.4%	22 10.2%	
	필요한 편이다	n 73 % 63.5%	35 67.3%	33 68.8%	141 65.6%	
		매우 필요하다	n 30 % 26.1%	11 21.2%	10 20.8%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및 문화 관련 이슈

가. 언어 및 문화 관련 어려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년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소년보호기관 직원에게 업무처리 시 소년의 언어 및 문화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언어적인 어려움의 경우 약 73%의 직원이 업무처리 시 어려움이 있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고 답하였으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 중 경찰과 소년보호 수용시설 직원의 비율이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 직원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언어적인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업무처리를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 약 80%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통역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기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찰이 약 92%로 가장 높았으며, 소년보호 수용기관이 약 73%였고,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이 약 60%로 가장 낮았다.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처리 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약 75%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소년보호 수용시설 직원이 약 83%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이 약 79%였고,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이 약 58%로 가장 낮았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을 대하는 소년사법기관 직원들은 소년의 언어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업무처리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 [표 4-2-8]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 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7	3	13
		%	2.6%	13.5%	6.3%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1	16	9	46
		%	18.3%	30.8%	18.8%	21.4%
	그런 편이다	n	76	19	33	128
		%	66.1%	36.5%	68.8%	59.5%
	매우 그렇다	n	15	10	3	28
		%	13.0%	19.2%	6.3%	13.0%
언어적인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7	3	13
		%	2.6%	13.5%	6.3%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3	16	10	49
		%	20.0%	30.8%	20.8%	22.8%
	그런 편이다	n	70	18	29	117
		%	60.9%	34.6%	60.4%	54.4%
	매우 그렇다	n	19	11	6	36
		%	16.5%	21.2%	12.5%	16.7%
업무처리를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	5	4	10
		%	0.9%	9.6%	8.3%	4.7%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8	16	9	33
		%	7.0%	30.8%	18.8%	15.3%
	그런 편이다	n	80	22	30	132
		%	69.6%	42.3%	62.5%	61.4%
	매우 그렇다	n	26	9	5	40
		%	22.6%	17.3%	10.4%	18.6%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시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0	1	4
		%	2.6%	0.0%	2.1%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1	22	7	50
		%	18.3%	42.3%	14.6%	23.3%
	그런 편이다	n	78	25	36	139
		%	67.8%	48.1%	75.0%	64.7%
	매우 그렇다	n	13	5	4	22
		%	11.3%	9.6%	8.3%	10.2%

*p<.05, **p<.01, ***p<.001

나. 통역사에 대한 직원의 인식

소년사법기관 직원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 시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통역사의 역할이 소년사법기관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통역사는 외국어 통역 능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소년사법시스템 및 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직원들에게 통역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약 75%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특히 소년보호 사회 내 기관인 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다만, 경찰의 경우 소년보호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약 69%만이 통역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경찰의 경우 소년보호기관보다 더 많은 이주배경청소년과 성인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통역사를 더 오랫동안 활용해 왔고 이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역사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약 97%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통역사의 통역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약 8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반면, 통역사의 법률적인 이해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 62%만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통역 시 통역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약 40%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소년사법기관에서 통역을 하는 전문가들은 통역업무에 대해서는 뛰어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고, 때로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의견이 아닌 통역사 사건이 통역에 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표 4-2-9] 통역사에 대한 직원의 인식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통역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 2.6%	0 0.0%	0 0.0%	3 1.8%	29.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33 % 28.7%	0 0.0%	6 22.2%	39 23.5%			
	그런 편이다	n 66 % 57.4%	16 66.7%	8 29.6%	90 54.2%			
	매우 그렇다	n 13 % 11.3%	8 33.3%	13 48.1%	34 20.5%			
	통역사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 % 0.9%	0 0.0%	0 0.0%		1 0.6%	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3 % 2.6%	2 7.4%	0 0.0%		5 2.9%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그런 편이다	n	71	14	17	102
		%	61.7%	51.9%	60.7%	60.0%
	매우 그렇다	n	40	11	11	62
		%	34.8%	40.7%	39.3%	36.5%
통역사의 법률적인 이해력이 적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1	0	4
		%	2.6%	4.0%	0.0%	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41	12	7	60
		%	35.7%	48.0%	25.9%	35.9%
	그런 편이다	n	64	12	14	90
		%	55.7%	48.0%	51.9%	53.9%
매우 그렇다	n	7	0	6	13	
	%	6.1%	0.0%	22.2%	7.8%	
통역사의 통역이 정확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	0	0	1
		%	0.9%	0.0%	0.0%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6	3	1	20
		%	13.9%	13.0%	3.7%	12.1%
	그런 편이다	n	92	18	21	131
		%	80.0%	78.3%	77.8%	79.4%
매우 그렇다	n	6	2	5	13	
	%	5.2%	8.7%	18.5%	7.9%	
통역사가 통역 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7	1	0	8
		%	6.1%	5.0%	0.0%	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6	9	13	88
		%	57.4%	45.0%	52.0%	55.0%
	그런 편이다	n	38	8	10	56
		%	33.0%	40.0%	40.0%	35.0%
매우 그렇다	n	4	2	2	8	
	%	3.5%	10.0%	8.0%	5.0%	

***p<.001

5.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 특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

가. 소년 특성

1)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소년사법기관 직원이 인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소년사법절차 및 비행/범죄 행동에 대한 이해정도를 질문한 결과, 약 70%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다(‘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고 답하였고,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약 34%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해에 있어서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소년보호기관 직원보다 더 이주배경청소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소년들이 범죄나 비행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약 5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소년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약 4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해력에 있어서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기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소년보호직 직원보다 소년의 이해력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중에는 국내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소년도 있지만 외국에서 출생해서 이주 온 소년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대체로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에 가까운 직원들이 외국에서 출생한 소년은 국내에서 출생한 소년보다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고 답하였다. 외국인 신분인 소년의 경우 자신의 비행이나 범죄가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 연장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약 60%의 직원만이 소년들이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 [표 4-2-10]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	7	4	13
		%	1.7%	13.5%	8.3%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1	18	12	51
		%	18.3%	34.6%	25.0%	23.7%
	그런 편이다	n	78	24	28	130
		%	67.8%	46.2%	58.3%	60.5%
	매우 그렇다	n	14	3	4	21
		%	12.2%	5.8%	8.3%	9.8%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8	4	0	22
		%	15.7%	7.7%	0.0%	1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7	30	22	119
		%	58.3%	57.7%	45.8%	55.3%
그런 편이다	n	27	17	25	69	
	%	23.5%	32.7%	52.1%	32.1%	
매우 그렇다	n	3	1	1	5	
	%	2.6%	1.9%	2.1%	2.3%	
이주배경청소년은 범죄/비행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8	2	0	10
		%	7.0%	3.8%	0.0%	4.7%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52	18	13	83
		%	45.2%	34.6%	27.1%	38.6%
그런 편이다	n	51	29	33	113	
	%	44.3%	55.8%	68.8%	52.6%	
매우 그렇다	n	4	3	2	9	
	%	3.5%	5.8%	4.2%	4.2%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 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1	2	0	13
		%	9.6%	3.8%	0.0%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8	20	23	111
		%	59.1%	38.5%	47.9%	51.6%
그런 편이다	n	33	30	23	86	
	%	28.7%	57.7%	47.9%	40.0%	
매우 그렇다	n	3	0	2	5	
	%	2.6%	0.0%	4.2%	2.3%	
외국에서 출생한 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한 소년보다 한국에 이해력이 낮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1	1	5
		%	2.6%	1.9%	2.1%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9	7	3	19
		%	7.8%	13.5%	6.3%	8.8%
그런 편이다	n	84	37	40	161	
	%	73.0%	71.2%	83.3%	74.9%	
매우 그렇다	n	19	7	4	30	
	%	16.5%	13.5%	8.3%	14.0%	
외국에서 출생한 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한 소년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1	0	4
		%	2.6%	1.9%	0.0%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5	6	3	24
		%	13.0%	11.5%	6.3%	11.2%
그런 편이다	n	77	39	40	156	
	%	67.0%	75.0%	83.3%	72.6%	
매우 그렇다	n	20	6	5	31	
	%	17.4%	11.5%	10.4%	14.4%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외국신분인 소년의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0	1	2	13	
		%	8.7%	1.9%	4.2%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31	26	16	73	11.2
		%	27.0%	50.0%	33.3%	34.0%	
	그런 편이다	n	67	21	26	114	
		%	58.3%	40.4%	54.2%	53.0%	
	매우 그렇다	n	7	4	4	15	
		%	6.1%	7.7%	8.3%	7.0%	

**p<.01

2)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배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원 및 기관 내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질문하였다. 직원 중 약 66%가 이주배경청소년이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고, 특히 경찰관의 경우 약 80%가 소년과 직원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직원 중 약 73%가 이주배경청소년이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고, 역시 경찰관이 소년보호직 직원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 다른 소년들에게 놀림을 당하는지에 대해 직원 중 약 76%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평소 생활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절차 내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고, 특히 경찰단계에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2-11]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	2	2	6	
		%	1.7%	3.8%	4.2%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21	28	17	66	26.3***
		%	18.3%	53.8%	35.4%	30.7%	
	그런 편이다	n	86	20	29	135	
		%	74.8%	38.5%	60.4%	62.8%	
	매우 그렇다	n	6	2	0	8	
		%	5.2%	3.8%	0.0%	3.7%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	2	0	4	24.4***
		%	1.7%	3.8%	0.0%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6	23	15	54	
		%	13.9%	44.2%	31.3%	25.1%	
	그런 편이다	n	89	24	33	146	
		%	77.4%	46.2%	68.8%	67.9%	
매우 그렇다	n	8	3	0	11		
	%	7.0%	5.8%	0.0%	5.1%		
이주배경 때문에 소년이 다른 소년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2	1	0	3	13.3*
		%	1.7%	1.9%	0.0%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7	20	11	48	
		%	14.8%	38.5%	22.9%	22.3%	
	그런 편이다	n	84	25	32	141	
		%	73.0%	48.1%	66.7%	65.6%	
	매우 그렇다	n	12	6	5	23	
		%	10.4%	11.5%	10.4%	10.7%	

* $p < .05$, *** $p < .001$

나. 보호자의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보호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소년의 양육 및 비행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보호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직원 중 약 86%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소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보호자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의 경우 약 31%만이 보호자들이 소년사법절차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경찰관의 경우 보호자의 이해력을 보호직 직원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의 경우 자국의 범죄 및 비행 행동에 대한 기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짧을수록 이에 대한 이해력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의 범죄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이해력에 대해 직원 중 절반 정도만 보호자가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즉, 나머지 절반 정도의 보호자는 청소년 범죄나 비행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소년들이 범죄에 개입할 여지도 있다. 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외국신분 보호자의 경우 자신이 추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 본 조사에서도 약 75%에 해당하는 직원이 보호자들이 소년의 비행으로 인해 강제추방의 두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보호자의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은 소년의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약 6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 범죄나 비행 예방에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혹은 범죄 연루를 더 촉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비이주배경 가정보다 더 필요하며, 보호자에 대한 교육 또한 달라야 할 수도 있다.

▶▶▶ [표 4-2-12] 보호자의 한국어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소년의 보호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3	1	1	5
		%	2.6%	1.9%	2.1%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0	10	5	25
		%	8.7%	19.2%	10.4%	11.6%
	그런 편이다	n	83	37	36	156
		%	72.2%	71.2%	75.0%	72.6%
	매우 그렇다	n	19	4	6	29
		%	16.5%	7.7%	12.5%	13.5%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9	3	0	22
		%	16.5%	5.8%	0.0%	1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63	32	31	126
		%	54.8%	61.5%	64.6%	58.6%
	그런 편이다	n	29	17	17	63
		%	25.2%	32.7%	35.4%	29.3%
	매우 그렇다	n	4	0	0	4
		%	3.5%	0.0%	0.0%	1.9%
소년의 보호자는 범죄/비행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10	5	0	15
		%	8.7%	9.6%	0.0%	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49	20	23	92
		%	42.6%	38.5%	47.9%	42.8%
	그런 편이다	n	54	26	24	104
		%	47.0%	50.0%	50.0%	48.4%
	매우 그렇다	n	2	1	1	4
		%	1.7%	1.9%	2.1%	1.9%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외국신분인 보호자의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4	1	1	6	8.3
		% 3.5%	1.9%	2.1%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n 18	18	12	48	
		% 15.7%	34.6%	25.0%	22.3%	
	그런 편이다	n 76	26	27	129	
		% 66.1%	50.0%	56.3%	60.0%	
	매우 그렇다	n 17	7	8	32	
		% 14.8%	13.5%	16.7%	14.9%	

*p<.05

6.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의 차이에 대한 직원의 인식

가. 한국어, 한국 문화,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재범예방 노력에 있어 서의 차이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직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는지 질문하였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경우 각각 약 85%와 약 81%의 직원들이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의 경우 기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찰관이 보호직 직원보다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이해와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각각 약 71%와 약 74%의 직원이 '차이가 있는 편이다' 혹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경우 경찰관이 보호직 직원보다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서비스/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약 77%가 '차이가 있는 편이다' 혹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고, 재비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약 63%만이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단, 경찰관과 보호직 직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 [표 4-2-13] 한국어, 한국 문화,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재범예방 노력에 있어서의 차이 인식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한국어 능력	전혀 차이가 없다	n	1	2	1	4
		%	0.9%	3.8%	2.1%	1.9%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7	14	8	29
		%	6.1%	26.9%	16.7%	13.5%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92	29	35	156
		%	80.0%	55.8%	72.9%	72.6%
매우 차이가 있다	n	15	7	4	26	
	%	13.0%	13.5%	8.3%	12.1%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전혀 차이가 없다	n	1	2	1	4
		%	0.9%	3.8%	2.1%	1.9%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12	14	10	36
		%	10.4%	26.9%	20.8%	16.7%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8	30	33	151
		%	76.5%	57.7%	68.8%	70.2%
매우 차이가 있다	n	14	6	4	24	
	%	12.2%	11.5%	8.3%	11.2%	
범죄/비행에 대한 이해	전혀 차이가 없다	n	3	3	3	9
		%	2.6%	5.8%	6.3%	4.2%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21	19	13	53
		%	18.3%	36.5%	27.1%	24.7%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78	26	31	135
		%	67.8%	50.0%	64.6%	62.8%
매우 차이가 있다	n	13	4	1	18	
	%	11.3%	7.7%	2.1%	8.4%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혀 차이가 없다	n	3	2	3	8
		%	2.6%	3.8%	6.3%	3.7%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18	21	10	49
		%	15.7%	40.4%	20.8%	22.8%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1	23	32	136
		%	70.4%	44.2%	66.7%	63.3%
매우 차이가 있다	n	13	6	3	22	
	%	11.3%	11.5%	6.3%	10.2%	
서비스/프로그램 참여 정도	전혀 차이가 없다	n	1	1	1	3
		%	0.9%	1.9%	2.1%	1.4%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17	18	11	46
		%	14.8%	34.6%	22.9%	21.4%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9	28	35	152
		%	77.4%	53.8%	72.9%	70.7%
매우 차이가 있다	n	8	5	1	14	
	%	7.0%	9.6%	2.1%	6.5%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재비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	전혀 차이가 없다	n 2 % 1.7%	3 5.8%	2 4.2%	7 3.3%	10.5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32 % 27.8%	22 42.3%	19 39.6%	73 34.0%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73 % 63.5%	23 44.2%	27 56.3%	123 57.2%		
	매우 차이가 있다	n 8 % 7.0%	4 7.7%	0 0.0%	12 5.6%		

* $p < .05$, *** $p < .001$

나. 보호자,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보호자의 보호력,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보호자 보호력의 경우 약 88%의 직원이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보호자의 보호력에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고, 직원과 소년의 관계 형성의 경우 약 67%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 편이다' 혹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경찰관이 보호직 직원보다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약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상당수의 직원들이 한국어, 한국 문화, 범죄/비행 행동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참여,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즉,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비행원인을 고려하여, 소년사법기관에서 처우 방식 및 이들의 재범예방을 위한 정책이 비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달라야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표 4-2-14] 보호자의 보호력, 직원 및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 인식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보호자의 보호력	전혀 차이가 없다	n	1	1	0	2
		%	0.9%	1.9%	0.0%	0.9%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13	5	7	25
		%	11.3%	9.6%	14.6%	11.6%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5	36	37	158
		%	73.9%	69.2%	77.1%	73.5%
매우 차이가 있다	n	16	10	4	30	
	%	13.9%	19.2%	8.3%	14.0%	
기관 직원과의 관계 형성	전혀 차이가 없다	n	1	2	0	3
		%	0.9%	3.8%	0.0%	1.4%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24	22	21	67
		%	20.9%	42.3%	43.8%	31.2%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2	26	26	134
		%	71.3%	50.0%	54.2%	62.3%
매우 차이가 있다	n	8	2	1	11	
	%	7.0%	3.8%	2.1%	5.1%	
기관의 다른 소년과의 관계 형성	전혀 차이가 없다	n	2	4	1	7
		%	1.7%	7.7%	2.1%	3.3%
	차이가 없는 편이다	n	21	16	15	52
		%	18.3%	30.8%	31.3%	24.2%
	차이가 있는 편이다	n	83	27	31	141
		%	72.2%	51.9%	64.6%	65.6%
매우 차이가 있다	n	9	5	1	15	
	%	7.8%	9.6%	2.1%	7.0%	

*p<.05

7.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보호처분의 주된 목적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 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이 다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원들에게 질문하였다. 소년이나 보호자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경제적인 지원, 소년과 보호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 법률 지원 등 총 8가지 지원을 질문에 포함하였다. ‘도움되는 편이다’ 혹은 ‘매우 도움된다’에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호자 교육 지원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직원 중 약 94%가 보호자 교육이 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보호자는 소년들보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이주배경청소년과의 비교 시 보호력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답변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국어 향상을 위한 지원,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 소년의 학교 교육 및 적응을 위한 지원, 법률적인 지원도 모두 약 90%의 직원들이 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8가지 지원 중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었다. 요컨대,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여러 면에서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지원의 경우 소년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4-2-15]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한국어 향상을 위한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2	1	0	3
		%	1.7%	1.9%	0.0%	1.4%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7	7	3	17
		%	6.1%	13.5%	6.3%	7.9%
	도움되는 편이다	n	79	35	38	152
		%	68.7%	67.3%	79.2%	70.7%
매우 도움된다	n	27	9	7	43	
	%	23.5%	17.3%	14.6%	20.0%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2	1	0	3
		%	1.7%	1.9%	0.0%	1.4%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10	8	4	22
		%	8.7%	15.4%	8.3%	10.2%
	도움되는 편이다	n	74	34	36	144
		%	64.3%	65.4%	75.0%	67.0%
매우 도움된다	n	29	9	8	46	
	%	25.2%	17.3%	16.7%	21.4%	
보호자 교육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1	0	0	1
		%	0.9%	0.0%	0.0%	0.5%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4	6	2	12
		%	3.5%	11.5%	4.2%	5.6%
	도움되는 편이다	n	71	31	33	135
		%	61.7%	59.6%	68.8%	62.8%
매우 도움된다	n	39	15	13	67	
	%	33.9%	28.8%	27.1%	31.2%	

94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구분		경찰	비행예방 센터/보호 관찰소	분류 심사원/ 소년원	합계	χ^2	
경제적인 지원(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3	0	1	4	5.0
		%	2.6%	0.0%	2.1%	1.9%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15	12	5	32	
		%	13.0%	23.1%	10.4%	14.9%	
	도움되는 편이다	n	79	33	35	147	
		%	68.7%	63.5%	72.9%	68.4%	
매우 도움된다	n	18	7	7	32		
	%	15.7%	13.5%	14.6%	14.9%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2	0	0	2	4.9
		%	1.7%	0.0%	0.0%	0.9%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9	8	3	20	
		%	7.8%	15.4%	6.3%	9.3%	
	도움되는 편이다	n	81	34	34	149	
		%	70.4%	65.4%	70.8%	69.3%	
매우 도움된다	n	23	10	11	44		
	%	20.0%	19.2%	22.9%	20.5%		
소년과 보호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2	0	1	3	4.0
		%	1.7%	0.0%	2.1%	1.4%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8	8	3	19	
		%	7.0%	15.4%	6.3%	8.8%	
	도움되는 편이다	n	79	33	33	145	
		%	68.7%	63.5%	68.8%	67.4%	
매우 도움된다	n	26	11	11	48		
	%	22.6%	21.2%	22.9%	22.3%		
소년의 학교교육 및 적응을 위한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2	0	1	3	2.5
		%	1.7%	0.0%	2.1%	1.4%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8	6	3	17	
		%	7.0%	11.5%	6.3%	7.9%	
	도움되는 편이다	n	77	34	34	145	
		%	67.0%	65.4%	70.8%	67.4%	
매우 도움된다	n	28	12	10	50		
	%	24.3%	23.1%	20.8%	23.3%		
법률적인 지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n	1	1	0	2	4.8
		%	0.9%	1.9%	0.0%	0.9%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n	9	6	1	16	
		%	7.8%	11.5%	2.1%	7.4%	
	도움되는 편이다	n	77	35	36	148	
		%	67.0%	67.3%	75.0%	68.8%	
매우 도움된다	n	28	10	11	49		
	%	24.3%	19.2%	22.9%	22.8%		

제3절 | 직원 면담조사

1. 수사단계

가. 이주배경청소년 범죄/비행 동향, 업무관련 매뉴얼/규정, 외국어 안내문 및 직원교육 등

1)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비행 동향 파악의 어려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 범죄자 및 이들의 범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들은 같은 국적이나 민족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나 비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경찰B: 현재 동두천이 비슷해요. 나이지리아 난민들이 일대에 많이 거주하면서 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상권까지 차지해 버려서 원래 거주하던 한인들이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도 잦습니다...의정부의 경우 점점 이슬람 문화 배경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포진되어 가고 있을 거예요. 특히, 몽골이나 중국 쪽은 상당히 응집되어 있어서, 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경찰C: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고려인 같은 경우,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대부분 외국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가정 자녀들은 신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 및 규정 마련의 필요성

경찰이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처리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주배경청소년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들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을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규정의 경우 아직까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이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역사의 자질, 비용 등에 대해 내부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통역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고, 소년을 조사하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년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통역사를 요청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A: 경찰도 (통역사의) 조건이나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역 요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어학 점수나 외국 생활 경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외국어 조사 시 통역사를 붙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보호자 동석 조사 단계에서 통역 관련 문제가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의무인데, 아이는 한국어를 원하고 보호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역사를 배치할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경찰B: (통역 관련 부분은) 수사 지침 등에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경찰C: 제가 민간 통역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본 결과, 위촉할 때 이중 언어를 하는 경찰관이나 외부 전문업체가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쳐 심사합니다. 이때,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만 위촉이 돼요.”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언어적인 장벽으로 경찰관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체포 단계인데, 이 경우에는 통역사를 현장에서 즉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답하였다.

경찰A: 성인 외국인이 왔을 때 매뉴얼을 찾아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한국어, 영어, 그 외의 언어 순서로 해당 언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통역사를 불러주겠다고 안내합니다. 사실 외국인이나 이주배경과 관련해서 가장 힘든 단계는 체포 단계입니다. 체포해서 인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체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면 저항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경찰C: 현행법 체포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역이 힘들기 때문에 휴대폰에 언어별로 저장해 놓은 미란다 원칙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체포해 온 후에 통역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3)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보강

이주배경청소년 혹은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비행을 직원들이 더 잘 이해할수록 소년들에 대한 처우도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편적인 인권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고 답변한 직원이 있었다.

경찰A: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것조차 눈치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을 받아봤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B: (이주배경관련 교육이) 따로 있지는 않고 주기적인 인권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 권은 모두가 같고, 인권 교육에 선입견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4) 외국어로 번역된 소년사법절차 안내문 제공 여부 및 프로그램 운영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소년과 보호자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통역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이후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수사 및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이들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지 질문하였다. 경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번역된 것을 제공한다고 답하였고,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 외에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해 외국어로 된 정보는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도 경찰 전체적으로는 없다. 다만, 기관마다 상황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A: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모든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권리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키스에 접속해서 외국어 종류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키스에 바로 접속할 수 없어서 pdf 형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파파고 앱을 활용한 사례들에 대해 수집해 놓습니다.

경찰B: 권리 고지 안내서가 각 나라의 언어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출력물을 부모나 아이에게 주죠.

경찰C: (지원이) 외부에서는 없어요. 내부의 경우, 범죄 예방 예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경찰학교 외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캠페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라 좀 많이 부족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어요. 다만, 저희 경찰서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해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과 후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님이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하죠.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혹은 부모님을 통해 배운 문화로 인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인식이 한국 문화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범죄 예방 교육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특히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사법절차 상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요구하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범죄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하는 것과 필요 이상의 개인적인 정보를 묻지 않는 정도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경찰A: 주로 통역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통역이 필요한 대상이나 체포됐을 때 바로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중국과 같이 국가별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인권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B: 언론에서도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수 집단이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죠. 한편으로는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 보호가 필요한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쉽지 않으니,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죠...예전에는 종교가 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지금은 종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 인권을 저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종교나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는 일체 빠졌죠. 예전에는 필수 항목에 지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종교는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인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다면 종교가 필요하겠지만 종교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굳이 종교를 물어볼 필요는 없죠.

경찰C: (직원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모두 외국인이고 가정에서 주로 외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인 아버지가 아닌 외국인인 어머니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또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 아이가 어머니의 나라로 갔다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어린이집과 방과 후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모여 지내다 보니 언어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런데 직원들은 이런 아이들을 접했을 때,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한국말을 못 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 특성

1) 소년 및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력 부족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 중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오는 소년과 보호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배경 특성상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이므로 경찰이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 및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외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소년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범죄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보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보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소년의 범죄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어 이해력과 관련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소년들은 일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만 소년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소년들에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소년들이 언어의 피상적인 의미가 아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 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직원들은 소년보다는 소년의 보호자가 대체로 한국어 이해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A: 제가 주로 만나본 친구들은 모친이 외국 이주 배경이시고 부친이 한국인입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나 수사 과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주 배경이 있는 부모님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상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찰B: 대부분 모친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양육을 주로 하는 모친이 한국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아이들보다 한국어 노출이 비교적 부족하다 보니까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전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어 뜻은 알겠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소년 중 일부는 의사소통도 좀 힘들어해요. 대부분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는데 환경이나 언어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 해서 출산을 하다 보니 아이를 케어하기 어려워요. 아버지는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 아이가 이질감을 느끼죠. 한국 아이들은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어른들이 양육을 도와주지만, 이런 환경에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지적장애를 의심할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경찰C: 고려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역을 요청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언어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가 적지 않게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한국어 이해정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A: 중국과 한국의 배경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청소년이 본인이 불리할 때는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중국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소년원에 갈 법한 친구들은 집단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단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한국 청소년들이랑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같이 어울린 것으로 생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에 들어오면 본인의 언어적인 한계를 표출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요.

경찰C: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한국말은 몰라요 라고 말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인을 입회시키죠. 그런데 이건 사실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이라기보다 외국인들의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2) 통역서비스 제공시 어려움

한국어 이해력에 있어서 소년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소년의 경우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통역사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사가 전일제가 아니다 보니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만,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통역사도 찾기가 좀 더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A: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의 경우에는 파파고앱이나 PDF를 활용해서 안내 주고, 이후에 피해자/피의자 조사 때는 통역가를 섭외해서 같이 진행합니다. 이처럼 미리 사전에 통역가를 섭외할 수 있을 때는 같이 있지만, 고소 고발이나 진정 접수와 같은 당일 방문은 외사 직원이나 해당 언어에 유창한 직원이 있으면 도움을 받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파파고 앱을 활용합니다.

경찰B: (통역이) 필요할 때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키스에 통역사분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통역사 분들 대부분이 생업이 따로 있으셔서 시간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새벽에 현행범이 체포돼서 오는데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사가 올 때까지는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죠...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 소수 민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나라의 언어가 아닌 방언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통역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통역사가 한두 명 정도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 남부 쪽에 수소문해서 찾아야 해요.

경찰C: 저희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통역사가 많이 위촉되어 있어서 괜찮은 편입니다. 언어별로 대략 40명이 있고, 러시아어와 다음으로 베트남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사들도 본업이 있어서 요청하자마자 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3) 통역사의 역량 증진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

소년사법절차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말을 모르거나 한국말이 서툰 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통역사를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통역사는 통역역량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법률적인 용어 및 소년의 인권과 같은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들은 통역사의 통역 역량은 뛰어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통역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전문통역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

경찰A: 저도 통역사의 질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역사가 편향되게 통역을 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통역사는 보통 한국어로 써있는 조서의 내용을 통역해서 피조사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역사가 저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적으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통역사 관리와 관련해서 통역 요원 명단 확인과 통역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포털에 통역사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특별로 통역사의 역량에 대해 암암리에 공유하기는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B: (통역사의 사건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다른 언어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시가 하는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경찰C: (이주배경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크지만, 불만이 있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통역인들은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용어 때문에 일반 통역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데, 진행조차 빠르게 되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들었어요...사법 과정에서 통역하는 일은 법률적인 용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통역에 비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 전문 통역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중도입국한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용인되는 행동이 한국에서는 비행이나 범죄인 경우도 있다. 경찰관들은 소년과 보호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소년사법절차,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경찰A: 문화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우범 송치 아이들이 많이도 많다해서 보통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나 집 등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거나 부모님과 협조하에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보호자분이 우범 송치와 같은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가 납치당했다고 이해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사법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개념이 국가마다 다르고, 아예 이런 개념이 없는 국가도 있다 보니, 이해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이주 청소년들의 경우, 중국 배경이거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배경인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이 겁을 먹으시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경찰B: 동남아 쪽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성장이 빠르고, 무엇보다 동남아 쪽은 한 14~15살만

돼도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또래 간의 성관계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동남아 쪽 아이들은 개방적인데,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신고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관이나 공간을 엄청나게 두려워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사건에서는 엄마가 아이랑 면담도 못 하게 하고, 아이에게 한국에 계속 살 수 없다고 말해서 수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피해자에게 아무리 괜찮다고 설명해도 신고하면 추방당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특히, 중국은 의심이 많잖아요. 실제로 겪어보진 못 했지만 국내의 체포나 긴급 체포, 임의 동행 등의 절차를 이해 못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두천은 지금 거의 나이지리아 촌이죠. 나이지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는 문화이다 보니 까 지나가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에게 너 나랑 결혼할래 같은 말도 해요.

경찰C: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보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등의 고려인 쪽이 더 개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부모가 집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다 보니 자녀들이 술과 담배에 대한 노출이 빠르고 잦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전자담배 등을 피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성에 대해 개방적이기보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아시아는 성에 대한 노출도 더 빠른 편이고 개방적인 경향이 있어요. 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강간과 같은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이주배경청소년이 살았던 국가와 다르다 보니 이주배경청소년 중 일부는 경찰의 호의적인 태도를 공권력의 나약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A: 특히 중국 배경 친구들은 한국 청소년들보다 무서울 것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중국 청소년들이 보다 무섭게 싸우고, 경찰서에 와서도 '한국 경찰은 별거 아니잖아', '한국 경찰은 나한테 욕 못하잖아', '한국 경찰은 내가 전화를 안 받아도 어찌지 못하잖아'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경찰B: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 아이들은 우리 법이 솜방망이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여러 죄를 다 더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 강한 형에서 감형하니 애들이 그걸 잘 알고,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어찌라는 식으로 반응하죠.

경찰C: 베트남이나 중국 공간은 권위적이고, 권력도 강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한두 번 보기만 해도 친절하고,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5)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보호력

청소년범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 비이주배경청소년과 달리 보호력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보호자의 보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보호자의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 체류 및 경제적인 불안정성,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의 물질적 및 심리적 도움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경찰A: 사례 중에는 학교 폭력 위원회에 보호자가 참석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절차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변호사가 대신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폭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미성년자로서 다른 보호 주체가 있어야 할 때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B: 대부분은 농촌과 공단 지역들이 편재되거나 양립하는 도시에 이주배경가정이 많죠. 그래서 한편으론 환경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들로 인해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죠. 그리고 엄마가 본인의 나라로 가버려서 편부가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가정폭력 신고도 많이 되는 편이에요. 가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기에 분별력도 능력도 부족한데, 한국 아이들에 비해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매우 부족하죠.

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사회정착 방안

소년사법정책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비행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년이 더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사회정착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교육에는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나 법률지원과 같은 우리나라에 정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된다.

경찰A: 외국 배경 모친들은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는 태도가 많습니다. 국가의 복지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국가에 따라 다르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피해자 권리 안내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의 간극이 매우 큼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친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오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B: 법률적인 지원이나 자문과 관련해서 한국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무엇보다 수사하다 보면 가해 청소년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가정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 가정교육이나 부모 교육이 절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이주 센터에 소장님과 같은 분들에게 사건 종결 때까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원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기관과 연계해서 그 외의 부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사건 처리에 훨씬 효율적이예요...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처럼 지역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구분 없이 사건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센터 관계자가 신뢰관계자로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보호력이 부족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의 부모님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뢰관계자로 동석시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법률적으로 지정하기 힘들면 지침이나 메뉴얼이라도 추가 되는 편이 훨씬 나올 것 같네요. 혹시 누군가 연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정해진 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선, 비이주배경청소년과 융화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경찰A: 학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혼 가정이나 이주배경과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경찰과의 연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 밖에서 또래 문화나 지역 내에서 동일 배경 네트워크 환경에 노출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원C: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어서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적절한 지도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학업 성적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비행 예방 차원에서 학과 후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비행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구 단위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혼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센터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면 더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지역의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쓸 일이 줄어들다 보니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5~6학년인데도 의사소통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저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기보다 한국 일반 청소년과 융화되어 함께 생활해야 이런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2. 재판 단계

가. 재판을 위한 조사 단계

1) 소년과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 부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 중 대다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이 보호자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부족하며, 양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은 소년과 보호자 모두 한국어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판사A: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 어머니들은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한국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통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 위성 국가들 가정의 특징은 아이들도 부모들도 한국어가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진짜 안 되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판사B: 저희가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이주배경 있는 친구들 중에서 부모가 완전 외국인, 잠깐 뭐 미군 자녀.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한 재판부가 한 500건이 있으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소년이 한 2%나 3%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애들은 그래도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구사 능력이 되게 유창하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법정에서 대화하고 이런 건 뭐 기본적인 대화는 되더라고요. 근데 보호자가 안 돼요.

2) 보호자를 위한 통역서비스 부재

이주배경청소년을 심리함에 있어 소년의 한국어 이해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을 통해 소년의 언어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통역이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하여 통역사를 신청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보호자의 경우는 한국어 이해력이 낮아도 통역사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는다.

판사A: 어머니 때문에 (통역을) 쓰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기록이 왔을 때 수사 기록을 보다 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기가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고 통역사를 붙여서 조사를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한국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통역을 붙여주고 한국어로 충분히 대화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데, 부모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어학 능력까지는 그래서 이제 통역을 붙일지 말지 결정하기가 그 단계에서는 좀 어렵죠.

판사B: (통역이 필요하지) 분류를 하는 방법은 경찰 단계에서 조서부터 다 있다 보니까. 소년 재판에서 아시다시피 기록이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단계에서 통역을 붙렸는지 안 붙렸는지 확인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분류가 되요. 통역이 필요하다 싶으면 법원에 있는 통역사 중에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년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있으면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진술조력인(국선변호인) 서비스가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A: (경찰단계에서 소년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조력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좋은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판사B: (진술조력인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전혀 없는. 당연히 더 풍부하게 조사가 되고 할 테니까...(경찰단계에서 소년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 있으면 좋죠. 저희는 무조건이죠. 그거는...이 친구들이 이제 '언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처분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심리 방향도 달라질 것 같고. '통역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아니면 그 조사를 추가할 때 어느 조사 방법을 할지. 특히나 조사관 조사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간이 좀 긴데, 내용도 많은데, 통역이 가서 그걸 일일이 다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상/중/하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죠.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노력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의 판단 자료로, 소년에서는 다 판단 자료가 다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파악이 되고 다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3) 통역사 자질 증진을 위한 관리 및 법정통역센터 운영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통역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통역 이외에 소년사법이나 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여 이 분야 전문 통역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침 법원에서는 올해 7월 1일 법정통역센터

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통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A: 법원에 통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선정을 해 주시는데, 같은 분이 계속 오시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통역을 하실 정도의 한국어와 러시아 양쪽에 능통하신 인력 풀이 많지 않아서 결국 거의 같은 분이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소년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하고도 좀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일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 좀 깊지 않으신 것 같은데 소년 절차까지 이해가 깊으신 그런 통역인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양성이 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한국어도 잘하고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전문적인 인력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방법원이라는 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 풀이 정말 많잖아요. 골라서 쓰실 수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희귀한 언어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형사 절차에서 이제 통역인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판사B: 법정 통역 센터를 7월 1일자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몇 개 언어가 없던데요. 좀 있으면 우즈베크 하고 그렇게 뭐 하겠다...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영상으로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전국 단위에서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제일 난감한 게 법정에서는 통역사를 부르면 오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하는데, 접수하는 데 와서는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때 활용해서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연결해서 통역해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소년보호기관을 통한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수집

판결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범죄자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범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더 포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보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법원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력 같은 경우 법정에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전 조사 절차를 통해 보호관찰소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조사를 의뢰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A: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 조사 절차를 거치니까요. 보호관찰소라든가 아니면 꿈키움센터라든가 분류심사원 같은 데서 조사하실 때 아마 통역을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조사하시면서 부모님들의 의견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니까요...법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데 너무 시간 제약도 있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충분히 말하지 못하실 경우도 많으

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는 쪽이 그 소년을 위해서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판사B: (보호자) 의견을 심사원 보내면 듣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 각각 의견을 거의 들어왔거든요.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그렇지만 두 분 다 있는 경우에도 둘 다 듣는 것 같긴 해요.

나. 재판 및 재판 후 단계

1) 재판 시 이주배경특성을 고려함

대부분의 소년범죄자가 받는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처벌보다는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혹은 문화적인 이해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는지 질문하였다. 판사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경우에 이 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시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한국어 이해력이 낮다고 해서 더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판사A: 언어적인 문제로 아이를 교육하기 힘들다든가 제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로 이제 아이들을 분류해서 어떤 처분을 하지는 않았고,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보호력이 없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다른 한국 아이들보다 교육을 어쨌든 부모가 이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라도 좀 개입을 해서 가르쳐야겠다. 그런 고려를 해서 처분을 하기는 합니다...애가 절도를 했다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애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가르쳐야겠다는 가정이라면 부모한테 보내서 부모가 지도를 할 수 있게 해도 괜찮은데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소년부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 부모가 너무 바빠서 생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생계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애를 먹이고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애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로 대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거치게 그런 식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판사B: (이주배경청소년 중) 1대 1로 만나서 집중 교육이 필요한 애들은 상담복지센터로 보내고 조금 엄숙한 분위기에서 할 필요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에서 수감으로 하고...분류심사원은 이제 집에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언어 정도는 좀 덜 생각하죠. 일단 이 친구는 가서 교육이나 어떻게라도 뭐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심사원으로 가는 것 같고. 결정 조사는 특히나 안산 쪽은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 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하도 많으니까. 잘 돼 있어서, 거기 보내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많은 지역일수록 그래도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통역사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2) 재판이후 절차에 대한 외국어 안내문 제공의 필요성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면 처분결과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소년이나 보호자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이 별도로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외국어로 된 안내문은 따로 법원에서 제공하지는 않고, 다만 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통역사가 이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A: 제가 배부하는 건 없어요. 제 선에서 배부하는 건...완전히 외국인이고 그래서 통역을 붙여 준 경우는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한국어가 가능한 부모라든가 아니면 애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테니까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처분을 이해 못해서 보호관찰을 못 받거나 아니면 2호, 3호 수강이나 이런 거 못 받아서 저한테 처분명령 들어온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잘 이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사B: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한 자료가) 한국어로 된 것만 책자, 영상 있는데, 그걸 외국어로 번역한 것은 소년의 경우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매뉴얼도 없습니다...소년 재판에서도 사실 법정에서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직원이 자료 주며 설명하고, 이제 그것도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 좀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거든요. 통역사한테 나가서 전달받을 사항이 많으니 번역,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100% 전달이 안 될 테니까.

3) 재범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법원처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처분을 통해 소년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였다.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교육은 보호자 교육이라고 답하였다. 외국 배경을 가진 보호자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적절한 양육, 소년의 인권 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판사 A: 베트남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도 일단 한국에 사신 지는 오래됐지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융화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식의 학교생활이나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고, 아이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차라리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요. 근데 부모들은 생계가 너무 바쁘고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한국 사회에 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

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회가 있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한국에 정착을 하게 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들한테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많이들 부족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외국어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 면에서 이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모 환경 조정 특히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호자 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 특히, 한국에서 비행이나 범죄 행동이 어떤 건지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판사A: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비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낯선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한부모라든가 가정 내 갈등 이런 게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좀 더 도와주기 쉽지 않을까, 도와주면 훨씬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판사B: 한국어 능력은 최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호관찰 할 때, 특별 준수사항으로 한국어 강좌 연계해서 듣고 오고, 그렇게도 많이 시켰거든요. 한국어가 안 되니까, 상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다 제약이 좀 많이 생기니까. 한국어 교육이 기본일 것 같아서 그거 많이 시키고, 법률 교육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이런거는 따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보호관찰에서 대부분 그걸 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더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한국어 교육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가서 절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3. 집행 단계

가. 소년보호기관(사회 내 기관: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이주배경청소년 업무관련 매뉴얼/규정 부재 및 외국어 안내문 제공

직원들이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교육 및 사후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고, 안내문의 경우 일부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있으나 실제로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년이 교육에 참여하는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호직A: (이주배경청소년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는 게) 맞습니다. (안내문은) 중국, 일본, 영어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사용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호직B: 저희한테 이제 집행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저희의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의 이주배경 특성 악용

소년보호기관에 오는 이주배경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핑계로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어에 대한 이해정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판사에게 통보한다고 한다.

보호직A: 강의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데 활동지 쓰거나 하는 것이 싫어서 한국말을 못 쓴다고 해요. 근데 한국말 잘 못 쓴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놓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지금 애들이랑 다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을 언어를 못한다는 핑계로 저조하게 해요...그런 일 있으면 저희도 다 써서 (법원에) 보내줘요.

보호직B: 유리한 상황에서는 다 알아듣고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서는 못 알아듣는 척해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자들이 소년을 자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년으로 하여금 불량교우와 단절시키려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직B: 비행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이 한국어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처분을 받으면 중국으로 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으로 가면 조부모가 있으니까 외국에 누군가가 받쳐주고 그러니까 보호자의 적극적 의지로 해석되면 여기에서 뭉쳐 다니는 또래 애들이랑 좀 단절시키겠다. 불량교우 환경 조정이라든지 단절을 목적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보호력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이제 사고 쳤으니까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세 건일 수도 있고 진행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도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3) 소년의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한 처분 및 교육

사회 내 소년보호기관에 오는 소년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에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이주배경청소년을 조사나 교육을 위해 기관에 보낼 때, 소년의 한국어 이해능력과 기관에서 통역이 가능한 지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직A: 3일 동안 교육받을 때 한국어 이해가 된 애들 위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낼 때 한국어가 안 되는데 보내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약간 선별해서 보내시는 것 같고, 아예 한국어 안 되는 외국인 애들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한국어 아예 안 되는 애들은 없고, 쓰는 거 좀 못하는 애들은 봤어요. 판사님들도 교육 가능한 애들 위주로 보내고 있고. 그런 애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사항은 없어요. 나중에 흑시라도 외국인 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게 클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한 3% 미만일 것 같거든요.”

보호직B: 바깥에서 안산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애들 한국말 못 해 가지고 통역,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무실에 누구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통역사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아이들은 법원에서도 한번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주배경청소년 중에 한국어 이해력이 너무 낮아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이 교육하기 어려운 경우는 드물지만, 이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산처럼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이 낮아 한국말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년의 모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후 소년의 추후관리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

이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년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으며 이 소년들의 경우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 소년들만을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보호직A: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 소감문이라든지 1일 기록지 같은 걸 쓸 때 보면 확실히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애 자체가 이제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되게 부실하고, 좀 뭐랄까, 약간 구체적이지 않아요. 애가 비행 예방 교육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록지 같은 걸 쓴 걸 봤을 때, 이해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년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국, 몽골 다 언어가 다르니까 외국인 학생 전문프로그램 만들 생각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중국애들만 모아서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도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교육 명령 부과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하는 것이 좀 힘든 거죠. 아니면 정말 소수 인원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강사비는 한정이 돼 있어서 외국인들 따로 몇 명 소수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보호관찰소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런 소년이 교육을 받으러 올 경우 통역할 수 있는 강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보호직A: (한국어가 안 되는 소년이 올 경우) 일단 먼저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고민이 많죠. 한국 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교육 올 때 작성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작성 이 될지, 그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안 그러면 교육 내내 애도 힘들고, 그 3일 동안 이렇게 21시간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애도 막 괴롭잖아요. 즐리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접수되면, 먼저 애가 교육이 이해가 되는지 그런 것도 접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교육만족도 평가 이런 걸 하거든요. '교육의 내용이 어렵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애들이 실제로 거기가 평가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들한테 그 피드백을 주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좀 눈높이에 맞춰서 하세요.

4)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력 부족

보호처분이나 교육명령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다수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이해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소년들의 보호자는 상당수가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보호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렵다.

보호직A: 보호자 교육할 때 외국인들 오시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이제 보호자가 여자 분이신데 중국인이시더라고요. 통화를 먼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언제 한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했는데, 교육이 아닌 날 오신 거예요. 저는 '예'라고 하니깐 이분이 알아들으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보호자 교육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보호직B: 바깥에서는 외국인 이주배경 아이들이 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부분은 다 언어를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보호관찰관들이 안내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요. 다만 그들의 부모들은 현저한 것 같아요. 아이들 세대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데, 보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들의 부모들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통역이다. 단, 통역만을 잘하는 통역자보다는 법률적인 이해와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도 외국어가 능통해서 교육을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호직A: 통역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역의 경우) 용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데 통역하려면 그 사람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외국인 얘기를 할 때, 그냥 통역사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시스템을 잘 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일을 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한 적 있거든요... 외국어가 능통한 비행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 강사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멘토링 이런 거 있으니까. 멘토링 하는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주배경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배경 지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해 주시면 좀 더 상담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6) 재범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재범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소년이 비행이 아닌 건전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행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주배경청소년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진로지도를 한다거나, 이주배경을 가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성인을 롤모델로 소개함으로써 소년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배경사회의 특성인 어린 소년과 일탈적인 성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호직A: 애들은 몰입하다 보면 비행이라든가 또래 관계 이런 거에 치중하기보다 자기의 목적 이런 거 많이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아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길을 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연계해서 찾아주고 하는 게...여기 진로 체험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이주배경청소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외국어 더 수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 가이드 이런 길로 진로지도를 하면 어떨까. (롤모델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뭔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래도 몇몇들은 또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사례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호직B: 한국 아이들은 성인 집단과 접촉할 수 있거나 관계를 맺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인으로 진입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만의 문화에서 성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끈끈한 어떤 구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외로움을 달래거나 적응을 돕다거나 하는 그런 이주민 들끼리의 형성된 문화 자체에서 비행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그들이랑 교류할 수 없게 하고 접촉을 끊어야죠...아이들끼리 문화를 형성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건강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뭐 이렇게 스포츠 등, 그들끼리만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대상은 그 아이들이지만 그것들을 이끌고 하는 것들은 한국의 건강한 자원이나 지역 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호직C: 아이들이 커가면서 얻는 정보나 목표 설정 이런 게 주변 어른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가 공부를 해야 대학도 가고 성공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애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미 다 어른이 돼서 한국에 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어서 한국의 그런 교육 과정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학교만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도 아직까지 주변에서 성공한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그 나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멘토로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소년들이 보호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은 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한계가 있고,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체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호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록 보호자의 보호력이 강화되어 소년들의 비행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처분 종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직B: 애들한테 안내랑 보호자한테 안내랑 또 다르잖아요. 보호자들은 법이라는 게 준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법은 출입국이랑 이런 것들에 관련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최대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어서 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실제로 사법 체계에서는 얼마나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호직D: 한국 사회의 적응 여부가 그 아이의 비행 예방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 적응 여부는 아이의 개별적인 적응 여부도 있겠지만, 부모의 적응 여부가 있겠고요...보호관찰소에서 멘토나 멘티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애한테 한국어공부를 시킨다든지 학습 관리나 이런 면에서 도움을 주면 점차적으로 애는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면 비행 문화나 비행 행동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보호자의 한국 적응 여부가 아이의 비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를 위해 사법 체계 안에서 보호자에 대한 체계도 같이 마련했으면 조금 더 이주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직B: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고 나서 또 퇴원하게 되면 지자체라든지, 경찰에다가 통보해서 공유하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아이들 오게 되면 보호관찰을 하고,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디 한번 연계해 줄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문화 센터도 있고, 글로벌 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게 네트워크 되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소년보호기관 수용시설(분류심사원, 소년원, 6호 기관)

1) 소년의 이주배경특성을 고려한 처우

소년보호기관 중 사회 내 시설은 소년들이 교육이나 상담 및 조사를 받고 집에 귀가하지만, 소년보호기관 중 수용시설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같이 생활하는 기관이다 보니 기관 운영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더 고려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설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을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되고, 소년이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 종교행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설생활 등과 관련된 서류가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시설에서는 소년에 대한 하루 일과가 개별적이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소년의 개별적인 활동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식단을 조정하거나, 기도시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6호 기관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 특성상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소년과 보호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보호직E: 저희도 얼마 전에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소년원에서 생활한 건 아니고 잠시 신입반 있다가 잠깐 대기하다가 다른 소년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있을 때 할랄 음식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기도 시간도 지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직F: (다국어 안내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활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검사지도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정비된 거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통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활자로 된 서류, 예를 들어 신입반에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들,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 정도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놓으면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호직H: 이슬람이나 기도 시간을 지켜달라거나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지키면 따로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밥도 만약에 따로 해야 되면, 이 아이들을 식당으로 이동시켜도 되는 건지, 같이 음식 조리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달라 하면 문제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보호직I: 저도 다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본 기억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분류심사과에서 작업을 한 번 했었고...입원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이런 것들 그 때 (번역) 했었던데...돼지고기 못 먹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진 식단에 의해서 먹는데, 애들은 못 먹으니까. 그런 애들 위해서 따로 참치를 준비해 준다거나 이렇게 필요하죠.

6호기관: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가리는) 그런 아이가 2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본인이 지키려고 하는 아이고 한 명은 부모님이 지키라고 하는 아이인 거예요. 본인이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따져요. 본인이 따져서 내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혹시나 저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돈육 포함이 들어갔다. 그럼 그날 난리 나요. 이 고기를 내가 밖에서 봤는데 안 되는 거였다. 왜 줬냐 그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아이는 본인은 너무 먹

고 싶은 거예요. 돼지고기. 근데 부모님이 아빠가 너무 단호하셨어요. 근데 면회 때 애들이 이 소년이 돼지고기 먹었어요. 해가지고 아빠가 기관에 화내시고 이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런 문화의 차이는 종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천주교 기관이어서 좀 약간 처음에는 반감 가지시기도 하고요.

2) 언어적인 이슈

수용시설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 정도가 생활 및 교육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기관에 다양한 민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한국어 이해력 또한 중요하다.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적인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용시설의 경우 사회 내 처우와 비교 시 보호자들의 민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민원인 중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호직K: 저도 현재 하는 게 이제 민원 전화 많이 받고, 보호자들이랑도 문의 전화 많이 받는데, 말 자체를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한국말을 하시는데 발음이 워낙 안 돼서. 나이지리아 아버지도 있었고, 중국 사람. 발음이 아이 이름조차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뭘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호자분이 진짜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더라고요.

수용시설에 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소년의 보호자 중 상당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소년의 시설생활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달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보호직E: (이주배경청소년이) 중요한 이슈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아시아 계열 애들이 많았다면 얼마 전부터 러시아나 그런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서도 친구들이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농담 삼아 직원 채용할 때 이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호자랑 소통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보호직F: 목요일마다 신입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명씩은 꼭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눌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말은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는데, 보호자하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들은 외국인 보호자하고 얘기는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하는 아버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보호직H: 이주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평등하지 않다 치면, 엄마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회도 그렇고, 이제 절차가 있는데, 여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니까, 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회 올 때도 저희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고 15명이 맥시멈이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으니까, 그것을 100% 이해하시지를 못해서 계속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보호직J: “러시아 출신 애가 있었는데, 어머니 밖에 없었는데 러시아어밖에 못 하시니까. 파파고를 제가 돌려서 문자를 써서 어쨌든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파파고 돌려서 제가 문자로 보내서 다 보면 또 돌려서 한번 보고. 근데 이게 또 애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말이 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이제 전화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친형이 한국에 온 지가 꽤 돼서, 성인인 친형 연락을 수소문 해 보니까 연락이 돼서, 그 형이랑 그냥 보호자 면담을 진행했어요.

보호직K: (소년은) 한국어는 유창한데 보호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애들은 거의 한국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못 겪어봤어요.

6호기관: 소통이 가장 문제이긴 해요. 저희는 6호 시설이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초기 상담으로 가족 상담을 1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보호자가)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면회 잡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 이 아이가 6개월이 끝났으면 퇴소해서 이 아이가 집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소년이) 분류심사원 갔다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변경이 돼서 분류심사원에 갔다라는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분류심사원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저희 쪽에 있는 줄 알고 저희 쪽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수용시설에 보내진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소년은 소수이지만, 이 소년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기관에서도 이 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예: 비언어적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예산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출신 국가가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호직E: (교육 받을 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와서 여기서 이렇게 쭉 자란 애들은 이제 한국어는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오거나(중도입국) 한 아이들은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서 수업시간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보호직F: 아이가 한국에 어느 정도 산 거에 따라가지고 언어 수준이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 온 아이는 기본적인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직G: 한국말이 조금 서툰 편인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를 말하면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거나, 저희가 중등반이니까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그런게 아니고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정도. 근데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세세하게 챙기기는 어렵고요. 이 아이가 언어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를 저희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일상적인 언어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 유치원생들도 일상적인 건 가능하지만, 어른 말을 하면 좀 버거워하잖아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보호직H: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부모님이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되는 애들이지만, 그중에도 의사소통이 약간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들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국말은 거진 다 하는데 관용어구라든지 속담, 어른들이 쓸 만한 거를 못 알아듣는 거지, 학생들끼리는 대화가 되요.

보호직I: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어서 말도 못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기를 한자로 막 중국어로 막 써놓고 수업도 아예 그냥 앉아서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만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외국인 애들이 러시아, 일본, 중국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언어로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그 소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일대일 과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만들기라든지, 그리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비언어적인 활동 위주로 해서 좀 구성을 하면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수라.

6호기관: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돼요. 책을 읽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있고, 그냥 수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고... 그런데 있어서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기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원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정말 안되는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재정적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렵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기본적인 국어교육 그런 거는 좀 필요하긴 해요.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 중 가장 심각한 경우는 모국어도 모르고 한국어만 알지만, 한국어도 이해력이 낮아서, 소위 0개 언어를 한다고 봐야할 소년들이다. 이 경우 소년이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건지 아니면 지능이 낮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 소년들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호직E: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왔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중국 쪽이셨는데 귀화도 하셨고요. 그런데, 애는 중국어는 못하고 부모님하고 소통도 그냥 한국어로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엄마가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엄마한테 좀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살짝 이용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호직G: 모국어를 하는 아이들은 드물고, 쓰기까지 하는 애들은 더 드물고요...언어가 좀 안 되는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게 사실 힘든데 그냥 지능 검사를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애가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언어가 떨어지는 건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약간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재네는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수업 때) 멍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내국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꼭 그제 애네의 언어의 문제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보호직H: 우리나라 말이 좀 서투는데, 그렇다고 개네들이 다른 나라어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엄마랑 한국어로 소통을 겨우겨우 하는 애들이 많지, 모국어를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0개 국어인 애들이잖아요. 0개 국어인 애들의 지능 검사를 할 때, 좀 명확하게 안 나온 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애가 지능이 낮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하고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언어만 떨어지는 거면, 저희가 말을 할 때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던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 거면...그러니까 말을 지들끼리 얘기하고 '배고파', 이런 거는 다 하는데, 관용어구, 얼마 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했더니' 자기 단추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업 때) 반은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3) 수용 생활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은 이주배경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하면서 다른 소년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나 괴롭힘 등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관에서는 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평상시에 소년들끼리 잘 지낼 때는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들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출신 국가, 보호자 또는 외모적인 특성이 약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관에서는 소년 간 괴롭힘 등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처분변경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하기도 한다.

보호직F: 잘 지내고 있고 문제도 없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국적이 그 학생한테 약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약간의 패드립 같은 느낌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지내더라도 어떤 아이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는 그게 하나의 약점이죠. “너희 엄마 어느 나라지? 거기는 그렇다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드립의 느낌도 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왕따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걸로 드러나는 그 국적 때문에 왕따 그런 거는 없고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가 국적이 다르다라는 걸로 인해서 약간 놀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괴롭히는 경향은 있죠.

보호직G: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본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놀린다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놀리지는 않아요. 애들이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걸로 좀 컴플레인 하는 거지. 튀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싸울 때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공격 거리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쓰는 아이들이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공격 거리가 있으면 다 이제 하니깐요.

보호직H: 말이 조금 서투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들이랑 좀 갈등이 좀 있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 특히, 아이들 싸울 때, 흥분하면 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걸로 놀리지는 않아요.

보호직I: 애들이 다르게 생기면 눈에 띄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축구하다 한 번 싸운 적 있거든요. 유명한 그 나라 축구 선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쌀라 쌀라’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행동을 좀 약간 그렇게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툼이 생긴 경우도 있었고, 방 안에서 애들이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드립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 비하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런 거를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짱깨 짱깨’ 한다든지. 부모님이 뭐 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무슨 쌀국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소재로 애들이 좀 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애들도 있었고, 상담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저희가 인권 교육에도 다문화 내용을 다루어요. 교육 내용에 그런 거를 할 때 좀 강조를 하죠. 절대 어떤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걸로 서로 언급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보호직K: 한국 애도 사실 처음엔 특이해서 (눈이 큰 이주배경청소년을) 쳐다봤는데, 애가 계속 같이 노려본다고 오해를 하죠...그냥 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 의식이 조금 있는 거죠. 자기가 겪어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저희 애들은 눈싸움 절대 안 저요. 피하는 순간 진다고 생각해서...이런 경우는 분리 수용이 필요하죠.

6호기관: 저희는 (소년의 국적을) 오픈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자기들끼리 조금 놀리는 경우는 있는데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일단 저희가 조금 표가 나는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2명 정도가 장애를 가진 아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좀 괴롭히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처분 변경을 보내고 좀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또한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아예 오픈을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너네가 바로바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애초에 모든 걸 오픈을 했어요. 어쨌든 표시가 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놀림 대상이 되기는 해요...괴롭혀서 처분변경이 된 아이가 있어요.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은 정말 크게 혼내고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됐었고, 나머지 1명은 너무 심하게 괴롭힌 부분이 있어서 처분변경 바로 보냈습니다.

수용시설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시설의 종류나 직원 간에 이견이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한국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직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주배경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직E: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자기가 유리한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나까 저희는 이제 모르는 거죠. 애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인지. 부모하고 통화할 때는 거의 러시아어만 쓰니까,

보호직K: (이주배경을) 악용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외국인으로써 차별 안 받으려면, 더 한국인인 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

6호기관: 못 알아듣는 척 잘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지적을 했고 다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못 들었다 하는 것들을 애는 못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가 진짜 못 알아들어서 못했나 아니면 진짜 애가 이걸 거짓말로 하는 건가 판단을 내리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 생활을 해봐야 애가 거짓말을 하구나 진짜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원들은 대체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른 소년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이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차별감을 덜 느끼게 하고, 시설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보호직F: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같이 생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교육을 똑같이 일관적

으로 유지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왔을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똑같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따로 편의를 봐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게 있다면 따로 그런 쪽은 당연히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오히려 그 아이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더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4) 이주배경청소년 업무 처리 관련 지원

향후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범죄나 비행으로 수용시설에 오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이나 시설에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통역서비스로,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통역인이 대면으로 실시하는 통역보다는 화상이나 전화를 통화 통역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심리검사, 관련 서류 등을 손쉽게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직원F: 태블릿으로 해서 한국어말이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번역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 PC가 있어서 그걸로 검사를 하거나 그걸로 모르는 말들은 바로 번역을 해서 하면 굉장히 쓰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일반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대화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적으로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번역을 해서 확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호직G: 어머님들이 소년원이나 서신도 그렇고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제한이 된다고 했을 때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세요. 본인이 언어도 좀 서툴고 여기 문화도 좀 다르고 하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좀 못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통/번역 서비스가) 부모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엄마의 모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힘든 거예요. 엄마한테 편지를 받고 싶는데, 엄마는 한글을 못 쓰고, 아이는 베트남어를 못 읽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애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애가 대면을 했을 때는 손짓, 발짓 이렇게 되는데 전화 통화를 하기는 힘들어서.

보호직H: 규칙이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국어 안내문) 팜플렛까지는 아니고 프린트물 처럼이라도 돼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아이들이 편지 같은 데 연연해하는데 엄마한테 편지를 받고 싶는데 지금 저희는 한국어로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보호자들이 외국어로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을 아이가 받아도 좋을지 안 좋을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원이 소년을 더 잘 이해할수록, 소년이 수용생활을 더 잘 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도 높이며, 기관의 수용안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소년이 출생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직원도 있었다.

보호직G: 이주배경 어른 자체가 비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중학생이랑 맥주를 같이 마셨다든가 이런 거에 인식이 별로 없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인데 ‘새벽에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편지에 되게 많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 문화에서는 안 되는 건데...아이들은 이 어른이 너무 나한테는 중요한 어른이고 이모인데, 이 이모가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아이들은 나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이모랑 어울리고 하면 또 그 불량 청소년이랑 어울리고. 그런 거를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호직H: 개방형 가족처럼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약간 내 애를 이 사람도 키우고, 나도 키우고, 같이 키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네가 키우는 느낌으로 하는 애들이 왕왕 있어요...그런데 그 그룹이 불량 청소년이 많은데 우리 아들이랑 너희 딸이랑 같이 비행을 하는데 상관 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같이 키우는 거예요.

보호직I: 신입반에서 보다가 특성이 있으면,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단편적인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특성이나 우리가 지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배경 청소년 지도 매뉴얼,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좀 찾아봐서 이 국적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국적을 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6호기관: 점점 문화가 다양한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나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동학대, 아동 인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알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이가 왔을 때 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애는 어느 비자고 이거부터 조금 알고 가야 이 아이가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용상황에 따라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을 다른 소년과 분리해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향후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원K: 만약에 이 친구가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나 자기만 있고 싶은 그런 1인실이나. 그런데 워낙에 시설이 지금 작아서 분리도 조금 어렵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자극에도 반응이 좀 크니까. 특히, 외국인 친구들은 더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인실, 2인실로 약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방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직F: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이주학생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으면 좀 더 다른 선생님한테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호 기관의 경우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나 보호자가 기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소년이 기관에 위탁될 당시 보호자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6호 기관에 위탁시키게 되면 소년과 보호자에게 이 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호 기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국인분들도 잘 모르시고 잘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 애들이 죄가 없는데 내 아들은 죄가 없는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분들도 우리 애가 뭘 잘못해서 여기가 된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이게 설명이 하나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법원에서 잘 설명해주면)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처럼 같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5) 재범예방 대책

시설에 수용된 이주배경청소년이 시설에서 나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직원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있는 이주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보호직H: 외국인 지원 단체라든지 다문화센터, 이런 쪽에서 뭔가 연계가 돼서 이주배경 아이들을 위한 멘토라든지, 그 아이가 언어가 힘들다면, 그 언어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연계도 좋을 것 같아요.

6호기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 센터) 많이 생겼는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이용 하시고 해봤던 분들만 하시고 아는 사람만 하시고, 내가 아는 상담사가 있을 때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곳은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생업을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좀 사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도움을 받으시는데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안타까워요. 그런 걸 몰라서 이제 도움을 못 받으시고 이게 안 될 때는 아이한테 고스란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4. 변호사 및 민간단체

가. 언어적인 이슈

이주배경청소년은 학교 혹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지만, 보호자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호자의 이러한 태도는 소년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경찰에서 소년을 조사할 경우 보호자 중 한국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보호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도 한다.

변호사A: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중도 입국 청소년도 그렇긴 한데요. 언어적인 부분이 소년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은 금방 언어를 습득하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언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적 방임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계속 잘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변호사B: 부부간에도 한국어에 차이가 있어서. 언어 능력 차이가 있으면, 언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쪽이 부모의 보호력을 과대 대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언어가 안 되지만 보호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신 분보다 오히려 한국어 잘하시는 분의 의견과 보호력이 재판에 전달될까 봐 좀 걱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주배경청소년은 문자적인 이해력은 높지만 문화적인 맥락까지 이해하지는 못하고, 특히나 소년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는 더욱 이해를 못하므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소년이 모국어와 한국어 중 편한 것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호자의 경우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A: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규범에 대한 의미, 이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잘 습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환경들을 봤던 것 같아요...(보호자들이) 사법절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소년사법절차를 설명하는게 쉽지 않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나 본인이 얼마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변호사B: 한국에서 그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이 지닌 맥락들이 있어요. 언어는 알죠. 어떤 말인지 알고. 그 말을 이주 배경 아동이 '라면을 먹고 가자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과 한국 배경에서 완전히 자라난 어떤 아동이 '아, 그 말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맥락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경찰서에서는 (소년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더라도 조금 더 익숙한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로 통번역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다고 생각합니다...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규범 자체에 대한 이해, 이 규범이 단지 법 규범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규까지 포함해서 그런 맥락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센터A: 차라리 아예 못하면 통역이 붙여지는데, 어설피게, 동포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센터B: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통역 불러주시고. 저희 몇 월 며칠에 오라 그래서 가보면 통역분 와 계시고,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설피게 한국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폭력 사건인데) 자기가 맞았대요. 그리고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한국 아이랑 외국인 아이였고, 경찰서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한테 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네, 네, 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버린 거예요...'내가 분명히 맞았는데 왜 나보고 돈을 달라 그러지?' 나중에 한국 국적 아이가 '너, 니가 때렸으니까. 나한테 돈 줘' 그런 식으로 계속 문자 보내서 이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애가 전혀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도움을 청해서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법적 용어를 잘 모르니까...소년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국말로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이 뭔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면 모국어로 말하든, 이거 자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외국인이 오면 통역은 반드시 한나라는 지침이 있으면 통역사가 직접 오던, 아니면 화상으로 하던 전화 통역으로 하든 어쨌든 통역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주배경청소년 중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 이해력이 낮은 소년이 있다.

글로벌센터B: 한국말로도 판사나 법원이 뭔지 모르고, 러시아말로 번역을 해서 보여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모국어도 완전하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또 어설피게 배우다 보니까, 애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판사랑 법원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도 러시아말로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나. 통역 서비스, 통역사 자질 및 관리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에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언어의 경우는 통역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피의자보고 직접 통역사를 구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역사 중 일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A: 저희가 했던 사건은 언어가 아랍어였는데, 이 언어를 하는 통역인을 법원에서 구하지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비용을 부담해서, 사실 공익 사건으로 무료 변론을 했던 사건인데. 그렇게 조력을 했어요. 이걸 당연히 법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사실 방어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글로벌센터A: 지난번에 ○○학교 자전거 사고 난 친구도 부모님이 수소문해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센터B: 경찰관한테 애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애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으면서, 무슨 거짓말을 할까 머리 굴리는 게 보인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또 보태시더라고요. 애는 나쁜 아이이다. 그 다음번 아이가 말을 할 때는 애는 순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통역사의 경우 통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소년 사건 특성상 소년사법 및 아동인권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통역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소년과 보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 소년과 보호자는 예상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된다.

변호사A: (이주배경청소년 사건에서) 통역은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절차지만, 이 소년 절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아동이라서 특별한 절차라는 것인데. 그것이 되게 통역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B: 어머니가 통고했던 이유가 경찰이 소년의 생활을 좀 개선해 주는 캠프를 보낸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통역을 듣고서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6호 시설이나 소년원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캠프로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보호자는 통고하면 경찰이 이렇게 좋은 생활 교육하는 캠프 보내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분류심사원 가고, 접견 갔는데 벽 있고, 이러니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글로벌센터B: 러시아분의 경우는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 한국어 소통이 살짝 원활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엄마처럼, 그리고 먼저 한국어 온 선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달해야 될 내용만 전달하는 게 원래 통역사가 할 일이지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 보듬어주면서 통역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의 태도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조사를 하시는 것이 원래 일이시니까. 판결을 하시는 게 일이시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아이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 보호자 통지 및 진술조력인 활용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보호자나 보조인 등이 동석해야 하지만, 보호자에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첫 조사에서만 보호자가 동석하고,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보호자나 보조인 없이 소년 혼자 혹은 공범 소년들과만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선정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A: 소년 절차에서 수사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 도입하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차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국선 보조인들을 오히려 이 단계에서 다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법률 조율도 가면서, 언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선 보조인이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요. 좀 그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B: 아동이 혼자 덜렁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 더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세대일 경우에 아동이 훨씬 더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모에게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의지를 좀 덜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덜렁 이렇게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더 높아지지 않나 싶고. 그랬을 때 대신 제안할 만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요. 한국에 보통 친척이 없는 상태가 많아서 어쩌면 국선 보조인이 더 초반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신뢰 관계인이든 진술 조력인이든 초반부터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나 매칭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경찰에서 첫 조사 이후 혼자 조사받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다.

변호사A: 아이들 혼자 덜렁 조사받고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경찰이 부모님 오시는 게 이제 필수는 아니더라는 뉘앙스로 말하기도 하고, 그냥 너 혼자 받아도 돼 약간 이런 분위기와 맥락에 따라서 그냥 아이들이 혼자 진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글로벌센터B: (부모님이) 통역 지원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는 거와 원래는 미성년 아이들이 만약에 경찰서 조사를 받거나 그러면 변호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는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부모님 자체가 애가 그런 사건이 있어서 법원을 다니고 있다는 걸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셨어요... 경찰서에서 그냥 아이들 혼자, '같이 와줄 사람 없으면 혼자라도 와'라고 그렇게 된 거였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강력계에 자기들끼리만, 혼자 앉아서 그렇게 조사를 받는다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비록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통역을 해주시는 사람도 커다란 한국 남자 어른이었고, 한국 아이들은 적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찾으면 변호사를 해줄 거야'라는 그런 거를 알 수도 있는데, 애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니, 아이들을 경찰서로 부르실 땐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주시고, '나가 혼자 오면 힘들 수 있으니, 누구를 그래도 같이 오면 더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안 될까.

라.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및 재범예방 대책

변호사나 다문화센터 같은 민간단체가 소년사법절차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및 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년사법기관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나 민간단체의 경우 소년사법기관보다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소년에게 적절한 기관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A: 이주배경청소년 그리고 이주배경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소년사건을 조력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변호사B: 3호를, 1호를 요청할 건데, 혹은 상담을 요청할 건데,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해서 상담 기관을 알고, 그 상담 기관별로 전문성들이나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판사도 변호사도 소년 사건을 하면서 좀 더 최적의 선택들을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전제는 언젠가 한국에서 떠날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주배경청소년들한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언젠가 갈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사실 소년사건을 하지 않고 강제 추방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주배경 청소년임에도 소년사건을 하는 건, 계속 같이 살아갈 걸 전제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자원들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준 건 계속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니까 할 수 있는 자원들 연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이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통역을 제공하지만, 보호자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보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소년사법절차상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년사법단계에서 소년뿐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통역이 제공되어야 하고, 보호자를 위한 교육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변호사A: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죄예방은 보호자의 보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명령 등 결국에는 보호자의 보호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통역이나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집행 단계는 법원 관할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 통역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므로, 통역인력 및 통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소년의 특성과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까지 겸비한 전문 통역인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센터A: 제가 경험했던 통역사 선생님은 잘하셨습니다. 근데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을 못해요. 아이한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사실 체크가 어려우니까. (통역인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경찰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제도 안에서 양성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려라고요.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센터B: 저희가 ○○꿈키움센터에 저희 통역사 파견하거든요. 저희가 통역사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도 자체 예산은 없으시고, 저희가 파견해 드리고 저희가 파견을 못 하드릴 때는 자체 예산 세우시라고 하고, 그냥 통역사 선생님만 추천해드리죠.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 보호자와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특성에 맞춘 소년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글로벌센터A: 중도 입국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분리 기간이 긴 게 있거든요. (소년의) 성장기에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할머니 손에 크다가 사춘기 때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상 왔을 때도 부모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요. 소통이 잘 안되고, 오히려 찢절때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을 거고, 상처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벌센터B “외국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이란 떨어져 지낸 기간이 적어도 얼마 정도는 있는데, 계속 같이 살다가 오는 아이들은 좀 드물어요. 그러면 남이거든요.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본 부모랑 사춘기 시기에 애들이 와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힘들고, 한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또래 관계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한국말은 더 힘들고.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부모님도 처음 만난 내 아이가 너무 낯설고, 힘들고. 아이들도 이미 본국에서는 이미 성인으로 대접받을 나인데, 여기에서 학교나 다른 데 가면 애 취급을 받고, 집에 가면 ‘너는 다 컸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지원을 할 때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그들에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A: (이주배경청소년의) 보호 환경을 지원하는 자원들이 더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아동 보호 체계,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랑 다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부모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자원과 안전망을 차별 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보호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동 보호 체계나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에서도 이주배경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춰져야, 이게 결국에는 범죄 예방, 아동의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가 좀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통역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B: (외국인 소년은) 보호조치 자체부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서 사실은 이제 시설 입소나 이런 것이 선택 가능하고 거기에 시설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복지적인 선택지들이 애초에 박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니까. 사회 내에서 좀 다양한 처우들을 시도해 보고 싶은데,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내국인용인 경우가 많으니, 자원 자체가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연결되기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판사님이란 재판하다가 '외국 국적이어서 시설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하죠'라고 하셔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좀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판사님도 이 청소년이 뭔가 소년원보다는 6호 시설쯤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시설에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다 안 받아준다고 하니 어떡하죠라는 얘기를 청소년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니까. 청소년 당사자가 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런 자원들이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의 관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다이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후에 부모, 가정환경에서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센터A: 중국어권 같은 경우, 상담을 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단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몇 번 굉장히 난감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공적인 일이고, 저의 일이고,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 가져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중국 분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도 돈이고, 공안을 알고 있으면 최고라고 얘기를 그쪽에서는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뭔가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센터B: 러시아랑 중앙아시아랑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나라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뭔가 도와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왜지?' 그런 건 있어요. 사회복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거기는 그냥 애초에 나라에서 뭐든지 다 통제하고, 직업도 다 정해주고, 약간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왜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지?', '사기 치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도움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던가 아니면 그쪽 나라 자체에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 '이게 뭐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도와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못 살지 않아요' 라든지,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애 미치지 않았어' 라든지. 약간 우리 옛날의 사고방식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직도.

제4절 | 소년 면담조사

이주배경청소년의 소년사법기관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9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같은 소년보호기관 수용시설에 있는 소년이 6명이었고, 사회 내 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이 2명 포함되었으며, 민간기관에 속한 소년이 1명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9명의 소년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능숙할 정도로 한국어 이해력이 매우 높았고, 중국, 몽골, 동남아 등 아시아계 출신이어서 외모적으로도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즉, 본 면담 내용은 한국어 이해력이 낮거나, 아시아계 외 지역 출신 소년들의 경험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심정

이주배경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고 처음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갔을 때, 소년이 느꼈던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소년들은 대체로 처음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의 분위기나 처벌 등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답하였다.

소년A: 처음에 경찰서 갔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막 쇠창살 이런 거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무서웠어요.

소년D: 처음에 경찰서 갔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이제 더 안 가야겠다.

소년E: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는 조사도 처음 받고 그러니까 살짝 떨렸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졌어요.

소년G: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는 진짜 막 영화에서처럼 무서웠고, 들어가자마자 왜 했지 하는 후회가 되고 그냥 좀 무서웠어요...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관들이 외국인이어서 좀 잘 대해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들어줬어요.

소년I: 처음 경찰서 갔을 때 떨렸어요. 처벌 세계 받을까 봐 그냥 무서웠어요.

2. 통역 사용,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및 보호자나 보조인 동반 여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통역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조사 시 보호자나 보조인이 동반하였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소년들 대부분이 한국어 이해력이 높아서인지, 1명의 소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역이 필요 없었고, 통역을 사용한 소년의 경우 통역사가 통역을 잘 해주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기회를 가졌다고 답하였지만, 일부 소년의 경우에는 처음 조사에서만 보호자가 동반하였고, 그 이후에는 보호자나 보조인 없이 소년 혼자 혹은 공범 친구들과만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소년A: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못 알아듣고 이런 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얘기 했어요. 충분히 얘기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소년B: 경찰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통역사는 없었어요. 언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했습니다.

소년C: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이야기했어요. 경찰관이 이야기 하는 거 다 이해했어요. 말할 때 어려움도 없었고요.

소년D: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도 다 이야기 했어요.

소년E: 경찰서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맞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 다 말하고 왔어요.

소년F: 경찰관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판사님께 이야기 할 때도 언어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소년G: 경찰에 갔을 때 통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이해를 했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못 한 것도 없어요. 경찰서에서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것도 딱히 없었어요...다섯 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만 부모님하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끼리 갔어요

소년H: 경찰서에서 통역사를 안 썼어요. 경찰이 하는 말 다 이해하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 보시고, 하고 싶은 말 다 이야기 했습니다...경찰서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갔어요. 첫 날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다른 날에는 다 친구랑 갔어요. 부모님의 허락만 받으면 혼자 조사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소년I: 처음 경찰서 갔을 때 연변말 밖에 몰랐어요. 한국말은 다 알아듣는데 말은 잘 못했어요. 중국 사람이 통역사로 왔었고, 통역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현재 한국말은 10점 중에 5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말 조금 어려워요. 집에서는 연변말 써요. 여기(글로벌센터)에서 검정고시 하는데 국어만 좀 이해가 안되고 다른 건 괜찮아요.

3.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력 및 보호자를 위한 통역 제공 여부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한지, 이해력이 부족할 때 보호자를 위한 통역사가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상당수의 보호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통역을 받지 않은 반면,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보호자의 경우 기관에서 보호자를 위해 통역을 제공하기보다는 소년이 중간에서 보호자에게 통역하였다고 답하였다. 즉, 소년사법기관에서는 보호자를 위한 통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소년A: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외국인인데 어머니가 한국말 잘하셔가지고 어머니랑 대화할 때 한국말만 써요.
- 소년B: 어머니는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데, 아버지는 거의 못 하십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제가 통역해서 알려드렸어요.
- 소년C: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라 베트남어와 한국어 둘 다 쓰세요. 한국말을 잘 해서 집에서 한국말 써요. 경찰서에 있을 때 통역을 쓴 적이 없어요.
- 소년D: 부모님 모두 중국사람인데 한국말 잘하셔요. 집에서도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 소년E: 아버지는 살짝 서툴기는 한데 (한국말) 하시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처럼 잘 하시고...엄마는 어떨 때는 한국말 정말 잘하시고, 한국말 하는 것만 봤어요. 통역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 소년F: 부모님은 두 분 다 몽골분이시고, 한국말 잘 못하셔요. 조사할 때 부모님들한테 제가 다 통역 해드렸어요.
- 소년G: 경찰서에 할머니랑 고모가 왔어요. 모두 중국인(조선족)인데 한국말 잘하셔서 경찰관한테 다 얘기하고, 그 후부터 제가 혼자 왔어요. 불편 사항은 없었고 차별받은 것도 없었어요.
- 소년H: 부모님도 한국말 잘하시는데 제가 제일 잘해요.
- 소년I: 부모님은 한국어 저보다 잘해요. 엄마는 한국말 잘 하고 아빠는 좀 (연변) 사투리 있어요.

4.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소년사법기관에서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질문한 결과,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후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경찰 단계만 경험한 소년의 경우에는 이 후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의 경우도 다른 소년으로부터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A: 임시퇴원은 좀 빨리 나간 다음에 보호관찰하는 거요. 임시퇴원을 받으려면 잘 생활해야 합니다.

소년B: 임시퇴원은 여기서 생활을 잘해서 성적을 잘 받은 후에 선처를 해서 조금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면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소년C: 임시퇴원은 생활 잘하면 빨리 퇴원하는 거요. 그다음에 보호관찰로 넘어가요.

소년D: 임시퇴원은 좀 빨리 나가는거요. 교정 점수를 채워서 임시퇴원으로 나가면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관찰 중에 사고 치면 임시퇴원 취소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아요.

소년E: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판사님이 제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재판에서 6호 시설은 6호로 가고, 8, 9, 10호는 소년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년G: 경찰에서 조사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세하게 설명 안하고 대충 어느 정도 요약해서 알려줬어요. 이제 제가 조사받았으니까 사건 통지 오는 대로 교육받고 이제 재판 나오는 거 무조건 출석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년H: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얘기는 안하고 그냥 어디 가서 교육 잘 받고 오면 재판 받을 수 있다 그 말씀만 했어요.

소년I: 경찰에서 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안 들었어요. 통역사도 설명 안 해줬어요. 조사받고 그냥 집에 갔어요. 법원 가라는 메시지 와서 갔어요.

5. 소년보호기관 교육 이해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한국어로 교육을 받는 것은 한국어 이해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들이 소년보호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교육이 기억에 남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소년의 경우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소년보호기관에서는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소년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A: 보호관찰소에서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절도예방 교육 이런 거 받았어요. 여기 소년원에서는 강절도예방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폭력예방 교육 인데, 밖에서 애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 들을 때 그것 때문에 기억 많이 났어요.

소년D: 처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했는데, 그냥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하고 시간도 좀 빨리 가는 것 같고...여기에서는 교과 수업이랑 종이 접기 그런거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해요...경찰, 법원 여기 분들 다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소년E: 비행방지랑, 성교육이랑, 진로교육 받고 있어요. 진로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신입반 때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생각해봤어요. 이전에는 진로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 들어와서 잠깐, 카페를 해보는 것도 낭만 있는 것 같고...이런 내용을 워크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수업 끝나고 다 썼어요.

소년F: 여기에서 인성교육 이런 거 받는데 다 이해합니다. 강절도예방 교육 받은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했던 거라...하면 안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진로교육도 받았습시다. 대학교 무엇이 있는지, 전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와서 어떻게 할건지 그런거요...성비행, 인권교육도 받았어요.

소년G: 여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마약, 도박예방 그런 거랑, 분노조절 그런 교육이랑, 폭력 예방 이런 것도 배웠어요. 교육내용 다 이해되고, 절도예방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절도로 교육 받으러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절도 교육이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이번 계기로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소년H: 여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사법교육이랑, 절도예방, 그 다음에 도박, 마약, 경제 이런 교육 받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절도요. 절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교육 하고 나니까 잘 알게 됐어요.

소년I: 심사원에서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그 때 전혀 못해서 한 번만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방에 혼자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도...언어가 안되니까 교육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호관찰 받을 때 사회봉사명령 때는 장애인 센터 가서 도와줬어요. 말 잘 안되서 뭐 하라면 그냥 했어요. 그냥 눈치껏.

6. 이주배경에 대한 다른 소년의 인지 여부 및 갈등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시설에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이 생활할 때, 이주배경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년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이주배경을 다른 소년에게 알려주는지는 소년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주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소년들 간에 갈등이나 괴롭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들 간에 갈등이 심할 때 드물게 이주배경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소년도 있다.

소년A: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거 몰라요.

소년B: 저는 외국인이라고 굳이 말 안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중 한 분이 말 하셔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몽골인이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평소에는 놀리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가끔 싸우거나 할 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놀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주배경으로 놀리거나 괴롭히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년C: 제가 다문화인 걸 방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알지만, 다문화가지고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진 않아요...한국애들과 다르게 없다고 생각해요.

소년D: 다른 친구들이 제가 외국인인 거 몰라요. 부모님이 중국인인 것에 대해 친구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외국인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나 제약은 없어요. 외국인이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없구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것도 없어요.

소년E: 같은 방에 있는 애들이 부모님이 중국사람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외국인 신분이어서 차별을 받거나 한 문제도 없었어요. 다른 애들하고 다툼적도 없습니다.

소년F: 보통 제가 몽골에서 온 것을 말하는 편이에요. 얘기하다보면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주배경을 약점 잡고 그런 건 없어요...한국애와 다르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년G: 제가 연변 출신인 거 친구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연변인이어서 애들이 막 신기하다고...중국에 있을 때 차별을 많이 당해서, 한국 애들은 차별을 안해요. 중국에 비하면, 지금이 살기 더 좋아요.

소년H: 제가 중국 출신인 거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고 놀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소년I: 심사원에 있을 때 맨날 울었어요. 한국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서...다른 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없고, 선생님들도 다 잘 챙겨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애들이 차별 같은 거 없었어요. 제가 조선족인 것을 깨네들도 다 알고, 조선족이라고 놀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7. 처분 수용 여부

소년들이 자신이 받은 보호처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소년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제외한 다른 소년들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수용한다고 답하였다.

소년B: 소년원에 온 건 좀 억울합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소년원에 오게 된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소년C: 소년원(10호) 온 게 억울해요. 9호 받을 줄 알았는데.

소년D: 9호를 받은 건 받을만한 것 같아요.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가 놓친 거니까.

소년E: 심사원에 온 것은 오는게 맞는 거 같아요.

소년F: 보호관찰을 위반해서 심사원에 온 거라 심사원에 올만했어요.

소년G: 이곳(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거 억울한 거 절대 없어요.

소년H: 여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년I: 보호관찰소 간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큰 죄잖아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8. 한국 체류신분 유지에 대한 우려

외국인 신분인 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사실이 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항에 입국금지 사유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하였다. 외국인 신분인 소년 대부분은 소년사법절차 초기에 이와 관련하여 우려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려도 줄어드는 것에 비해, 보호자들은 여전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소년B: 추방이 잠깐 걱정되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모님은 추방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사고 치고 다니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년D: 심사원에서 제가 만약에 10호 받고 소년원에 가면 추방되지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지금은 그걸 너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년E: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못되면 추방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별 생각 없어요. 재판 생각 밖에...부모님들은 '내가 앞으로 사고를 치면 추방당할 수 있다'라고만 하세요.

소년F: 추방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소년G: 부모님들이 완전 걱정하세요. 이미 추방 확정이라고, 아빠 말로는 제가 이렇게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외국인인데다 법까지 어기니까 이러면 거의 추방당할 거라고 하세요.

소년H: 비자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약간 있어요.

9. 한국정착 의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이후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고, 향후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면담을 한 소년 중에 한국말 이해력이 낮다고 생각하고, 주로 같은 국적 사람과 어울리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는 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았다.

소년A: 한국이 교통 같은 것도 편하고 베트남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모르니까 한국이 더 편하고 좋아요.

소년B: 한국과 몽골 중 한국이 좋습니다.

소년F: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적응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년G: 저는 나중에 연변보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연변은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요. 한국이 학교 다니기도 좀 편한 것 같고 압박감이 없어요. 애들도 더 재밌고.

소년H: 저는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있고 싶어요.

소년I: 연변하고 한국하고 (어디가 좋은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중국말처럼 그리 잘 못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과 이야기 할 때 한국말 배우고, 따로 한국어를 공부 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여기 있을지 연변에 갈지 계획은 없습니다.

10. 재범예방 대책

소년보호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년의 재범예방이므로 소년들에게 자신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거의 모든 소년이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를 잘 다닌다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비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소년A: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친구들이랑 많이 좀 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거리를 조금씩 벌리면서.

소년B: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집이 이사를 할 거라서 제가 곧 전학을 갑니다.

소년C: 다시 사고 안치려면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요. 동네 친구들 정리하기, 학교 잘 가는 거.
 소년D: 사고를 안치려면 일단 주변에 있는 불량교우부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면 그냥 끊어내려고요. 전학을 가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면...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 한 적은 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되가지고.
 소년E: 다시 사고를 안치려면 일단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어도 다시 여기에 안 오려면 별 수 없지 않나 생각해요.
 소년F: 다시 사고치는 거를 막으려면 학교를 다니고, 불량교우 말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절 이렇게 잡아줄...
 소년G: 앞으로 범죄 자체를 그냥 안 하려고요. 절도도 그렇고...저희 네 명이 같이 했잖아요. 진짜 네 명 다 경찰서 갔다 온 이후로 (범죄 관련된) 그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소년I: 사고를 안치려면 안전하게 살아야죠.

제5절 |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년범죄자 중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나 비행으로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고,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권적인 처우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호방안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은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체류상의 불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소년사법절차에서 간과될 여지도 있다. 앞에서 직원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과 보호자가 실제로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기초로 소년사법절차상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슈는 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경찰조사 시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년보호기관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대다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관용어구와 같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다.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보다 더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므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수사나 재판 및 교육 시 '예'라고 답한다고 해서, 소년이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서 '예'라고 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에 의해서 그렇게 답한 것일 수도 있다.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만, 한국어를 어설피게 이해하고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한 소년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소년사법절차 초기인 경찰단계에서 소년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사법절차 상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없으며, 대신 기관에서 필요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와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역서비스는 필수적이므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어야 하고, 통역을 하는 통역인의 자질도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찰과 법원에서는 각 언어별 통역인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리스트에 있는 통역인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도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통역인을 요청하게 된다. 즉, 소년이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통역인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관 중 약 69%는 통역인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형사사법기관에서 통역업무를 하는 통역인은 기관에 전일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본업이 따로 있고, 기관에서 통역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통역이 필요할 때, 제때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이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의 경우 통역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해당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에게 통역서비스가 중요함에도 현장에서는 통역서비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통역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제때 통역을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통역을 잘 할 수 있는 통역인을 선정하여, 교육 및 관리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통역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질은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사법절차 상에서의 통역은 통역인이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정확히 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소년 인권 등에 대한 이해도 겸비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사법기관의 통역인은 기관에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사법 전문 통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들로 하여금 문자적 통역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경찰관의 약 85%가 통역인의 통역이 정확하다고 답하였지만, 약 38%는 통역인의 법률적인 이해력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약 37%는 통역인이 통역 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였다. 심층면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역사가 문자 그대로의 통역은 잘 하지만,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때로는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통역인이 피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년사법기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역시스템은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나 통역인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법원에서는 올해 7월 1일에 법정통역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인증된 통역인을 채용하여 영상통역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국어와 수화통역이 가능하며, 향후 보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본 통역센터의 가장 큰 기여점은 통역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대체로 대면으로만 통역이 이루어지다보니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영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역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통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역인을 전일제로 채용하는 것 또한 고무적이다.

통역인이 전일제로 채용될 경우, 상시적인 통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력이 쌓임에 따라 법률에 대한 이해도 증가할 것이므로 보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통역센터가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소년 사법기관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역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역과 질적으로 차이를 보일지 등에 대한 평가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상을 통한 통역서비스 제공이 고무적이기는 하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통역을 제공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통역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기준마련이다. 담당 직원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평가체계가 마련된다면, 통역이 필요한 소년이 통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어 이해력에 대한 평가도구는 문자적인 이해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한 이해까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검사도구 개발이 어렵다면,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통역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본인이 편한 언어를 취사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소년보다 대체로 한국어 이해력이 훨씬 낮은 보호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대안은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경우에 이들의 언어적인 취약점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변호사 등과 같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경찰 수사단계 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인으로 하여금 소년과 보호자의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조사 시 통역을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는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집행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소년법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교정을 통한 품행개선 또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주배경청소년도 비이주배경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처분 시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이주배경여부와 상관없이 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

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이해가 낮은 소년에게는 소년의 모국어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소년보호기관에서는 경찰이나 법원처럼 통역인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글로벌청소년센터와 같은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처럼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교육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심층면담에서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소년들은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만 채우고 간다고 지적하였다. 소년보호기관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이라도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이 소년들이 교육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받으러 오는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년이 없는 이유가 기관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소년만을 선별하여 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소년 중 아주 어렸을 적에 한국에 와서 자신의 모국어는 모르고 그나마 한국어를 가장 잘 하는데, 한국어도 서툰 소위 '0개 언어'를 하는 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이 정말 어렵다. 향후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증가할 것이고, 한국어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되지 않는 소년을 위해서는 소년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을 평가하여, 한국어 이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한국어 이해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년의 경우에는 통역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향후 통역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통역인이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안산처럼 이주배경청소년

이 많은 지역의 기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볼만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이 적은 기관에서는 소년의 국가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과한 기간 내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소년만을 모아서 따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최소로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들기, 그림 혹은 운동과 같은 것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한국어 이해력이 낮은 소년도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적이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비언어적인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소규모의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비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비교 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사전에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소년사법절차를 경험하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는 통역만큼이나 소년사법절차 및 소년사법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내국인 소년과 보호자도 소년사법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들은 언어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년사법절차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년보다 한국어가 더 서툰 보호자의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그나마 제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과 보호자는 언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즉, 국가마다 사법시스템이 다르고 사법기관의 역할이나 사법기관종사자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과 보호자가 우리나라의 소년사법기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면담조사에 의하면, 중국을 비롯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 출신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위 '공안'에 대한 인식이 비이주배경 사람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대할 때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또한, 뇌물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뇌물을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소년과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한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보호자는 소년사법기관에서 소년을 납치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의 언어적 및 문화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는 소년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년사법절차와 기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이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권리고지 확인서 같은 업무상 필수 서류 등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소년이나 보호자가 알아야 될 소년사법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거나, 번역이 되어 있어도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나 소년보호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소년이 통역서비스를 받게 되면 통역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하겠지만, 통역인 또한 소년사법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과연 소년이나 보호자가 알아야 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지는 의심스럽다.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 중에는 기관에 오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보호자 동석 없이 소년 혼자 조사를 받기도 하고, 보호자가 소년의 경찰조사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소년보호기관에서 다양한 민원(서신, 면회, 물품반입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소년사법기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가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자료 뿐만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에서는 소년사법절차나 기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년과 보호자에게 QR 코드나 링크로 제공할 수 있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각 나라 언어 영상에 그 나라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소년과 보호자도 거부감 적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몽골 소년에게 6호 처분을 할 때, 몽골 사람이 영상에 나와 6호 처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의 QR 코드나 링크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준다면, 이들의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할 것이다.

소년사법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소년사법기관 중 어느 기관도 이주배경청소년관련 매뉴얼이나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 특성상 별도로 매뉴얼이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 및 필요시 통역서비스 제공이다. 현재는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에 대한 직원의 판단은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역서비스 필요 여부를 직원의 판단이 아닌 매뉴얼에 명시된 보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만들어질 경우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통역을 제공한다든지, 이주배경을 가진 모든 소년의 경우에 통역을 제공한다든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력이 소년의 처우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주배경을 가진 보호자들은 소년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낮고, 보호자를 위해 기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아 보호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양부모 중 소년의 보호력이나 처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하는 보호자(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의 한국어 이해력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한국어 이해력까지 고려하여 통역서비스를 신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매뉴얼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소년을 조사함에 있어 보호자나 보조인의 필수 동석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조사 시 보호자나 보조인을 동석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수의 소년 사건이 1회 조사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첫 조사에서 보호자나 보조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끝난다. 하지만, 소년대상 심층면담에 의하면 일부 소년의 경우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지고, 첫 조사 이후에는 보호자나 보조인 없이 소년 혼자 조사를 받았다. 물론,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서 보호자나 보조인 동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용시설의 경우에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수용생활과 관련하여 매뉴얼이나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주배경이라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소년들 간에 갈등요소가 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따라 분리시켜야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이 필요하다.

소년사법기관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관련 매뉴얼이나 규정 외에도 나라별 문화적 특성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나라에 따라 성인으로 취급되는 연령, 성에 대한 개방성, 청소년의 술이나 담배에 대한 허용 정도, 성인과 소년의 상호작용 방식, 아이 양육 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각 나라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처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의 행동 특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소년이나 보호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절차나 소년사법기관의 기능 등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호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년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인지 몰라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 좀 더 이해한다면, 조사 시 소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시에도 더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수용시설에서는 소년이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담당자들에게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특성이나 차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층면담에 의하면, 이주배경청소년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소년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든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대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직원이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이해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도적인 기만행위 또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주배경을 가진 소년의 수, 그들 중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하는 소년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은 이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처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한국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언어적인 한계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취약한 이들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제 5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

김민규

제5장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

제1절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초기 단계 지원 강화 방안

1. 국선변호인 조기 개입 제도 도입

현행 「소년법」 제2장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하여(제2절) 보호처분(제3절)을 내리는 이른바 보호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제3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특례로서 검사의 업무 및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소년법」은 소년사법절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찰 단계에서의 절차나 사법경찰관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일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업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2. 16. 시행) 제4조나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 24. 일부개정, 2024. 5. 24. 시행) 제2절 이하, 그리고 「(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일부개정, 2023. 11. 1. 시행) 제12절 이하 등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89조는 소년의 신상정보 및 환경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제1항),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소년에 대한 구속을 가급적 피하며(제3항), 만약 소년을 체포·구속한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줄 것(제1항), 외국인을 체포·구속하

는 경우 영사기관에 통보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것(제2항)과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점(제3항), 변사사건의 경우 영사기관에 사망 통보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점(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215조 제1항은 경찰관이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언어나 풍속, 습관 등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17조는 외국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통역인을 통한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배려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소년사건에 있어서 경찰 조사 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소년법」 제17조의2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제1항)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소년(제2항 제1호),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제2항 제2호), 또는 기타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항 제3호)에 한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사건이 진행된 이후의 보조인 선임에 대한 내용이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전술한 법령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포·구속되지 않은 소년범죄의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이 참가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등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¹³⁾ 왜냐하면 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성인에 비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이 없다면 이들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로 인해 처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과,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지식과 소년사건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113) 같은 논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018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311면.

조사·수사절차에 참가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방어권 행사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단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내국인 청소년에게도 역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찰의 조사나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든지, 아니면 현행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등에서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에 국선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규칙 등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표 5-1-1] 경찰단계 소년사건 국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규정안

제00조(국선변호인)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로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신문을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미성년 피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성년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을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와 관련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바,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¹¹⁴⁾를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¹¹⁵⁾

114) 법무부는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은 법무부 보도자료(2019.4.5.),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합니다” 참조.

115)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3호, 제안일자 2020. 11.23)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법」에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소년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의할 때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선보조인을 선임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동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주배경청소년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동법 제2호와 제3호 사이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도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표 5-1-2] 소년법 국선보조인 규정 개정 제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2. _____ _____ 2의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_____ _____ ③ _____ _____ _____

한편,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출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의 일방 또는 양친이 우리말에 서툴고 국내법적 지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대체로 이민 1세대는 자국의 교육을 받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모국에서 거주하다가 결혼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한민국 사회로의 통합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들은 내국인이거나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 대한 태도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간단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절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자체에 대한 조력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력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의 보호자에게도 조사와 심리과정, 그 결과에 대하여 통역을 통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¹¹⁶⁾ 이러한 과정을 통할 때 비로소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 적용 및 법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법통역인 제도 개선

가. 통합 통역 지원 시스템의 구축

앞서 여러 직역에 대한 인터뷰 결과, 현재 다양한 단계에서 외국어 통역지원을 할 수 있는 사법통역인 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법원은 법원에 통역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통역·번역인을 확보하고, 희소한 소수언어 전문 통·번역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0월에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그해 12월 기준 인증 통·번역인 82명과 준인증

116) 이지은·장원경,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56-257면.

통·번역인 102명을 확보하였다.¹¹⁷⁾ 이러한 인증시험을 위하여 법원은 기존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를 개정하여 통번역인의 선정 및 교육과 지정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한다.¹¹⁸⁾

나아가 2024년에는 다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를 개정하여 ‘법정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정통역센터’란, “영상재판을 통하여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말하며, 2024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되었다.¹¹⁹⁾ 이러한 법정통역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방법원에서도 실력 있는 통번역인이 영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사법통역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법정통역센터를 통하여 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¹¹⁹⁾

이처럼 법원은 법정통역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 초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찰이나 교정보호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설화된 통번역 지원 시스템은 아직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사법통역인의 수 자체가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소수언어와 같이 대체가 어려운 언어의 통번역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경찰의 경우, 사법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어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에서 통번역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인은 해당 기관에 전문적으로 고용되어 상설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통번역 요청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기관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

117) 대법원 보도자료(2020.2.),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1면. ‘인증 통·번역인’이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고, ‘준인증 통·번역인’이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해당 언어에 숙달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118) 대법원 보도자료(2024.7.17.), “법정통역센터 개소식 개최”, 1면.

119)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2024.7.17.), 2면.

답할 수 없어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통번역인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위촉되기 때문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통번역인도 상당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앞서 언급한 조사 내용에서도, 통역인을 대동한 조사를 수행한 일부 경찰관 중에서는 통역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역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고,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통역인이 통역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형사사법업무 기관 자체에서 임용한 사법통번역인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상시적 통번역인을 임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통합 '통번역 서비스 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일원화되고 전문화된 통번역 제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법정통역센터의 예를 참고하여, 수사나 조사 단계,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 단계에 직접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 센터에서 제공하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통역 지원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각 절차 단계별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국적 출신 외국인을 경찰관이나 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외국인 귀화자 중에서 경찰이나 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구사 가능한 언어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국가도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화한 외국인도 형사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줌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 내에도 일종의 '롤모델'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관련 대안을 도입하기 전의 과도기 단계에서, 기존 통역인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통번역인에 대하여 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통역인의 자격 및 직무능력 강화

현재 법원은 '법정 통·번역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과 법정 통번역이 가능한 인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경찰통역요원'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찰의 통역요원은 1) 한국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내국인' 또는 2) 한국어 외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능통하여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다.¹²⁰⁾ 또한 신분이 명확한 자 중에서 어학능력에 대한 확인 및 면접을 통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선발하는 등,¹²¹⁾ 경찰의 통역요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역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제도 및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¹²²⁾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떠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해당 처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각각의 절차 단계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또한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통역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¹²³⁾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통역조력을 위해서는 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소년인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 참고인 등이 가지는 소년법상의 권리
- 일반적 형사절차와 다른 소년사법절차의 특징
- 소년법상 각 보호처분의 주요 내용 및 특성

120) 서울경찰청, 2016년 '경찰 통역요원 모집 공고' (<https://www.smpa.go.kr/common/attachfile/attachfileDownload.do?attachNo=00120693>, 2024.11.2. 최종접속) 참조.

121) 경찰청 공고 제2024-11호,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112전문 통역요원 추가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4&q_bbscttSn=20240112102857154, 2024.11.2. 최종접속) 참조.

122) 통역인의 통역 능력이나 통역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성훈·이지은,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19-140면; 이지은·장원경, 앞의 글, 253-254면 등 참조.

123) 사법통역인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장원경, 앞의 글, 273~276면 참조.

- 절차별 집행 기관의 특성에 대한 내용
- 각종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절차 및 방법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은 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무료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전문 통역자에게는 후에 통역을 제공한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통역자가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각 언어별로 교육을 이수한 전문통역자에 대해서는 통역인 목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수사관 등이 사후에 통역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역인 목록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다.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앞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통역인의 정확한 통역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법통역인의 유능하고 적절한 통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통역인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의 통역인 자격 관리 및 교육 외에도, 통역인 자체로서도 전문가적 윤리의 준수가 요구된다.¹²⁴⁾ 특히, 이들은 피고인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언어도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선 ‘법조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조윤리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¹²⁵⁾

4. 소년사건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의 검토

적절한 통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강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이 조력을 한 피의자 신문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정규 교육에 포함되어 일찍부터 습득해온 영어를 통한 통역에 문제가 있는지는 수사관도 어느 정도

124) 안성훈·이지은, 앞의 보고서, 178면.

125) 송시섭, “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2022, 58~59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언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통역이 이루어진 것인지, 통역사의 사견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적인 바와 같이, 통역요원에 대하여 인증 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정도의 법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및 소년사법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통역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역인이 조력인으로서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한 독일의 입법례에서 변호사가 참석해야 하는 소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한 개정 「소년법원법」과 유사한 취지이다.

즉,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미성년 피의자가 공판정 외에서 신문을 받는 경우이거나, 역시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을 당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통역인이 한 통역 내용을 법정에서 다룰 때 영상녹화물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공판정 외에서 신문을 받는 경우
-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이나 변호사 등 조력인의 동석이 어려운 경우
-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로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역에 의하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실제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인 피고인, 특히 통역인을 통하여 최초의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¹²⁶⁾

126) 영상녹화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는, 이순욱,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대검찰청, 2021. 3. 61-67면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상녹화를 통해 1)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조서 작성에 있어서의 진술왜곡 방지, 2) 실제적 진실 발견 및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 3)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4) 조사자 증언에 있어서의 위증 방지 및 위증시의 입증자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앞서 독일의 입법에 대한 논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상녹화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에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즉, 변호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영상녹화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치 영상녹화만 하면 변호사 등 조력인 참여 없이도 언제든 신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면 위축되거나 반대로 오히려 과장하는 진술을 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독일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상녹화는 변호인 등 조력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부득이 변호인 등 조력인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보호자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가 동석한 상황에서 녹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영상녹화 전에 피의자인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재판 관련 개선방안

1. 이주배경청소년 등 외국인을 위한 지침 마련

영국의 입법례 소개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영국은 형사사법절차에 편입된 외국인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사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태도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법정통역, 사법절차에 대한 안내문의 번역문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재판 절차 동안에 외국인 또는 이주배경청

한편, 이동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경찰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22~23면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해석론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과 실무상 영상녹화의 활용 빈도가 현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영상녹화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별도로 안내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판사가 견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당 매뉴얼(체크리스트)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 [표 5-2-1]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재판단계 체크리스트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및 편리한 언어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통역조력인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이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이 외국국적자 또는 중도입국자인 경우, 해당 범죄가 모국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이 장래 한국에 거주할 것인지 여부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조력을 제공할 자에 대한 사항 확인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이 심리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심리가 길어질 경우 휴식을 제공할 것 • 복문보다는 되도록 단문을 사용하여 심리할 것 •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 학령 등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휘할 것 •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고 맞는지 2회 이상 확인할 것 • 가정과 예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언급할 것 • 언어유희, 지나친 비유법,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말 것
판사의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민족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한 후 결정할 것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왔고, 어떠한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조사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모국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배경이 비행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장래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할 것인지, 출국할 것인지 여부도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우와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조력을 제공하는 보호자가 있는지,

아니라면 조력을 제공하는 자가 있는지, 보호자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는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소년에 대한 올바른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단계에서 판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로 소년이 절차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주배경청소년이 심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쉽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용어, 비유법, 줄임말, 가정법 사용 등을 자제하도록 소송당사자에게 항상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도록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2.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안내 제공

이주배경청소년 및 외국인인 부모로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더구나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수행되는데(법 제3조), 즉 피의나나 피고인, 변호인 등은 법 제7조의 사용자등록을 하고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로 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6조 제1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송당사자의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세부적 내용과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 방법은 내국인에게도 어려울 수 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이거나 혹은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인 경우,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정보접근 절차 및 방법, 확보된 정보의 활용 방법 등을 심리 단계에서 청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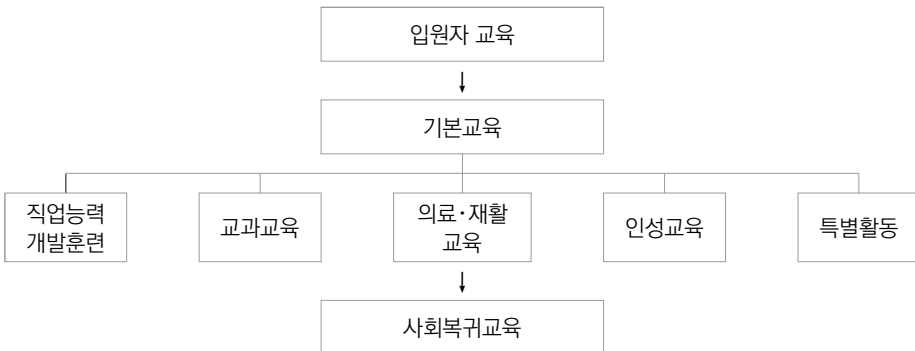
제3절 |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정 및 보호처분 개선방안

1. 입소 전후 교육내용의 개선

앞서 제4장 심층면담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이주배경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내국인 소년들과 동일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비이주배경청소년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제공한다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물론 재원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학습능력이나 문해력 부족이 문제되는 사안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자란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와 중도에 입국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사회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은 서로 구분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가치관, 법제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년원생에게 행해지는 교육단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5-3-1] 소년원생 교육단계



※그림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소년원생 교육”의 그림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 2024.11.2. 최종접속).

우선 이주배경청소년이 소년원에 입원 하기 전에 받는 ‘입원자 교육’의 내용부터 각각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출신국의 언어를 사용한 생활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가치관에 맞춰 타인을 배려하고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입원자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문자로 제시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가능한 대안으로 입원자 교육부터 시청각 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귀 교육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이나 증강현실(A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들이 소년원 생활을 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이나 혹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단순히 책자나 영상물로 교육하는 것보다 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⁷⁾ 만약,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섭외한다면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롤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주의 교정정책 추진

다문화 사회에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교육 방향은 대체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학습시켜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었다.¹²⁸⁾ 어찌보면 원래부터 거주한 국민보다는 이주를 선택한 자에 대하여 문화와

127) 교정분야에서의 가상현실 기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윤지영·김민규·오영근·오정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I):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241~244면 참조.

128) 이러한 교육 내용으로 ‘외국인을 위한 범죄 예방교실’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이주민에 대한 법교육과 범죄예방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희, “다문화사

언어를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하다.

하지만, 이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받아들여 함께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국인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종적, 민족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차이에 대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교정의 단계에서 내국인 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가 함께 어울려 수용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른바 ‘다문화주의 교정정책’을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수용시설에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¹²⁹⁾

3. 이주배경청소년 보호관찰 인력 전문화

소년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업무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상의 소년보호관찰은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범죄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¹³⁰⁾ 소년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선행유지, 감독에 순응할 의무, 그 외에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대상자 별로 부과하는 개별적인 준수사항이 있다.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감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 내에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입법 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532-533면.
129) 박경일·정상규,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호, 2011, 84~86면; 박광식·정상규·윤담, “외국인 재소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행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8호, 2013, 187~188면.

13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소년 사회내처우 개관” (<https://moj.go.kr/cppb/717/subview.do>, 2024.11.2. 최종접속).

국가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의 이민 귀화자를 대상으로 특채를 통해 외국인 대상 보호관찰관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전체 소년보호관찰 대상 인원 대비 5% 정도에 불과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당면한 내국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여 문제가 급증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이중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제4절 | 이주배경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소년사법절차 개선 방안

1. 개관

제2장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사건의 피해자로 소년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증인으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경우는 언어상의 조력이나 심리 피해에 대한 지원 외에는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 제26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 중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통역 등 조력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의 제4장의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 차라리 아예 못하면 통역이 붙여지는데, 어설피게, 동포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통역 불러주시고. 저희 몇 월 며칠에 오라 그래서 가보면 통역본 와 계시고,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설피게 한국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폭력 사건인데) 자기가 맞았대요. 그리고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한국 아이랑 외국인 아이였고, 경찰서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깐, 자기한테 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네, 네, 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맞았는데 왜 나보고 돈을 달라 그러지?' 나중에 한국 국적 아이가 '너, 니가 때렸으니깐. 나한테 돈 줘' 그런 식으로 계속 문자 보내서 이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애가 전혀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도움을 청해서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법적 용어를 잘 모르니까...

(4. 변호사 및 민간단체 -> 가. 언어적인 이슈 중 글로벌센터 직원 인터뷰 발췌)

즉, 이주배경청소년이 단순한 문자의 이해가 아니라 법적인 처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즉각적으로 통역 등의 조력인이 진술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 등 외국인의 경우 체류 문제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문제로 작동한다.

...경찰관이나 공안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서 그럴대라고요. 실제로 사건에서는 엄마가 아이랑 면담도 못 하게 하고, 아이에게 한국에 계속 살 수 없다고 말해서 수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피해자에게 아무리 괜찮다고 설명해도 신고하면 추방당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국가의 복지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국가에 따라 다르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피해자 권리 안내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의 간극이 매우 큼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친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오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처럼 지역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구분 없이 사건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센터 관계자가 신뢰관계자로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뢰관계자로 동석시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1. 수사단계 -> 나. 이주배경청소년 및 보호자 특성 ->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중 인터뷰 내용발췌)

이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조력이 개입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아무리 훌륭한 지원이나 교육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지시키고 홍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소년사법절차의 구조적인 특성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내용은 비단 이주배경청소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규범적 검토 외에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예컨대, 외국인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전략으로 다문화 자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외국인 차별인식의 개선,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확대,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 등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¹³¹⁾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심리 지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통한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부모 대상 교육 등의 사회정책적 대응책과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예방교육의 확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피해지원기관 설립 등의 형사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¹³²⁾

이러한 이주배경청소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책 외에 본 연구는 피해자로서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법」 상의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피해자 인권 증진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통역 등 조력인 제도 개선

가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역 조력 제공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통역 및 보조인

131)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앞의 보고서, 206~214면.

132) 전영실·신동준·박상희, 앞의 보고서, 270~287면 참조.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년법」 제26조 제1항은 통역이나 번역 등 지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년부 판사가 하는 것으로써 이미 조사가 끝나고 심리에 들어간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수사규칙」 제90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 과정에서 조력인이 참여하거나 통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중 일부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법률 용어 및 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어려운 경우에도 이러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년법」,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 통번역 지원이나 진술 조력을 할 수 있는 보조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6조 제1항). 그러면서 진술조력인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즉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35조 제2항).

이주배경청소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진술조력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외국어 능력’ 및 ‘해당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해자에 대해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권 강화 방안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피해정도나 결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현행 형사소송 체계 내에서 피해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¹³³⁾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그리고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소년법 제68조). 이는 가해 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¹³⁴⁾ 하지만, 피해자는 단순한 배려의 대상이 아닌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주체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¹³⁵⁾ 이는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법률안 중, 법무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 2022.12.28. 제출)의 내용 중에는 소년 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가족 등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134) 박상열,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소년보호연구 제26호, 2014, 115~116면.

135) 같은 논지로 김 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 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127~128면.

▶▶▶ [표 5-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변호사·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표출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 의안원문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위 정부안을 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서 참석이 허가될 수 있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는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의견진술(소년법 제25조의2) 외에 심리기일 참석 및 방청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한다.¹³⁶⁾

이러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위 정부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심리 참여 자체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원격진술 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¹³⁷⁾

4.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 방안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절차 진행상황, 기소유무, 심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136) 한석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9215호)), 2023.2., 19~20면 참조.

137) 김 혁, 앞의 글, 128면.

한다. 물론 소년법상의 심리의 비공개 원칙 및 보도금지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 즉 가해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해소년의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건 정보는 피해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³⁸⁾

한편, 전술한 법무부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 2022.12.28. 제출)에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제안되어 있다.

▶▶ [표 5-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 개시 여부 2. 심리의 일시·장소 3. 심리 결과 4.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2.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 표출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 의안원문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결과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법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법원행정처는 사건 관련 정보 외에 심리 결과에 대해서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 규정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¹³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¹⁴⁰⁾ 물론

138) 같은 논지로 김 혁, 앞의 글, 127~128면;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앞의 보고서, 192~193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와 함께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장차 가해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처분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계속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아니더라도 가해 청소년에게
처분이 내려졌는지의 유무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139)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40) 한석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9215호)), 2023.2., 24~25면 참조.

제 6 장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결론: 연구의 요약

김민규·조영오

결론: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절차 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처음 연구진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무자에 대한 면담 및 소년사법절차에 편입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예측보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달라져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으로 이주 외국인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주 외국인 수가 급증할 것이 분명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문제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의 부모 중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도 목격되었다.

단순한 언어 조력의 문제를 넘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소년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년사법절차 단계 중, 소년에 대한 사건이 인지되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경찰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뒤이어 제시한 많은 개선방안의 경우에서와 같이 비단 이주배경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 소년에게도 필요한 제도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및 소년수사단계에 적용되는 경찰의 각종 수사규칙에 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를 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4장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중,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능력을 갖춘 통역인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소년사건에 통역조력을 하는 통역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 및 소년사법절차의 내용과 절차적 예외를 교육하여 통역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통역인이 법조윤리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통역을 수행하도록 통역인의 법조윤리를 규범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이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통역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다.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제도 자체의 취지가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경우 영상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한 독일에서도, 영상녹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판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판사가 재판 수행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을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심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 절차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 피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용이해졌지만,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이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등록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접근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에 대한 교정 및 보호처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소년원 입원이나 소년교도소 수감 전·후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과 사회화를 위하여 생활 교육을 실시하되,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영상물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내국인 청소년에게도 활용 가능한 방법일 수 있는데, 문자에 대한 독해력이나 이해력,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도 영상과 체험 방식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안내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도 해당 이주배경청소년이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어에도 능통한 이민 귀화자를 활용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관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호관찰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가능하다면 이민 귀화자를 보호관찰관으로 특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피해자인 이주배경청소년도 소년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통역 등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그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장차 모든 소년사법절차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비이주배경청소년보다 차별적이고 우월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제공하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하고 쟁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2024.8.
- 구춘권,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018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12.
- 김 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 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 김희주·장주영, 「중도입국 아동의 초기 적응 경험과 정주화에 대한 의미」,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연구보고서, 2023.
- 박경일·정상규,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호, 2011.
- 박광식·정상규·윤 담, “외국인 재소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8호, 2013.
- 박상열,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소년보호연구 제26호, 2014.
- 박형민·조성현·김선희,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202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22.
- 송시섭, “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2022.

-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신현옥·윤상석·이슬기·김도혜·이향규·오수연,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2.
- 안성훈·이지은,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 안수길,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최신 동향 분석 - 소년법원보조제도의 강화에 주목하며 -”, 소년보호연구 제34권 제1호, 2021.
- 양계민 외,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
- 양계민 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
- 윤지영·김민규·오영근·오정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I):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 이동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경찰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3.
- 이순옥,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대검찰청, 2021.3.
- 이지은·장원경,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전영실·신동준·박상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 정도희, “다문화사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입법 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 정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9215호, 제안일자 2022.12.28.
- 한석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9215호)), 2023.2.
 황운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43호, 제안일자 2020.11.23.

온라인 자료

국회도서관, Social Signal 2024-1호(통권 제 41호) (https://argos.nanet.go.kr/bbs_img/bbs/153/b0438439-3592-4a0a-b005-c820a966fa85.pdf, 2024.11.02. 최종접속).

경찰청 공고 제2024-11호,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112전문 통역요원 추가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4&q_bbscttSn=20240112102857154, 2024.11.2. 최종접속).

서울경찰청, 2016년 ‘경찰 통역요원 모집 공고’ (<https://www.smpa.go.kr/common/attachfile/attachfileDownload.do?attachNo=00120693>, 2024.11.2. 최종접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소년원생 교육”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 2024.11.2. 최종접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소년 사회내처우 개관” (<https://moj.go.kr/cppb/717/subview.do>, 2024.11.2. 최종접속)

법무부 홈페이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609/subview.do>, 2024.11.24. 최종접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1/subview.do>, 2024.11.02. 최종접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주배경청소년”,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2024.6.10. 최종접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문화가족” 검색결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878>, 2024.6.10. 최종접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다문화 청소년, 배제가 아닌 수용과 통합으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통권 제4호, 2022.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2%EB%85%84%204%ED%98%B8.pdf, 2024.6.10. 최종접속),

국내 언론보도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24.7.17.), “법정통역센터 개소식 개최”.

대법원 보도자료(2020.2.),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법무부 보도자료(2019.4.5.),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합니다”.

통계청 보도자료(2023.12.18.),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내일신문 2024.5.7.,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https://m.naeil.com/news/read/509485>, 2024.11.2. 최종접속).

매일경제 2024년 10월 25일자, “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150527>, 2024.11.02. 최종접속).

문화일보 2022년 11월 9일자, “50년뒤 단일민족국가 불가능… 이민청 세워 세계시민 국가 준비해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0901032121289001>, 2024.6.10. 최종접속).

문화일보 2024년 8월 4일자, “전국에 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 350곳…안산엔 97%인 곳도”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80401039910021002>, 2024.11.02. 최종접속).

머니투데이 2022년 10월 23일자, “‘외국인 1명이 한국인 2명뿔 한다’…이민 없으면 소멸하는 대한민국 [MT리포트] 이민청, 피할 수 없는 선택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115131795896>, 2024.6.10. 최종접속).

코리아넷뉴스 2024.1.17., “국내 외국인 251만명…'다문화사회' 진입 눈앞”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2024.11.2. 최종접속).

- 국외문헌 -

단행본 및 논문

Christian Walburg, “Expertise: Jugenddelinquenz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rsachen und neuere Entwicklungen”, Mediendienst Integration, 2023.12.

Sabrina Hoops/Bernd Holthusen, “Jugendhilf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DJI

- Impulse 21. Jg., H.4, Deutsches Jugendinstitut, 2011.
- Deutscher Bundestag,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Verfahrensrechte von Beschuldigten im Jugendstrafverfahren“, Drucksache 19/19837, 2019. 10.9. (각주에서 ‘BT-Drs. 19/13837’로 표기함).
- Ulrich Einsenwerg/Ralf Kölbl, Beck'scher Online-Kommentar JGG, 25. Aufl. 2024. 4. (각주에서 ‘Eisenberg/Kölbl/Kölbl, 25. Aufl. 2024, JGG § 70c’로 표기함).
- Yannick Van den Brink, “Equality in the Youth Court: Meaning,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Youth Justice”, Youth Justice Vol. 22(3), 2021.5.3. (<https://doi.org/10.1177/1473225421101342>).
- 「The Lammy Review- An independent review into the treatment of, and outcomes for,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7.9.
- Ministry of Justice, 「Government Response to the Lammy Review on the treatment of, and outcomes for,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7.12.
- Judicial College, 「Equal Treatment Bench Book」, 2021.2. Edition, 2023.4. revision.
- Maria F. Ramiu/Dana Shoenberg, “Chapter 7: Strategies for Serving Hispanic Youth”, DMC Technical Assistance Manual, 4th Edition, 2006.10.
- Vera Institute of Justice, “If Parents Don't Speak English Well, Will Their Kids Get Locked Up? - Language Barriers and 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07.10.
-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 Fact Sheet Series: Core Protections: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Act 4JJ, 2019.2.
- 法務省 法務総合研究所, 犯罪白書 - 非行少年と生育環境 - 令和5年版, 2023.

해외 인터넷 자료

- Christian Walburg, “Migration und Kriminalität - Erfahrungen und neuere Entwicklungen”, Innere Sicherhei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9.2

5. (<https://www.bpb.de/themen/innere-sicherheit/dossier-innere-sicherheit/301624/migration-und-kriminalitaet-erfahrungen-und-neuere-entwicklungen/#%E2%80%9E07%E2%80%9C>, 2024.6.20. 최종접속).

Deutsches Jugendinstitut e.V., “Jugend(hilfe) im Strafverfahren- Neue Gesetzeslage, veränderte Aufgaben und die Perspektive der jungen Menschen”, 2020.7.9. (<https://www.dji.de/ueber-uns/projekte/projekte/jugendhilfe-im-strafverfahren.html>, 2024.11.02. 최종접속).

Holger Kolb/Jan Schneider/Holger Kolb/Jan Schneider, “Der liberale Wandel der deutschen Arbeitsmigrationspolitik seit 200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8.5.14. (<https://www.bpb.de/themen/migration-integration/dossier-migration/252285/der-liberale-wandel-der-deutschen-arbeitsmigrationspolitik-seit-2000/>, 2024.11.02. 최종접속).

buzer.de, “Anderung § 38 JGG vom 17.12.2019” (<https://www.buzer.de/gesetz/5689/al81152-0.htm>, 2024.11.30. 최종접속).

Gov.UK, “Youth offending teams”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2024.11.02. 최종접속).

UK Parliamen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ustody (Part 1): Entry into the youth justice system Contents - Racial Disproportionalit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1/cmselect/cmjust/306/30609.htm>, 2024.11.02. 최종접속).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Youth Justice” (<https://www.criminaljustice.ny.gov/ofpa/jj/jj-index.htm#programs>, 2024.6.20. 최종접속)

Keith Paul Medelis/Victor Victorio, “New York project aims to narrow gap between minority versus white juveniles sent to community programs, not prison”,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Exchange, 2021.7.15. (<https://jjie.org/2021/07/15/new-york-project-aims-to-narrow-gap-between-minority-versus-white-juveniles-sent-to-community-programs-not-prison/>, 2024.6.20. 최종접속).

NCJJ/OJJDP, “Appendix G - “Multicultural Awareness: Developing Cultural Underst

anding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Combining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Treatment With Diversion for Juveniles in the Justice System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64481/#__NBK64481_dtls__, 2024.11.2. 최종접속).

OJJDP, “Racial and Ethnic Disparity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Literature Review” (<https://ojjdp.ojp.gov/model-programs-guide/literature-reviews/racial-and-ethnic-disparity>, 2024.11.2. 최종접속).

OJJDP, “Legislation” (<https://ojjdp.ojp.gov/about/legislation>, 2024.11.2. 최종접속).

Washington Department of Children, “Reducing Racial & Ethnic Disparities” (<https://dcyf.wa.gov/practice/practice-improvement/ojj/racial-ethnic-disparities>, 2024.11.2. 최종접속).

Washington Department of Children, “Racial Disproportionality” (<https://dcyf.wa.gov/practice/practice-improvement/ojj/racial-ethnic-disparities/awareness/racial-disproportionality>, 2024.11.2. 최종접속).

吉田 朋弘, “海外につながる子どもの教育”, 2021.7.15., 2면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89581.pdf>, 2024.6.20. 최종접속).

法務省, “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5年12月1日金). 外国にルーツのある少年院在院者への処遇に関する質疑について”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8_00466.html, 2024.11.2. 최종접속).

法務省, “外国にルーツのある少年院在院者に対する指導教材「多文化共生プログラム」のケース学習に係る視聴覚教材の作成業務の請負一式”(2024.10.17.) (https://www.moj.go.jp/kaikei/choutatsu/kaikei11_02859.html, 2024.11.2. 최종접속).

해외 언론기사 자료

Reuters 2016.1.10., “Anti-migrant protest turns violent as German welcome cool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anti-migrant-protest-turns-violent-as-german-welcome-cools-idUSKCN0UN0JT/>, 2024.11.02. 최종접속).

Mainichi 2023.11.28., “Japan to introduce education program at reformatories

for youths with foreign root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31127/p2a/00m/0na/011000c>, 2024.11.2. 최종접속).

Mainichi 2020.5.10., “Japanese juvenile detention center's group work helps boy open up, embrace Filipino root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00510/p2a/00m/0na/004000c>, 2024.11.2. 최종접속)

yahoo.jp 2023.5.26., “「学校でも社会でも、親からも褒められてこなかった子が多いです」 — 日本初の少年院「国際科」で学ぶ、外国ルーツの子どもたち” (<https://news.yahoo.co.jp/articles/63e207328c099731e6a1a62392c9d8ca1098d0be>, 2024.11.2. 최종접속).

Abstract



Study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s

Minkyu Kim, Youngoh Jo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faced by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First, the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The term carrie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purposes of policies and the perspectives of researchers. In this study, it refers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who immigrated during childhood, and youth from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mselves, specifically in the context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owever, youth with North Korean defector background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study.

So far, obtaining detailed statistics on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been challenging for two main reasons. First, the number of such youth in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or under probation remains relatively small. Second, juvenile justice agencies have yet to publish official statistics. In this study, limited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re use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juvenile justice systems of four countries—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to draw insights for improving

judicial procedures for these youth in Korea.

In Germany,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strengthen procedural rights in juvenile justice proceedings. The United Kingdom offers court guidelines to support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who face language barriers.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for juveniles with migrant backgrounds. Lastly, Japan has developed programs aimed at enhancing Japanese language skills and social adaptation for these youth, integrating these programs into the social reintegration education provided i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cluding juvenile protection officers, police officers, judges, lawyers, and staff at residential correctional facilities (Protective disposition facilities under the Juvenile Act).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who had either experienced residence in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or had been involved in juvenile cases.

The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language barriers were not a significant issue for most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This was primarily due to their education in Korean and the availability of interpretation services. Specifically, many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r those who immigrated during childhood or adolescence had been educated with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from an early age, enabling them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Korean. For those who do fac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in Korean, interpretation services are available at various stages of the judicial process.

However, concerns were raised about the need to ensure the quality of judicial interpretation services and to provide these services from the initial stage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other issue identified was the lack of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at juvenile institutions or facilities. A limited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as noted to negatively affect their comprehen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inder efforts to prevent recidivism, and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To address mentioned issues, it is necessary to train and manage systematically the professional interpreters with knowledge of the judicial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programs in their native language of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who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in Korean, for easy understanding. In particular, with survey and interviews, it was learned that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often receive limited support from their foreign-born parents, which 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In this regard, it is needed to provide these parents with targeted support to help them gain a clear understanding of Korean laws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enabling them to assist their children effectively.

As the number of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is expected to grow, it becomes essential to recognize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challenges while providing the necessary support to facilitate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Based on outcomes and findings, this study offer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irst, recommendations for the initial stage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re as follows. A legal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to get help of public defenders at earlier stages as a measure to enhance support for those youth. What might be considered is to expand eligibility to have public defender. About interpretation service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quality of interpretation and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and reliabl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Nex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during trial proceedings, this study suggests to provide judges with guidelines and checklist to follow in trials and hearings involving youth with limit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t is also recommended to ensure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foreigners who have difficulties i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y providing

assistant and educational programs to them.

With regard to improvements in the correctional and protective disposition stages, this study recommends that educational programs provided before and after admission to facilities such as juvenile detention centers b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by utilizing tools such as video or virtual reality (VR) instructional materials. Correctional policies for staff at juvenile facilities and juveniles in juvenile residential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multicultural principles.

Further, it offers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capabilities of probation officers who work specifically with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ddress youth victims with immigrant-backgrounds. For them, this study examined juvenile procedures for juvenile victims with immigrant-backgrounds and proposed potential improvements. First, when a victim is not fluent in Korean, interpretation services and other necessary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from the initia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termediaries, who support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ren under 13, or individuals having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should also assist youth with limited Korean language skills throughout the juvenile proceedings.

In addition, victim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 testify during trials, ensuring their procedural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Victims should be kept informed about the progress of the case, trial outcomes, and sentences given to offenders, thereby safeguarding their right to be informed.

By presenting finding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dvancing discussions on establishing fair and human rights friendly juvenile justice procedures for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 and helping them become healthy and active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youth with immigrant-backgrounds, juvenile justice, safeguard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multicultural society

<직원대상 설문지>

설문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ID				
---	----	--	--	--	--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소년사법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소년사법절차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고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사례품(모바일 상품권) 지급 목적으로만 수집 및 이용될 것이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사례품(모바일 상품권) 지급	조사완료 후 6개월

2.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휴대전화번호

- 이주배경청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
→ 다문화가정 청소년, 외국인가정(귀화 혹은 취업) 청소년, 이주목적으로 체류 중인 청소년
- 소년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1. 선생님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은 현재 중요한 이슈이다				
2 이주배경청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3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업무처리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5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와 관련된 매뉴얼/규정이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7	소년사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소년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8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9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언어, 문화, 종교 등)을 잘 이해한다				
10	직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언어, 문화, 종교 등)을 이해하려고 별도의 노력을 한다				
11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				
12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인적 자원(예: 통역사)이 적절하다				
13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를 위한 물적(재정적) 자원이 적절하다				
14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적절하다				
15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다				

2. 선생님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필요치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매뉴얼 마련				
2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 전문 통역사 확충 등)				
3	직원 역량강화(예: 직원의 이주배경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4	물적 자원(시설, 환경 등) 개선 및 확충				
5	이주배경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민간 기관 확충				
6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7	부모에게 교육 제공(예: 자녀양육, 언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8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3. 선생님은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시 언어 및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 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				
2	언어적인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3	업무처리를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4	통역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5	통역사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				
6	통역사의 법률적인 이해력이 적절하다				
7	통역사의 통역이 정확하다				
8	통역사가 통역 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9	이주배경청소년 업무처리시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이 있다				

4. 선생님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각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된다
1	한국어 향상을 위한 지원				
2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3	보호자 교육 지원				
4	경제적인 지원(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				
5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6	소년과 보호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				
7	소년의 학교 교육 및 적응을 위한 지원				
8	법률적인 지원(예: 사건처리절차 등)				

5. 선생님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주배경청소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2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3	이주배경청소년은 범죄/비행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4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5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6	이주배경청소년은 소년사법기관의 다른 소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7	이주배경 때문에 소년이 다른 소년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8	외국에서 출생한 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한 소년보다 한국어 이해력이 낮다				
9	외국에서 출생한 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한 소년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				
10	외국신분인 소년의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11	소년의 보호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12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3	소년의 보호자는 범죄/비행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4	외국신분인 보호자의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6. 선생님께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에 다음 각각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편이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매우 차이가 있다
1	한국어 능력				
2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연구총서 24-A-07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발행 |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정웅석

등록 | 제 1990-000010 호(1990. 3.2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주)승림디엔씨 02-2271-2581

I S B N | 979-11-94631-03-3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

Study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s

